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강태경·유진·전윤정·김혜미·송윤진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용역계약(2026. 4. 20.)한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6년 9월 30일

수 행 기 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혜미(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윤진(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1. 연구의 필요성 72. 연구의 목적 9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0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및
SWOT 분석 13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접근법 15

1. 선행 연구 분포 및 주제 분석 15

2. 연구 공백과 본 연구의 접근법 17제2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191. 삭제지원의 대상 192. 불법촬영물등 심의·규제 권한 213.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25

4.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28

5.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31

제3절 SWOT 분석	32
1. 개요	32
2. SWOT 분석 결과	36
3. 소결	40

제3장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삭제·차단지원 중심 문제점

분석	43
----------	----

제1절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 분석	45
1. 분석의 필요성	45
2.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및 관련 법률	48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의 법체계	58
제2절 디지털성범죄 삭제·차단 지원 법률의 한계	63
1.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의 한계	63
2. 협력 체계 구축의 한계	67
3.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	71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조적 한계	77
제3절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78
1. 제21대·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78
2. 입법동향의 평가 및 시사점	82
제4절 소결	8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비교	81
------------------------------	----

제1절 미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87
1. 대응 체계의 개요	87
2. NCMEC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	88
3. 주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90
4. 미국 제도의 특징	92

제2절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94
1. 대응 체계의 개요	94
2. eSafety Commissioner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94
3.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 절차	95
제3절 영국 등 기타 국가의 대응 체계	98
1. 영국	98
2. 독일	100
3. 프랑스	102
4. EU 차원의 협력체계	103
5. 대만	108
6. 일본	109
제4절 해외 대응체계 비교 및 정책적 함의	112
1.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모델의 비교	112
2.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모델	115
3.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118
4. 소결	121

제5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언 123

제1절 연구의 요약	125
1. 선행 연구 분석과 실무 현장의 주요 발견	125
2. 현행 법령과 입법 동향 분석의 주요 결과	127
3. 해외 대응체계의 비교와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발전모델	128
4. 분석 결과의 종합	129
제2절 입법 원칙과 입법 방안 제언	130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130
2. 입법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139

참고문헌 161

부록 167



표 차례

[표 2-1-1] 연도별 논문수 추이	16
[표 2-1-2] 주제군별 분포	16
[표 2-3-1] 중앙디지털센터 SWOT 분석 결과	41
[표 3-3-1] 제21·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내용 분류(총 13건*)	82
[표 4-4-1] 국가별 대응모델의 특징과 주요 기능	112
[표 4-4-2] 국내외 디지털성범죄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비교	114
[표 5-2-1] 유포 전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내용	142
[표 5-2-2] 패스트트랙 처리절차	149
[표 5-2-3] 처리 단계·유형별 법정 처리기준	149

그림 차례

[그림 1-1-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업무	8
[그림 4-1-1] 미국의 CyberTipline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시스템	90
[그림 4-1-2] 미국의 CyberTipline 운영 절차	91
[그림 4-1-2] 미국의 Take It Down 해시(Hash) 기반 재유포 방지 서비스	92
[그림 4-2-1]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신고 페이지	96
[그림 4-2-2]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절차	97
[그림 4-3-1] 영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요 서비스	99
[그림 4-3-2] 독일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의 Trusted Flagger 안내 페이지	101
[그림 4-3-3] 프랑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103
[그림 4-3-4] INHOPE를 통한 국제 신고·연계체계	104
[그림 4-3-5] DSA에 따른 Trusted Flagger의 우선처리 구조	105
[그림 4-3-6] EU의 DSA Trusted Flagger 지정기관 목록	106
[그림 4-3-7] 대만 性影像處理中心(SIARC) 홈페이지	108
[그림 4-3-8]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110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합성물, 오픈채팅방·클라우드·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규명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삭제·차단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피해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반복적인 유포로 인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을 충분히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삭제지원의 운영 현실과 법적 기반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의 기본 관점은 삭제·차단 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이다. 이는 피해영상물의 탐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실제 조치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지원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규범이 피해자 지원, 수사, 플랫폼 규제 및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에 분산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권한의 존재만으로 이러한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단계의 수행주체와 책임, 정보전달 및 후속조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 실무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 현행 법령 및 발의 법률안 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KCI 등재·등재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분석한 결과, 국내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처벌·수사 중심의 법학 담론과 탐지·대응 중심의 공학 담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어 왔지만, 삭제지원기관의 운영구조와 성과, 기관 간 협업 및 제도적 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 현장의 문제를 규범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에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과 SWOT 분석에서는 삭제지원의 어려움을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면접에서 인용된 자료상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 완료율은 2022년 기준 95%를 넘었고, 실무

2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자들은 해당 사업자와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해외 성인사이트의 완료율은 50~70% 수준으로 언급되었으며, 요청 창구나 운영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시되었다. 주요 제약은 지원 대상과 기관별 처리기준의 불일치, 심의·증거확보 과정에서의 지연, 정보공유와 결과통보의 미비 및 재유포에 따른 지속 지원 부담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역센터의 기능분담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업무 표준화와 사례공유 및 품질관리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기회인 동시에,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면 업무 중복이나 센터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되었다.

현행 법령과 제21·22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삭제지원과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및 수사기관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협조와 상대방의 대응의무, 미조치 시 후속책임 및 지원의 종료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와 센터의 삭제지원, 심의 결과와 실제 차단 이행, 최초 삭제와 재유포 대응을 연결하는 절차에도 공백이 남아 있었다. 입법 역시 처벌과 수사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조치의무 및 지원기관의 법제화에 비하여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권한의 확대와 함께 기관 간 정보연계, 처리 결과의 통보·확인 및 후속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대만·일본 및 유럽연합의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았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직접적인 규제권한을, 미국의 NCMEC는 전문적인 신고접수·정보분석과 수사기관 연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StopNCII와 미국의 Take It Down은 해시값을 활용한 참여 플랫폼의 재유포 방지를,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는 법률지원과 종합적인 피해 회복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기관의 협력은 국외 유통에 대응하는 보완수단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각 제도의 피해자 범위와 플랫폼 참여 및 해외 집행의 한계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중앙다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기관형, 법정 전문기관형 및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 규제기관형은 조사·삭제명령·제재를 연계할 수 있지만 상당한 조직·법제 개편을 요구한다.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 신고와 상대 기관의 처리의무를 제도화하고,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과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를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평가하였다. 특히 센터의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직의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 신고의 우선처리, 결과통보 및 협조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체계화하고, 기관 간 연계를 법제화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개선 책임을 구체화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단계별 수행권한과 책임, 예방지원, 중앙·지역센터의 업무연계 및 재유포 사후관리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우선처리·처리기한·결과통보와 이행확보 수단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신속조치와 긴급심의·접속차단을 연결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심의·차단 관련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하여 긴급대응, 수사와 피해지원의 양방향 연계 및 증거보존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국외 대응, 성과평가 및 전문인력·기술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최초 요청 이후의 실제 이행확인과 재유포 대응까지 지속되는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 1 장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서론

제1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성범죄는 촬영·제작 단계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피해영상물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범죄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합성물의 등장, 오픈채팅방·클라우드·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접속 링크와 신상정보의 결합 유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유형의 출현으로 인해 피해의 범위는 넓어지고, 회복 곤란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급속히 확대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연속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연속적’이라 함은 피해영상물의 탐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 정보의 활용, 조치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이어져 작동함을 의미한다(그림 1-1-1).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에 따라 이들 각 국면은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데 그쳐서는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각 단계의 조치가 후속 단계로 곧 연결되는지가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을 삭제·차단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 삼는다.

8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 [그림 1-1-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업무



(출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를 두고, 여러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체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규범은 하나의 법률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절차,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의 설치·운영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분산된 규범 구조는 개별 영역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삭제·차단과 같이 여러 기관의 권한 행사와 정보 공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업무에서는 기관 간 권한 관계와 협조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실무 현장에서는 탐지에서 자유포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국면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삭제지원 실무 현장에서는 접속 링크만 게시된 경우의 삭제지원 대상 포함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신상정보 삭제 의무에 관한 법령 간 불일치,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 확보, 자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법적 근거 등 다양한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편적인 처벌 규정의 신설이나 개별 기관의 권한 추가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하나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수행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규명하고,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 특히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삭제·차단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차단 지원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규명하며, 해외 주요국의 대응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삭제·차단 지원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디성센터가 처해 있는 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잡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분석하고,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 및 중앙디성센터의 구조적 지위와 관련한 한계를 규명한다. 아울러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여 입법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법제 정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각국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과 기능 강화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리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제2절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및 삭제·차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강화 방안을 다루며,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탐색한 뒤 이를 법령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명하는 순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삭제·차단 지원 실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삭제지원의 대상, 심의 및 규제 권한,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등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점과 공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문헌 및 법령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후 장의 분석 대상을 설정한다.

또한, 제2장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심층 면접으로 밝혀진 쟁점들을 구조화하고 해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중앙디성센터를 하나의 조직이자 제도로 놓고 그 내부적 역량과 한계(강점·약점)를 외부적 환경과 조건(기회·위협)과 함께 조망한다. 이를 통해 심층 면접에서 얻은 개별적 진술들을 지원 기관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하나의 진단 틀 안에 배치하고,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된 실무상 문제점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규범적 원인을 검토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된 규범 구조를 개관하고,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의 한계, 협력체계 구축의 한계,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 및 중앙디성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제21대·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여 입법 동향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성범죄

죄 대응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각국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피해자 지원 기능,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별 운영모델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디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 기관형, 법정 전문 기관형, 현행 피해자 지원 기관 고도화형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단계적 발전 방향과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문헌연구 및 법령·판례 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삭제지원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사전에 송부한 질문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① 삭제지원의 대상, ② 불법 촬영물등 심의 및 규제 권한, ③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④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⑤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및 법령 분석에 앞서 실무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 지점을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 및 법령·정책 분석을 통하여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하위 규정, 정부의 관련 대책 및 계획, 선행 연구와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삭제·차단 지원 체계의 규범적 구조와 한계를 검토하고, 제21대·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수집하여 입법 동향과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비교 대상국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제도적 유형이 서로 대비되도록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 국가(호주, 영국), 형사사법 및 플랫폼 규제 법제를 통해 대응하는 국가(미국, 독일, 프랑

12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스), 우리나라와 법제적·사회문화적 근접성이 있거나 최근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국가(일본, 대만), 그리고 초국가적 규범 형성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준거를 제시하는 유럽연합을 포함함으로써, 규제기관 유형의 다양성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및 SWOT 분석

제2장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및 SWOT 분석

제1절 |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접근법

1. 선행 연구 분포 및 주제 분석

이 절의 목적은,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한 국내 선행 연구의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가 위치하는 지점과 논의의 공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래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삼고 있는, KCI 등재(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과 초록 기반 주제 분류를 병행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¹⁾

발행 연도의 분포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다. 2019년 이전에는 연간 1~7편에 그쳤으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4편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2024년 46편, 2025년 61편으로 정점에 이른다. 이러한 급증은 2019~2020년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과 그에 뒤이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이 연구를 촉발한 계기였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분석에서 ‘n번방’ 사건(13편)이 뚜렷이 나타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의 19편은 상반기까지의 집계치로, 연구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분석 대상 논문의 상세 목록은 부록을 참조.

» [표 2-1-1] 연도별 논문수 추이

발행연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논문수	20	44	44	32	35	46	61	19

* 상반기까지의 집계치임.

연구 분야의 분포에서는 법학(54편)·경찰행정(47편)·형사정책(20편)·기타 법학(17편)·형법(7편)·형사소송법(4편) 등 규범 및 형사사법 계열이 압도적이었고, 컴퓨터공학(18편)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여성학·사회복지학·심리학·교육학 계열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각 소수에 머문다. 요컨대 이 분야의 연구는 처벌·수사를 중심으로 한 법학 담론과 탐지·대응을 중심으로 한 공학 담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복지 및 젠더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록·제목·키워드에 기반한 주제 분류(중복 허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1-2] 주제군별 분포

주제군	논문편수	주요 논제
입법·처벌규정정비	155	보호법익재구성, 규정체계정합성, 법정형·양형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	148	성착취물, 온라인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수사·디지털포렌식	117	위장·함정·신분비공개수사, 증거수집, 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106	대학생·청소년인식조사, 피해실태설문
피해자지원·삭제지원	87	삭제 요청, 2차피해, 피해자보호·회복
플랫폼·유통차단	81	정보통신망유통방지, 사업자책임, 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64	합성물제작·유포, 신종유형규율
AI·기술활용	45	탐지자동화, 딥러닝, 알고리즘대응
예방교육	29	성교육,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가장 큰 흐름은 입법론·처벌규정의 정비(155편)이다. 보호법익의 재구성(성적 자기 결정권과 명예·성풍속 사이의 논쟁), 산재된 처벌 규정의 체계 정합성, 법정형·양형기준의 적정성이 반복되는 쟁점을 이룬다. 다음으로 수사방법론(117편)이 두드러지는데, 키워드에서 ‘함정수사’(16건), ‘신분위장수사’(13건), ‘위장수사’(13건), ‘신분비공개수사’(13건), ‘잠입수사’(6건), ‘비밀수사’(5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가 도입된 이후 적법절차·영장주의 및 기본권 침해와의

긴장이 핵심 논제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딥페이크가 단일 신종 유형 가운데 키워드 최다(25회)로 최근의 연구를 견인하며, ‘메타버스’(8)·‘인공지능’(6)이 그 뒤를 잇는다. 피해 유형의 측면에서는 불법 촬영물(14)·리벤지 포르노(6)·성착취물(8) 등 전통적 유형과 딥페이크·합성물이라는 신종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연구 공백과 본 연구의 접근법

가. 연구 공백

이상의 분석은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연구 공백을 드러낸다.

첫째, 삭제지원 제도의 실증적 운영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삭제 지원을 주제로 한 논문은 87편으로 적지 않으나, 그 대부분은 처벌·수사에 관한 논의에 부수하여 다루어지며 독립적인 제도 분석은 소수에 그친다. ‘피해자 지원’을 명시적 키워드로 삼은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 ‘삭제·유통 차단’ 군집에 해당한 논문들(81편)도 역시 규범적 당위의 제시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삭제 실무의 운영 구조, 성과 지표, 기관 간 협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은 희소하다. 이러한 공백은 앞서 제시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탐지에서 재유포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국면이 어디에서 단절되는지는 규범의 당위를 논하는 것만으로는 포착되기 어렵고, 실제로 그 절차를 수행하는 실무 현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데이터 기술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연구가 희소하다. 기술 계열의 45편은 대부분 증거 수집·포렌식·불법물 탐지 등 가해자의 추적을 지향하며, 삭제지원·재유포 모니터링과 같이 피해자 측 지원의 자동화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정책 평가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인식 조사·피해 실태 연구(106편)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 제도 자체의 입법 평가로 연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디성센터의 제도적 역량을 거버넌스와 정책 평가의 차원에서 다룬 규범적 연구 또한 부족하다.

요컨대 국내의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처벌·수사 중심의 규범 담론과 탐지·대응 중심의 공학 담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온 반면, 그 두 축이 맞물려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운영 현실과 그 제도적 제약에 대한 분석은 뚜렷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 연구가 대체로 “어떤 규범과 기술이 바람직한가?”라는 당위적 물음에 집중해 온 데 비하여,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실제로 어떤 조건 속에서 작동하며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가?”라는 현실적 물음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나. 본 연구의 접근법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공백을 고려할 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강화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범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그 체계의 중심에 있는 중앙디성센터가 현재 어떤 현실적 조건 속에서 삭제·차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규범의 외형이 아니라 그 규범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국면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중앙디성센터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무자 심층 면접(제2절)과 SWOT 분석(제3절)을 방법으로 채택한다. 실무자 심층 면접은 삭제지원 절차의 각 국면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제도적 공백에 관한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SWOT 분석은 그 진술들을 기관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구조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무상 문제점은 제3장에서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그 규범적 원인이 규명된다. 요컨대 제2장은 실무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재를 탐색하는 데, 제3장은 그 문제를 규범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각각 초점을 둔다.

제2절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

본 연구는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공백을 파악하고 법률 제·개정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26년 6월 15일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사전에 송부한 질문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① 삭제지원의 대상, ② 불법촬영물등 심의 및 규제 권한, ③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확보, ④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⑤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삭제지원의 대상

가.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현재 삭제지원의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 대상자의 신상정보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방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삭제·차단 조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상정보는 「성폭력방지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자에 따라 신상정보 삭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발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불법촬영물등 자체는 게시되지 않고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는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링크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삭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서는 오픈채널 접속링크 및 비밀번호의 배포 행위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자 규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삭제지원 실무에서는 신상정보 삭제지원 규정이 도입된 이후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에도 일부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앙다성센터와 핫라인이 구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접속링크 삭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지원·협조를 넘어서 접속링크 자체를 명확하게 삭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불법촬영물등의 접속링크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에 대한 규제에 준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영상과 함께 유포된 사례에서 신상정보의 주체는 현행 법률상 불법촬영물등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의 정보주체는 주관적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으나 피해 지원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앙다성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보아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 선제적 삭제지원 대상과 요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삭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게 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공백과 뎁페이크 피해 확산이라는 두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우선 삭제지원의 기간과 종결 시점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종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현황 탐지에서 피

2) 다만 이러한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접속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 대화방 등이 비밀번호 설정, 초대·승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불법촬영물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중앙다성센터가 접근할 수 없으므로 실제 불법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접속링크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실무상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링크에 대한 삭제지원은 실효적인 절차와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해영상물이 상당 기간 발견되지 않다가도 추가 발견되거나 재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삭제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지원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연락두절되거나 회피하는 경우 3년의 기한이 경과하여 지원이 종결되면 이후 피해영상물이 추가 발견되더라도 중앙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을 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 공백은 현행 「성폭력방지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선제적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제7의3 제3항).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중앙디성센터에서 성인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파악하더라도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다면 삭제지원을 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영상물 유포가 계속될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 기간이 종료된 기존 지원 대상자를 직권 삭제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전용 유통사이트가 다수 등장하고 있고 한국이 딥페이크 피해 관련 국제통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딥페이크를 선제적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및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불법촬영물등 심의·규제 권한

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

중앙디성센터는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데,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미심위의 시정요구 조치는 국내 사업자 대상인 경우 삭제물,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차단을 의미한다. 최근 중앙디성센터는 방미심위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게시물(URL) 단위

심의 신청 방식 외에도 사이트 단위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1개월간 23건의 요청 대상 중 17건의 사이트가 차단·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미심위 심의 기능의 효과가 일부 개선되었다.

한편 방미심위의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는 문서상 심의 결과를 의미할 뿐 접속차단 여부와는 별개이며, 실제 통신사업자의 시정요구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방미심위의 권한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그치며, 해당 통신사업자가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방미심위가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나 확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방미심위의 확인 절차가 미비한 것은 시정요구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로도 나타난다. 방미통위는 방미심위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명령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이에 따라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는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따라 차단을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하며 실제 차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⁵⁾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방미심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삭제·차단 조치 결과를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 내역을 방미심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2025년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미심위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게시 사이트 중 85.4%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방미심위가 시정요구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감사원, 『감사 보고서 - 인공지능 대비실태 I(신뢰성 확보 분야)』, 2025. 12., 35-40).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였고, 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방미통위가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의 심의 요청에 따라 방미심위가 시정요구를 의결한 건수는 총 13,108건이다(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내부 자료). 그러나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정요구가 실제 접속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불법촬영물등 심의 및 차단 권한

방미심위 심의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협소한 개념 해석 및 심의 요청 절차로 인한 피해자 지원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지향하는 중앙디성센터와 달리 사업자 규제를 중심에 두는 방미심위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와 촬영대상자의 동일성 식별가능성, 영상물의 내용 및 촬영·유포 경위와 관련하여 중앙디성센터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방미심위가 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두 기관 간에 지원 대상 범위의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방미심위는 심의 요청 시 특정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인입된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방미심위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요청이 가능한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법촬영물등과 달리 방미심위의 심의 기한 규정이 없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⁶⁾

이처럼 중앙디성센터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만 삭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미심위를 통한 심의 절차를 재차 거쳐야 하는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콘텐츠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와 범죄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차단 여부 판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이러한 삭제지원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175호)은 중앙디성센터가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방미심위 심의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42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제2203979호)은 조치의 무사업자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접속차단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한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⁷⁾ 접속차단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 추진 과제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방미심위 심의 절차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긴급차단권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삭제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923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관련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⁸⁾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속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VPN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불법촬영물 확산 억제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두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 이후 사업자 단체 등에서 반대를 제기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법률 분쟁 발생 가능성과 사업자의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우려가 있다(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서). 이에 대해 중앙디지털성범죄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삭제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반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8)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명령을 받은 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산하에 설치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제122조의6).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령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권 조항을 두고 있다(제133조의4).

3. 사업자의 삭제·차단 이행

가. 조치의무사업자의 재유포 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된 주요 플랫폼의 경우 중앙디지털성센터의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삭제 완료율이 95%를 넘어 높은 수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중앙디지털성센터 관계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신상정보 삭제 조항이 법률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피해자 관련 정보라고 안내하면 삭제요청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조치의무사업자가 개별 게시물 단위의 삭제 요청에는 성실하게 응하고 있음에도, 동일·유사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재가공·재게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성격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재유포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가 유포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촬영물이 동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재게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넘어 필터링 실패에 대한 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확인되었다. 우선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순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준으로는 이행확보의 효과가 낮으며 해외 사례에 준하는 제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9)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현안 및 제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한국여성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2023. 9. 19.), 31. 한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전후로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완료율은 95.4%(2018~2020)에서 95.5%(2021~2022)로 변화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법률개정의 적용범위가 원래 삭제 요청에 협조적인 플랫폼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년 초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았다.¹⁰⁾

나.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의 유통방지 의무

불법촬영물의 주요 접근 경로 중 하나인 검색엔진의 경우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디성센터에서 삭제 요청을 하면 검색엔진 사업자는 검색결과에서 노출을 제한하거나 자사 도메인에서 연결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본 게시 사이트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URL을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 및 시행령(제30조의6)은 불법촬영물등 재유포 방지를 위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게재 전 사전 비교·식별을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및 게재 제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¹¹⁾ 그러나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검색엔진 등에서는 실제로 필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구글과 같은 해외 검색엔진은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 비해 필터링이 미흡하여 다크웹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우회사이트나 미러사이트 주소를 비롯하여 불법사이트의 접근정보가 비교적 쉽게 검색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이트는 주소가 빈번하게 변경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SNS와 검색엔진 등을 통해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검색엔진의 필터링 기능 강화 등 검색엔진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0) 2025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제22조의5 제2항) 중 사전 비교·식별 후 불법촬영물등 게재 제한조치 의무를 위반한 메타, 구글,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에 시정명령을, X(트위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2는 정보 게재·공유 또는 검색 서비스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30조의6 제2항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로서 검색어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2호)와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 제한 조치(3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게재·스트리밍 사업자뿐 아니라 검색엔진 사업자 역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포함되며, 사전 비교·식별을 통한 게재 제한과 검색결과 송출 제한 의무를 각각 부과한다.

다.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조치의무사업자가 아닌 해외 서버 기반 성인사이트는 중앙디지털성센터의 전체 삭제완료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중앙디지털성센터는 이러한 성인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이트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협조율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통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관리되는 사이트의 비중은 전체 성인사이트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법에 따른 조치의무 부과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하여 중앙디지털성센터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삭제 요청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정보를 제시하는 등 불법성을 증명하는 공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미국의 Take It Down Act 시행 이후에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공문 양식을 추가로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삭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한해 추가적으로 시도하는 보충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불법성 증명 공문이 활용된 사례는 38,468건이며 이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중 12%가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경우 성인 대상 사건에 비해 약 2배 높은 삭제 완료율을 보여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지원에 있어 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영역은 삭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이다. 다크웹은 URL 확보 자체가 어려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검색을 통한 접근이 어려운 불법 사이트를 비롯하여 삭제 요청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앙디지털성센터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삭제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다크웹 및 삭제 요청 창구가 없는 불법사이트는 중앙디지털성센터의 삭제지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등 효과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관계기관 정보공유·연계 체계

가. 수사기관과의 삭제지원 연계 및 정보 공유

중앙디성센터에 사건을 접수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중앙디성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삭제지원을 보류한다. 중앙디성센터에서도 불법촬영물등을 채증하며 이를 수사기관 신고시 제출하나 수사기관에서 증거 보강을 위해 별도의 채증과 함께 가해자 수사에 필요한 추가 정보 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삭제되면 확보 가능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 보류의 실무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과 함께 신속한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류 기간에 피해영상물 유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가 세심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유포 사실이 확인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을 방미심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처리절차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의2 제1항).¹²⁾ 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불법촬영물 URL 등에 대하여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개정은 수사과정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지연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불법촬영물이 여러 플랫폼에 분산 유통되거나 복제·변형되어 다시 게시되는 등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지원은 일회성 조치로 완료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앙디성센터는 최초 삭제·차단 조치 이후에

12) 이와 유사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경찰의 삭제·접속차단 조치 요청 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의무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항에 신설되어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도 지속적인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및 삭제·차단 조치가 완료되면 이를 중앙디지털성센터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삭제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원활한 삭제지원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은 경찰이 삭제·접속차단 처리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삭제·접속차단 조치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지 의무 및 증거 수집 완료 사실을 피해자나 중앙디지털성센터에 통지할 의무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디지털성센터는 삭제지원 개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실무자가 피해자를 통해 경찰의 증거 수집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조치 및 증거 수집 완료 시 통지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중앙디지털성센터의 삭제지원 개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미비는 다른 측면에서도 삭제지원의 공백을 발생시킨다. 현재 피해자가 중앙디지털성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정보 제공 등 지원 체계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¹³⁾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역 경찰서 단위에서 피해자에게 중앙디지털성센터 삭제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밖에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중앙디지털성센터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삭제지원 역시 연계 여부가 수사관의 재량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재피해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인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중앙디지털성센터 및 지역디지털성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2조의7).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 규정이다.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위법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제16조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 규칙 별지 서식의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서식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와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을 원할 경우 방미심위, 중앙디지털성센터, 성폭력상담소에서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맡겨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로 연계하는 것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의 업무는 피해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수사의뢰와 채증지원 등 형사사법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연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며,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사실상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의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요청 권한과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체계

피해영상물의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서는 삭제 요청 이후 사업자의 조치 여부와 처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와의 정보 공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가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삭제에 소요되는 처리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삭제 조치 소요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에 통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정확한 처리시간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결과 통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결과 통보 의무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삭제 요청·통보 양식의 표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삭제 요청 절차는 사업자별로 요구하는 정보와 양식이 각기 달라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가 사업자별로 정보와 양식을 맞추어 발송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는 양식 또한 사업자별로 상이하여 결과 확인과 시스템 자동

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작업이 요구되는 등 실무 차원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업을 일원화하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부처 간 관할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관리하는 반면, 방미통위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소관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소관 부처의 협조가 없는 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미통위가 조치의무사업자가 사용할 삭제 요청 및 조치 결과 통보 양식을 마련하고 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5.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현재 피해자 대면이 필요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여성센터가 담당하고 비용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삭제지원 업무는 주로 중앙디지털센터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피해자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개편되면서 지역여성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어 통합지원 자체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 대응 등 삭제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중앙디지털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전국 17개의 지역여성센터의 업무 및 운영체계 표준화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여성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디지털센터는 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 외에는 운영체계 및 업무지침에 대한 별도의 지도 및 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⁴⁾

14) 한편,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센터등에 대한 평가 권한은 성폭력방지법 제 2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는 3년마다의 운영실적 평가와 그 결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2월 23일에 공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에 지역디성센터와 중앙디성센터 간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 삭제 건을 중앙으로 연계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성센터가 보유한 영상물 디엔에이(DNA) 검출·검색 기능을 지역디성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 연계, 영상물 DNA 기반 매칭, 삭제지원 관리, 통계 산출 등의 기능을 갖춘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디성센터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사례 워크숍과 모범사례 성과보고회를 운영하는 한편, 업무 표준화 가이드를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기능의 질 제고 및 표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¹⁵⁾

제3절 | SWOT 분석

1. 개요

가. SWOT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의 정당화

SWOT 분석은 분석 대상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을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을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으로 구분하여 조망하는 이원적(2×2) 진단 틀로서, 전략경영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상황 분석 기법의 하나이다.¹⁶⁾¹⁷⁾ 이 기법의 이론적 핵심은 조직의

과를 감독·지원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시설 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시설의 지역 연계,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평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실시한다.

15)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2. 23.).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 한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창구 하나로 통합”.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3282 (2026. 7. 16. 최종접속).

16) SWOT 분석의 개관과 광범위한 활용 실태에 관하여는 M. M. Helms & J. Nixon, “Exploring SWOT analysis – where are we now? A review of academic research from the last decade,”

성과가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사이의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에 있다.¹⁸⁾ 이러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조직은 내부 강점을 외부 기회와 결합하고 약점과 위협이 결합하여 초래할 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이 기법은 특정한 조직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성에 힘입어 SWOT 분석은 본래 영리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도구로 출발하였음에도 오늘날에는 공공기관의 정책 진단, 행정 조직의 역량 평가, 제도 설계를 위한 사전 분석 등 공공정책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확장됐다.¹⁹⁾

다만 법·정책 연구의 맥락에서 SWOT 분석을 활용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이질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은 개별 규범의 효력과 정합성을 해석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에 SWOT 분석은 규범이 아니라 그 규범을 집행하는 조직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에서 SWOT 분석을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는 개별 조문의 해석론만으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으며, 그 조문이 실제 조직의 역량 및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국면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절차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삭제·차단 지원이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규범 내부가 아니라 규범과 조직, 그리고 관계기관이 맞물리

Journal of Strategy and Management 3(3) (2010), pp. 215-251 참조.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SWOT을 다룬 다수의 동료심사 논문을 검토하여 그 활용의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 17) 참고로 SWOT 분석이 196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른바 LCAG(Learned, Christensen, Andrews, Guth) 프레임워크에서 기원하였다는 통설은 최근의 사료 비판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하버드 LCAG 프레임워크 기원설에 대한 사료 비판적 반박으로는 R. Puyt, F. B. Lie, C. P. M. Wilderom, "The origins of SWOT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56(3) (2023) 및 동 저자들의 "From SOFT approach to SWOT analysis, a historical reconstruction,"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31(2) (2025), pp. 333-357 참조. 이들 연구는 SWOT의 기원이 하버드가 아니라 1960~70년대 스탠퍼드 연구소(SRI)에서 Albert Humphrey 등이 주도한 SOFT 접근법에 있음을 사료를 통해 논증한다. LCAG 프레임워크의 원전으로는 E. P. Learned, C. R. Christensen, K. R. Andrews & W. D. Guth, Business Policy: Text and Cases (Irwin, 1969) 참조.
- 18)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간 적합성(fit)이라는 전략경영론의 관점 및 그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과의 연관에 관하여는 E. K. Valentin, "SWOT Analysis from a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9(2) (2001), pp. 54-69 참조.
- 19) SWOT 분석을 2×2 매트릭스 형태로 정식화하여 전략 도출로 연결하는 이른바 TOWS 매트릭스의 제안으로는 H. Weihrich, "The TOWS Matrix - A Tool for Situational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15(2) (1982), pp. 54-66 참조. 공공정책 및 제도 진단 영역으로의 적용 확장에 관하여는 앞의 Helms & Nixon (2010) 참조.

는 점점에 위치한다. 이 점점은 규범을 조직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SWOT 분석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구조화 기능이다. 앞 절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진술들은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심의 절차, 해외 사업자 대응, 관계기관 협력, 기관의 지위 등 다양한 층위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SWOT 분석은 이러한 개별 진술들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라는 두 축 위에 재배치함으로써,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진단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개선 방안이 조직 역량의 강화를 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범 및 제도의 정비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초가 된다.

둘째, 연계 기능이다. 내부 요인(강점·약점)에 관한 진단은 그 규범적 원인을 현행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규명하는 제3장의 분석 대상을 설정하고, 외부 환경(기회·위협)에 관한 진단은 해외 주요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제4장의 준거를 제공한다. 이로써 SWOT 분석은 실증적 문제 탐색(제2장)과 규범적·비교법적 분석(제3장·제4장)을 매개하는 교량으로 기능한다.

다만 SWOT 분석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방법론적 한계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SWOT 분석은 각 요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 요인 간의 우선순위나 인과관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분석의 결과가 구체적인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목록의 작성에 머무르기 쉽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²⁰⁾ 또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의 구분이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동일한 사실이 관점에 따라 상반되게 분류될 수 있고,²¹⁾ 특정 시점의 정태적 단면만을 포착하여 환경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²²⁾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단순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20) T. Hill & R. Westbrook, "SWOT Analysis: It's Time for a Product Recall," Long Range Planning 30(1) (1997), pp. 46-52. 이 연구는 영국 50개 기업의 전략기획 실무를 조사하여, SWOT이 우선순위 없이 강화한 목록을 산출하는 데 그치고 그 결과가 이후 전략 수립 단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SWOT의 "리콜(product recall)"을 제안하였다.

21) 동일 요인이 관점에 따라 강점이자 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류의 자의성 및 자기보고 자료의 편향 문제에 관하여는 앞의 Hill & Westbrook (1997), p. 47 참조.

22) SWOT 분석이 정태적 단면만을 포착하여 경쟁 환경의 동태성과 요인 간 상호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는 D. W. Pickton & S. Wright, "What's SWOT in strategic analysis?," Strategic Change 7(2) (1998), pp. 101-109 참조.

그 요인들이 절차적 연속성의 어느 국면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함께 서술하며, 각 요인의 근거를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 구체적 진술과 관련 법령·통계에 결부시킴으로써 분류의 자의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후술하는 통합지원단의 출범과 같이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 양면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단선적 분류가 초래할 수 있는 진단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태적 분석이 놓치기 쉬운 제도 환경의 변화 국면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다.²³⁾

나. SWOT 분석의 목적과 대상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본 절은 앞 절의 심층 면접에서 드러난 개별적 난점들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제도의 구조적 조건이라는 틀 안에 재배치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점·약점·기회·위협을 네 요인을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실무상 난점이 기관 내부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규범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제3장의 규범적 원인 분석과 제4장의 비교법적 검토가 각각 어느 지점을 겨냥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잡고자 한다.

이때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건은 2026년 5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의 출범이다. 통합지원단은 그동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심의 절차의 지연, 관계기관에 대한 권한 부재, 해외 사업자 대응의 한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재편할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서 기회이자 위협의 양면으로 다루어진다.

23) 이러한 보완적 활용은 SWOT의 결합이 기법 자체보다 그 오용에서 비롯된다는 지적, 즉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갖추어 적용할 경우 SWOT이 유용한 진단 틀이 될 수 있다는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앞의 Valentin (2001) 참조.

2. SWOT 분석 결과

가. 강점

첫째, 삭제·차단 지원에 관하여 국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는 2018년 설립 이래 삭제지원을 전담해 온 사실상 유일한 기관으로서, 접수·모니터링·삭제 요청·재유포 감시에 이르는 절차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통합지원단이 출범과 함께 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34,628 곳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은, 센터의 데이터 자산이 범정부 대응의 토대가 될 만큼 고유한 가치를 지님을 방증한다.

둘째, 조치 의무 사업자에 대한 삭제지원은 이미 높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심층 면접에 따르면 신고 창구가 마련된 주요 플랫폼의 삭제 완료율은 95%대에 이르며, 실무자는 신상정보 삭제 조항이 법률에 도입되기 이전부터도 피해자 관련 정보임을 안내하면 자발적으로 삭제에 응하는 사업자가 많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내 대형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강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셋째, 데이터·통계 생산 기관으로서의 권위이다. 매년 발행되는 지원 보고서는 언론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피해 현황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의 통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중앙-지역 이원화 구조를 통한 역할 분화이다.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 사이트 대응 등 삭제 업무는 중앙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가, 접근성이 요구되는 대면 상담·치료·법률 지원은 지역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가 담당하는 분업이 형성되어 있다. 실무자들은 피해자 접근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이원화 구조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약점

약점은 심층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무상 제약과 직접 연결되며, 그 상당 부분은 센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센터에 부여된 법적·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첫째, 삭제지원 대상 규정의 협소함과 법령 간 불일치이다. 카카오톡·DM 등 사적 대화방 유포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요건에서 제외되고, 신상정보의 경우 삭제 의무가 성폭력방지법에는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가 선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촬영물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링크, 피해 촬영물의 당사자는 아니나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제3자 등 법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둘째, 조치 의무가 없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한계이다. 심층 면접에서 특히 강조된 지점은 센터의 전체 삭제 완료율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조치 의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의 완료율이 50~7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센터는 협조도가 높은 일부 사이트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나 국제공조의 법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요컨대 센터가 잘 대응하는 영역(국내 조치 의무 사업자)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고, 남은 문제는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심의 절차 경유로 인해 삭제지원 등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이다.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무자는 음란성 판단을 위한 심의와 명백한 범죄 피해에 대한 차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도 동일한 심의로 다루어지는 현행 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넷째, 삭제 결과 통보 체계의 부재와 표준화 미비이다.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센터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처리 시간의 집계조차 어렵다. 또한 플랫폼별로 삭제 요청·통보 양식이 달라 시스템 자동화에 상당한 수작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이다. 증거 수집을 위한 삭제 보류 시 수사관의 완료 통보 의무가 없어 지연이 발생하고, 지역 경찰서 단위의 수사 상황을 파악할 경로가 없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센터의 업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데서 비롯되는 구조적 단절이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는 삭제지원 전담 기관임에도 정책적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약하고, 모든 판단이 타 기관의 기준에 따라 검증받는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지역디지털성범죄센터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협의에 의존하고 있다.

다. 기회

첫째,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가장 큰 기회 요인이다. 통합지원단은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공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목표로 하며, 특히 확실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하고, 집단피해 등 일선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직접 대응하고자 한다. 이는 심의 절차 경유의 지연, 관계기관에 대한 권한 부재, 해외 사업자 대응의 한계라는 센터의 핵심 약점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는 사업자·방미심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또는 통합지원단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차단을 요청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긴급 차단 요구권, 전문기관의 직접 요청, 신속심의 등 불법촬영물등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여,²⁴⁾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자 조치와 심의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및 단계별 처리기한을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둘째, 입법 동향의 축적이다. 심의 신청과 동시에 임시 접속차단을 도입하려는 ‘선 차단 후심의’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차단 권한을 부여하려는 논의, 방미심위 심의 결과의 실제 집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거나 논의되고 있어,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입법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²⁵⁾

24)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배포자료, 2026. 8. 20.자 배포자료(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026. 9. 1. 최종접속).

25) 이와 관련하여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23)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

셋째,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의 본격화이다. 심층 면접에 따르면 삭제·차단·수사 피해자 보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독립 기구 설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디성센터의 지위와 권한을 재정립할 제도적 기회로 보인다.

넷째, 신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이다. 딥페이크 피해에서 한국이 국제 통계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은, 딥페이크를 선제적(직권) 삭제지원의 제3유형으로 추가하는 등 지원 확대와 자원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라. 위협

첫째, 역설적으로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통합지원단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 차단 요청 등 삭제·차단의 핵심 기능을 흡수함에 따라, 중앙디성센터의 역할이 데이터 제공·상담 등 보조적 지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 대응 기구의 소속·관할 결정이라는 난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어, 두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업무 연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기관 간 권한 관계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합지원단이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이라는 행정 내부 규범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 역시, 권한 관계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방미심위 체계의 ‘문서상 의결과 실제 집행 간 간극’이다. 방미심위의 차단 시정 요구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데 그치고, 실제 차단 집행 여부를 확인·모니터링할 절차가 없다.

셋째, 부처 간 관할 분리라는 구조적 제약이다.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업을 일원화할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음에도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성평등가족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 시스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술 발전과 유통 경로의 이동이 대응 역량을 상시로 앞지른다. 웹하드·P2P가 쇠퇴하고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하며, 다크웹은 URL 확보 자체가

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렵고, 검색 엔진(특히 필터링이 미흡한 해외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 사이트 접근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나아가 개별 게시물 삭제에는 응하면서도 동일 콘텐츠의 반복 재게시(재유포)는 방치하는 사업자 관행은, 삭제·차단을 사후적·소모적 대응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다섯째, 지속 지원 부담의 누적이다. 재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지원 종결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 지원 대상자 증가율(폭)이 신규 인입 피해자 증가율(폭)을 초과하는 추세가 나타나, 한정된 자원으로 누적되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3. 소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앙디지털센터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작동하게 할 법적 권한과 기관 간 관계의 규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강점에서 확인되듯 센터가 권한을 갖고 대응하는 영역(국내 조치 의무 사업자)에서는 이미 높은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약점의 대부분은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즉 해외 사업자·심의 절차·타 기관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회이자 위협의 양면을 지닌 통합지원단의 출범과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가 이 규범적 기반을 재편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진단은 이후 장의 분석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법령 분석)이 규명해야 할 대상은 약점의 규범적 원인이다. 삭제지원 대상의 협소함과 법령 간 불일치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구조에서, 심의 절차상 신속성의 제약은 방미심위 심의 체계와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서, 정보 공유·통보 의무의 부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신설 이후에도 잔존하는 공백에서 각각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이라는 명칭과 조정·강제 권한 부재의 괴리, 통합지원단이 훈령에 근거한다는 점의 법적 함의는 규범적 검토의 핵심 논점이 된다.

제4장(비교법 검토)이 준거로 삼아야 할 지점은 위협과 기회로 확인된 외부 환경의 문제, 특히 센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해외 사업자 대응·국제공조의 미비, 심의 절차를 우회하는 직접 차단 권한, 독립적 권한을 갖춘 통합 기구의 설계라는 과제는, 독립 규제 기관형(호주 eSafety·영국), 형사사법·플랫폼 규제형(미국

NCMEC·독일·프랑스), 인접 법제형(일본·대만) 및 초국가 규범형(유럽연합)의 대응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해법의 준거를 얻을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 실무자들이 호주 eSafety, 미국 NCMEC,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등을 직접 참조 모델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통합 대응 기구의 소속·관할 결정이라는 난제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표 2-3-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WOT 분석 결과

긍정요인	부정요인
<p>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지원 노하우 및 데이터 집적 • 조치 의무 사업자 삭제 완료율 9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형 플랫폼과 안정적 협력 관계 • 지원 보고서 및 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실태 파악의 주요 자료로 기능 • 중앙-지역 이원화 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전문 vs 대면 지원 	<p>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대상규정협소·법령간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22의5 - 사적 대화방·링크 제3자 등 사각지대 • 조치 의무 없는 해외 성인 사이트 비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권한·국제공조 근거 부재 • 심의 절차 경유로 신속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피해에도 방미심위 심의 필요 • 결과 통보 체계 부재·양식 표준화 미비 • 관계 기관 정보 공유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증 통보·구상권 정보 요청 - 수사 상황 공유 불가 • 조정·강제 권한 없음
<p>기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단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 차단·과징금·국제공조 - 위급 피해 직접 대응 •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차단 요청 권한 논의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마련 • '선차단 후심의' 등 입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부장관 직접 차단 권한 논의 등 • 통합 대응 기구 설립 논의 • 딥페이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확대·자원 배분의 정당성 	<p>위협(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단으로의 흡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역할 보조화 • 통합지원단의 법적 안정성 문제 • 방미심위 의결과 실제 집행 간 간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모니터링 절차 부재 • 부처 간 관할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부vs 방미통위 - 시스템 통합 한계 • 유통 경로 이동·해외 검색 엔진·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스트리밍·다크웹·반복 재게시 • 지속 지원 부담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지원 > 신규 인입

제 3 장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삭제·차단지원 중심 문제점 분석

제3장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과 삭제·차단지원 중심 문제점 분석

제1절 |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가. 피해자 중심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조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가는 관련 범죄의 처벌과 피해영상물의 유통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의 양상과 기술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피해영상물이 빠르게 복제·재유포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기보다 피해의 지속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피해자 지원의 영역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현행 삭제지원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의 분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절차,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주요 법률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수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이들 법률은 각각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의 처벌과 수사 특례를 규율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삭제·차단 및 유통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삭제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는 개별 영역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삭제·차단과 같이 여러 기관의 권한 행사와 정보 공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업무에서는 오히려 기관 간 권한 관계와 협조 절차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 피해영상물의 탐색,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 정보의 활용, 조치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협조와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때 삭제지원 전 과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 전문화된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체계 보완 필요

현행법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여러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를 수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는 심의 및 접속차단 기능을 담당하고,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와 증거 확보를 수행한다. 다만 이들 기관 사이에서 누가 삭제·차단 절차를 총괄하고, 각 단계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며, 협조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떠한 책임과 후속 조치가 따르는지에 관한 체계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삭제지원 기관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수사 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 또는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 기관은 삭제·차단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 지원 기관과 공유하거나 삭제지원 절차에 연계하여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행 체계는 관계기관의 자발적 협조나 개별적 업무 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때 피해영상물의 삭제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국내 사업자를 전제로 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와 사업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 삭제지원은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탐색과 대응을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기술·기관 간 연계 체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행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개별 기관에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영상물의 발견에서 삭제·차단 완료와 재유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전문화된 절차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이 연계된 삭제지원 수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처벌 중심 입법 경향과 피해지원 입법과제의 발굴 필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은 새로운 범죄유형을 포섭하고 법정형을 상향하거

나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및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처벌과 수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신고 의무, 임시 차단 제도,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피해 확산 방지와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역시 개별 기관의 권한이나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며, 삭제·차단 지원을 전문적 절차로 구성하려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 피해가 종료되지 않고, 유포된 영상물이 계속 복제·확산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 체계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삭제 및 차단의 전문적 수행 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관심은 처벌 강화 논의에 비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형사처벌과 수사역량의 강화뿐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실질적 삭제와 재유포 방지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법률과 그동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기존 입법이 어떠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하고,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권한과 절차, 기관 간 연계 및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2.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및 관련 법률

가. 일반적인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는 디지털성범죄만을 위한 독립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보호·회복·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역시 이러한 체계 위에서 발전해 왔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까지 전반적인 국가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보호시설 운영,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법률구조와 사회복귀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단순한 사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 보호, 회복, 정책 추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책무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 및 중앙디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특정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이는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헌법 제30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구체화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경제적 지원,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신변 보호 및 지원 기관 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정보제공 제도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결과, 재판 진행 상황 및 형 집행 상황 등 사건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각종 지원제도, 구조금 및 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한 보호·지원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유포와 재유포, 신속한 삭제지원 및 플랫폼 대응 등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중앙디지털센터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에 관한 피해자 지원

이 절에서는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 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 그리고 행정적 삭제·차단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국가의 삭제지원과 중앙디지털센터의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행정적 삭제·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을 온라인 상에서의 삭제지원과 피해 확산 방지에 두고, 국가가 이를 직접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지원의 대상, 절차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우선 삭제지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및 편집·합성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상물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포까지 함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삭제지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

도 수사 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경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삭제지원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 회복과 형사사법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죄 경력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삭제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법은 삭제지원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이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삭제지원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위탁 규정을 근거로 현재 중앙디성센터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및 삭제·차단 관련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중앙디성센터의 설치 근거와 삭제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다. 삭제지원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삭제 요청, 삭제 진행 상황의 관리 및 피해 회복 지원까지 연계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삭제지원과 관련한 국내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삭제지원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률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연계한 이원적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디성센터는 피해자 상담, 삭제지원 및 사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삭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다성센터는 이를 지원·조정하면서 전국적인 삭제지원의 기준과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다성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삭제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다성센터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러한 삭제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중앙다성센터에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 업무를 일회적인 민원 처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은 삭제지원 업무의 운영 기반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한 삭제지원 업무를 구체화하여 삭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와 삭제지원 관련 종합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삭제지원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이 단순히 개별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제지원의 실효성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지역다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위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역다성센터에도 삭제지원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삭제지원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전문 인력 확보 여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운영계획 및 재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삭제지원 업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은 중앙다성센터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심의기관으로서 삭제·차단 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의 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플랫폼의 삭제 조치 사이에서 해당 정보가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행정적 삭제 절차를 수행하는 심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 수사 연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수사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단순한 범죄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 체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고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 수사 기관을 범죄의 사후 수사 기관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영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 기관이자 삭제지원 연계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 절차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의 규명뿐만 아니라 삭제지원, 피해자 안내 및 긴급 보호조치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

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수사 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한 단계에서 삭제·차단 절차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함께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직접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그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국가의 삭제지원 업무를 중앙디지털센터 등이 수행하므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과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즉, 수사 기관은 직접적인 수사와 플랫폼에 대한 긴급 삭제·차단 요청을 담당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전문적인 삭제지원으로 매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수사 기관의 삭제지원 연계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경찰수사규칙」 등은 이를 수사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경찰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안내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유형별 안내서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서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7조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상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역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8조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7일 이내, 이후 3개월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수사규칙」 제13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대신 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원체제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플랫폼 규제 및 협력체계

(1)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 및 플랫폼 운영 절차

디지털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양 법률은 디지털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 보완적인 규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 임시 조치, 신고 절차,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 등 플랫폼의 삭제지원 운영체제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먼저, 해당 법률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 및 임시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될 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 조치 제도를 두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게시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2 제4항).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플랫폼의 자율적인 대응도 허용하고 있다(제44조의3).

또한 불법 정보에 대한 행정적 삭제·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삭제 요청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의 심의와 명령을 통하여 불법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제44조의2는 피해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 반면, 제44조의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적·행정적 규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이 개별 사건에서 삭제 요청과 행정적 삭제·차단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면,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2 등은 플랫폼 내부에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9는 플랫폼 내부의 삭제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 내부에 삭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통 방지 업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12는 신고·처리 절차 및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사유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삭제·접속차단뿐만 아니라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러 플랫폼은 불법 정보의 판정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스스로 불법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규율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운영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하며(제44조의14),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 요청 처리 현황, 유통 방지를 위한 절차의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4조의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의 삭제 및 유통 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 삭제 요청 및 행정적 삭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이 삭제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제와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투명성 보고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 의무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때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치 의무 사업자는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 촬영물 등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과 편집·합성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플랫폼이 단순히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를 하도록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단체의 요청도 사업자의 인식을 발생시키는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기관과 수사 기관 등이 플랫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작동시키는 연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조치 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후적인 삭제·차단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유통과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까지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실제로 이행하여야 할 삭제·차단 및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업자 규제법으로 기능한다.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의 법체계

가. 관계 기관의 설치 근거 및 역할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체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의 피해자 보호·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사업이나 행정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지원업무를 법률상 상설적인 전달체제로 편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중앙과 지역 단위의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법률은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구성은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개별 피해사건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지원기준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연결하는 중앙지원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전문인력 교육, 국내외 협력 및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기능은 개별 지원업무를 넘어 전국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지역디성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피해예방 교육·홍보 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지역 단위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는 동일한 업무를 단순히 중복하여 수행하는 관계라기보다, 중앙디성센터가 전국 단위의 전문적·조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디성센터가 접근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지역디성센터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은 중앙과 지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체계보다는 중앙디성센터의 지원 아래 지역디성센터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형 전달체계를 예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실제 조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에는 각각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센터장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의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지역디성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운영주체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기본적인 조직요건과 계획수립 의무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조직편성과 운영방식에는 각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인정한 구조이다.

시행규칙은 중앙디성센터의 추가 업무로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와 종합통계의 작성·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디성센터에도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와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경험과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축적하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기반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특히 중앙디성센터의 종합통계 기능과 지역디성센터의 지역 단위 통계·협력 기능은 전국적인 정책자료의 축적과 지역별 지원수요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기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지역디성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시설·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운영방식에 일정한 탄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지원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정·공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하면 현행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는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와 시·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디지털성범죄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에는 전국 단위의 지원기반 구축과 지역디지털성범죄 지원 기능을, 지역디지털성범죄센터에는 현장 중심의 상담·사후관리 및 지역협력 기능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조직·사업계획·통계관리 및 위탁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 및 전문적인 조직운영을 전제로 하는 지속적인 공공지원체계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직,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부 상임위원을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정보통신상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법 제22조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심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주요 기능으로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심의를 담당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와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하여 행정적

심의를 수행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는 심의 결과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을 직접 삭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불법정보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시정조치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체계에서 중앙디성센터, 수사 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행정적 심의와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지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디성센터를 관리·감독한다.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의3), 중앙디성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의4). 또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자료 보관, 구상권 행사 절차 및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삭제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즉,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하여 중앙디성센터를 운영·지원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제도 운영 및 전문 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적 총괄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로 볼 수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은 성평등가족부 내부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 예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디성센터 운영기반 마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지위를 가진다.

(4)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디성센터 외에도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도 신고를 거쳐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삭제지원 등을 추진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디성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지역 단위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는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소·보호시설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주로 상담, 보호 및 회복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제2절 | 디지털성범죄 삭제·차단 지원 법률의 한계

1. 삭제지원을 위한 법적 권한의 한계

가. 삭제지원의 연속성과 복합성

현행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은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및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이 연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하면 센터는 피해 상황과 피해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영상물 및 유포 URL 등을 확보한 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한다. 아울러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증거 수집이나 수사 연계를 지원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 요청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재요청 또는 심의요청을 진행한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삭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재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수사 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인 삭제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²⁶⁾

이처럼 실제 삭제지원은 단일한 행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물의 URL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외 플랫폼이나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며, 삭제 요청 이후에는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된 영상물이 다른 주소나 플랫폼을 통해 재유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가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결국 삭제지원은 단순한 '삭제 요청'이라기보다

26) 한국여성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

URL 확보, 삭제·차단 요청, 미삭제 게시물에 대한 반복 대응, 해외 사업자 협력, 삭제 완료 확인 및 재유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하나의 지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삭제지원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삭제지원의 수행 자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지원을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과 협력 체계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나의 피해자 지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처럼 실제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현행 법률은 삭제지원의 수행 자체와 전담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지원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의 범위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삭제지원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상당 부분은 실무 운영과 관계기관의 협력에 맡겨져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삭제지원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삭제지원 수행 범위와 권한의 불명확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촬영물 등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설치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 삭제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디지털성범죄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삭제지원이라는 국가의 업무와 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와 누가 이를 수행할 것인지 규정하면서도, 삭제지원이 어떠한 절차와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규율하지 않고

있다. 상술한 바처럼 삭제지원은 피해영상물의 존재와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URL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미삭제 게시물에 대한 반복 요청이나 심의요청, 국외 플랫폼 및 불법 사이트와의 협의, 삭제 여부의 확인,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삭제 요청까지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센터의 실제 업무 흐름에서도 피해영상물 검색, 플랫폼별 삭제 요청,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미삭제 건에 대한 재요청, 삭제 이후 재유포 여부 확인 등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별 행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법률상 '삭제지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정확한 URL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센터가 직접 유포물을 탐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 플랫폼이 최초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행위, 국외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 삭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및 삭제 후 재유포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행위가 모두 삭제지원의 당연한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법률의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시행규칙 역시 중앙·지역다성센터의 조직, 사업계획, 만족도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운영기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삭제지원 사건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나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삭제지원의 종료 시점 역시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때 지원이 종료되는지, 해당 URL에 게시된 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동일한 영상물의 재게시나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까지 일정 기간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삭제 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플랫폼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 여부를 회신하지 않거나, 삭제 후 같은 영상물이 다른 주소로 재유포되는 때는 어느 기관이 어떤 후속 조치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운영에서는 최소 3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하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 기간과 종료 기준은 법률이 정한 절차라기보다 센터의 운영 방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다.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현행 삭제지원 체계는 중앙디성센터가 직접 게시물을 제거하여 절차를 완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심의 기관에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삭제지원의 실효성은 최초 요청이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요청 이후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삭제 요청 이후 각 단계에서 누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 누가 후속 대응을 담당하며, 언제까지 삭제지원 절차를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책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향물의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접속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차단 조치 등 여러 기관과 주체의 업무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센터가 삭제를 요청한 이후 플랫폼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심의·차단 절차가 지연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이 다시 유포되면 해당 사안을 어느 기관이 계속 관리하고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삭제지원이 최초 요청을 중심으로 운영될 뿐, 요청 이후의 이행 확인과 미이행 시 후속 대응까지 하나의 연속된 책임 아래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책임 부재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책임 구조란 삭제지원의 각 단계에서 수행 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와 그 종결 여부를 확인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대응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책무를 의미한다. 즉, 관계 기관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지원은 여러 기관이 각자의 법적 권한에 따라 협력하여 수행하는 행정작용인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책임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조 의무, 처리 절차 및 후속 조치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책임 구조를 의미한다. 삭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처리 의무, 처리 결과의 회신·통지 의무, 관계 기관 간 협조 의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후속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개별 기관의 재량이나 자발적인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2. 협력 체계 구축의 한계

현행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를 삭제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센터는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과 협력하여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지원은 여러 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연계되는 협력적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은 삭제지원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관 간 협조업무와 정보공유, 업무연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한계는 수사 정보 공유, 기관 간 정보연계,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활용 및 연계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의 한계

현행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를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센터는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삭제지원은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기능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협력적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삭제지원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체계는 충분히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즉 센터가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삭제 요청 이후 진행 상황의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실제 삭제지원은 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는 상당 부분 실무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은 성평등가족부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정하거나 업무 연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절차까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삭제지원은 플랫폼 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업무인 만큼, 개별 수행기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안정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 기준과 업무 연계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상당 부분은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약이나 실무 운영 기준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 체계가 실무적 운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협조가 지연되거나 기관 간 의견이 달라지는 때는 삭제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삭제지원 수행 기관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 간 협조 의무와 역할 분담, 업무 연계 절차 등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삭제지원을 한 기관 협력체계의 한계

(1)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상 문제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경찰수사규칙」 등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사 기관의 삭제지원 연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삭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 정보를 어떠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삭제지원에는 URL, 계정정보, 유포경로, 추가 게시물의 존재 여부, 해외 플랫폼 정보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떠한 정보를 삭제지원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 정보의 외부 제공이 수사 기밀의 유지나 피의자 특정, 증거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보다는 수사 정보로 보아 제공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나 기관 간 협조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해외 플랫폼이나 익명 사이트를 통한 유포가 빈번하여 국제공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삭제지원에 직접 활용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나 국제공조 결과를 삭제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디성센터가 독자적으로 유포 경로와 URL을 탐색하거나 해외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피해 확산 방지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삭제지원에 필요한 수사 정보의 범위와 제공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으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와 협력체계상 문제점

중앙디성센터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의 관계를 보면, 현재에도 센터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가 심의·조치한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의 업무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요청과 처리 결과를 주고받는 수준의 연계에 가까우며, 삭제지원의 전 과정에서 양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센터가 확인·수집한 자료를 심의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긴급한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안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연계할 것인지, 심의·조치

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절차와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전제로 하되, 개별적인 요청과 결과 회신을 넘어 삭제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과 협력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기관별 절차와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지원은 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각 기관의 개별적인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적용할 공통의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의 판단기준, 삭제·차단 요청에 필요한 정보와 양식, 처리 결과의 통보 방식 및 기관 간 사건 연계 절차 등이 기관이나 사업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공통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 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대 기관이나 플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와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각 기관이 삭제지원 대상과 불법성 판단기준을 달리 해석하면 사건의 이관이나 후속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의 통보 형식과 범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삭제·차단의 완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다시 지원 과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연결할 표준절차와 공통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체계가 개별 기관의 업무 관행이나 담당자 간 협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플랫폼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삭제·차단 요청 양식 및 결과 통보 양식, 처리 단계별 업무 기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기관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삭제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절차와 항목을 정립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이는 새로운 실체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라기보다, 기존 기관들이 보유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

가. 해외 플랫폼 및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의 한계

실무상 논의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를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법에 따른 삭제·차단 요청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에 대한 삭제지원 건수는 주요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지만 삭제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²⁷⁾ 성인사이트의 삭제 완료율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²⁸⁾ 특히 해외 불법 사이트는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버의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접속 주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영상물의 URL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동일한 영상의 재유포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한 단계에서 삭제·차단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사 기관이 이미 게시·유통 사실과 해당 정보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해외 불법 사이트와 같이 URL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동일한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다시 유포되는 경우에는 최초 URL을 확인한 이후 새로운 유통 경로를 누가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수사 기관이 확보한 관련 정보를 피해자 지원 기관과 어떠한 절차로 공유하며, 삭제·차단 결과를 다시 수사와 모니터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법은 개별적으로 확인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지원

27) 2023년 9월 19일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중 삭제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22만7천33건)가 가장 많았으나, 삭제 완료율은 주요플랫폼 대비 가장 낮은 수준(79%)으로 나타났다.

28) 당시 토론회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실제 성인사이트의 불법촬영물 삭제 완료율은 2018년 71.7%, 2019년 70.5%, 2020년 49.2%, 2021년 60.2%, 2022년 60.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연계의 근거는 두고 있으나, 수사 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외 사이트의 URL을 공동으로 탐지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유하는 수행 체계까지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넘어, URL 공동 탐지, 관련 정보의 공유, 국제공조, 삭제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삭제·차단 절차의 신속성 한계

(1)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중심

현행 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 요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신고를 전제로 삭제·임시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삭제 요청이나 신고 등 외부로부터의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최초 유포 직후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플랫폼이나 관계기관이 피해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즉시 삭제·차단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연계 체계는 법률상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 법제는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지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까지는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플랫폼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유포를 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동일 피해영상물의 반복 유포에 대한 일괄 대응체계 미비

현행 법령은 개별적으로 확인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영상물이 여러 URL이나 플랫폼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반복적인 삭제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동일한 영상이 주소만 변경된 채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현행 법제는 개별적으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영상물임이 확인된 때는 이를 일괄적으로 연계하여 삭제하거나, 동일 콘텐츠를 기준으로 반복적인 삭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도 삭제지원 기관과 플랫폼이 개별 URL마다 반복적으로 삭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 의무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임시 조치 절차, 행정기관의 삭제·접속 차단 명령 등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3) 증거확보 절차와 삭제지원 간 연계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복제·재유포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발견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이 실제로 게시·유포되었다는 사실과 게시 당시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과정에서는 신속한 삭제와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도 삭제지원 과정에서 피해영상물과 게시화면 등을 채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채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

지원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센터에서 이미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증거확보를 위해 영상물의 게시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만큼 실제 삭제·차단이 늦어지고 피해가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물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신뢰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삭제지원만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을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영상물 게시화면 등 필요한 증거를 간단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삭제를 지연하는 방식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 및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확보한 채증자료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절차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신속 대응 한계

그러나 현행 법제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인지한 이후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피해영상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 단계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긴급 대응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 조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일반적인 권리침해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특화된 신속한 차단 절차와는 입법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자나 디성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거나, 해외 사업자 또는 해외 불법 사이트와 같이 직접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심의한 후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는 절차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특정 해외 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은 개별 플랫폼이 자기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달리 통신망을 통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때는 삭제·접속 차단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영상

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디성센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우선 임시 차단을 실시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²⁹⁾ 이는 현행법상 삭제 요청 이후의 조치 의무만으로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 등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현행 법제는 삭제·차단 의무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한 초기 차단 절차는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해서만은, 삭제·차단 이전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현재의 사전 심의 구조를 사후 심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이 디성센터 등의 요청을 받으면 우선 삭제 또는 임시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우선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즉 삭제·차단을 위한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시점을 사후로 전환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우선하려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삭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과 신속한 조치의 책임이 플랫폼으로 이전되므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법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차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삭제를 지연하거나 오판한 때는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후 심사 중심의 구조는 플랫폼의 일차적 판단과 책임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 차단 제도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

29)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이 우선 임시차단을 실시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김영배 의원,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대응을 확보하면서도 플랫폼의 면책 범위 및 디성센터의 요청 요건, 사후 심사 절차, 권리 구제 방안 등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차단 결과 확인 및 환류 체계의 부재

현행 법제는 삭제 요청과 삭제·접속 차단의 이행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 간 공유하는 환류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12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청이나 신고를 처리한 때는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14 및 제64조의5는 운영보고서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하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 의무 사업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별 삭제 요청이나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삭제 요청이 실제 삭제 완료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디성센터, 수사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플랫폼 사이에서 삭제 완료 여부, 미삭제 사유, 재유포 여부 등을 연계하여 관리하거나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 역시 법률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삭제가 완료되어 피해영상물의 유통이 중단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 디성센터가 플랫폼별 삭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삭제지원의 기준이 '삭제 요청'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완료'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환류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조적 한계

가. 현행 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센터를 두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과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률은 중앙디지털성센터에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연구·홍보, 전문 인력 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디지털성센터 지원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디지털성센터는 피해 상담, 삭제지원, 사후 관리 등 지역 단위의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디지털성센터는 전국 단위의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디지털성센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분담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나. 중앙·지역 센터 운영 체계의 구조화 한계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디지털성센터와 지역디지털성센터의 설치 및 기본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중앙디지털성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중앙과 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삭제지원 체계로 운영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디지털성센터가 지역디지털성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삭제지원 업무의 수행 기준을 통일하거나 업무 품질을 관리·평가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체계까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플랫폼 대응,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기술

적 탐색, 반복적인 삭제 요청 등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지역디성센터의 운영은 사·도 또는 수탁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력과 전문성, 삭제지원 경험 등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편차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삭제지원의 신속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앙디성센터는 전국 단위의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례와 대응 기법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디성센터의 업무 기준이나 교육체계, 사례 관리로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구조는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다. 삭제지원은 기술 환경과 플랫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응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인 만큼, 중앙디성센터가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일관된 업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삭제지원 기준의 표준화, 전문 인력 교육, 사례 관리, 업무 평가 및 품질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관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1. 제21대·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벌 범위의 확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차단, 수사 기관의 권한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허위 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차단 및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관련 법률안은 크게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의 규제 범위 확대, ②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③ 디성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확대, ④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증거 수집 권한 강화, ⑤ 신고 및 피해배상 제도의 보완, 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규제 범위 확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법률안으로는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의안번호 제2204158호). 이 법률안은 이후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합성 영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술 개발·교육·홍보 및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근거를 확충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수사 기관의 장도 일정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중앙 통합 체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적절한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의안번호 제2217704호). 이는 사업자의 역할을 단순한 사후 삭제·차단에서 범죄의 조기 발견과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나.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의안번호 제2215242호). 이는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적·잠정적 조치인 임시 차단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불법촬영물 등

의 삭제·차단과 관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으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제2203478호). 이들 법률안은 플랫폼 또는 조치 의무 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피해자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이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회신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은 아니다.

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제화

서지영 의원안과 이인선 의원안은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안번호 제2203276호 및 제2203393호). 이들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의결되었다(의안번호 제2204306호).

위원회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삭제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보수교육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는 종래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중앙디성센터와 지역 지원 기관을 법정 피해자 지원체제로 편입하고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은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의 설치 및 기본적 업무를 법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연계, 삭제지원 기준의 표준화, 사례의 환류, 업무 평가 및 품질 관리와 같은 통합적 운영 체계까지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라.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수사 권한 강화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안번호 제2203475호). 해당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인 같은 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의안번호 제2205962호). 이는 수사 기관의 역할을 범죄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영상물의 추가 유통을 방지하는 단계까지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를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여,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패킷 감청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의안번호 제2204685호). 이는 삭제지원보다는 디지털성범죄의 수사과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안이다.

마. 피해 신고·배상 및 피해 회복 수단의 보완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용 범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제2203813호). 또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안하였다(의안번호 제2208445호). 이러한 법률안은 피해자의 금전적 회복 수단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미 유통된 피해영상물을 발견하고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삭제 지원 절차와는 구별된다.

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범위 확대 및 법정형 강화

제22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황정아 의원안은 허위 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의안번호 제2204162호). 김남희 의원안(의안번호 제2203245호) 및 서영교 의원안(의안번호 제2203395호)도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 확대와 법정

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들 법률안은 이후 위원회 대안 등을 통하여 일부 입법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처벌 강화 입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피해영상물의 탐색·삭제 요청·삭제 확인·재유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 업무의 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입법은 아니다.

2. 입법동향의 평가 및 시사점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을 종합하면,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입법은 대체로 처벌 범위의 확대, 수사 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 임시 차단, 신고 의무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표 3-3-1). 특히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의 주체로 포함된 것은 삭제지원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 [표 3-3-1] 제21·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내용 분류(총 13건*)

내용	법률안 건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의 규제 범위 확대	2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	2
디성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확대	2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및 증거 수집 권한 강화	2
신고 및 피해배상 제도의 보완	2
삭제지원 업무 단계별 권한 및 절차 명확화	0
관계 기관 및 플랫폼 간 협력 체계 강화	0
사후 관리 체계 구축	0

* 복수의 의원안을 반영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제외한 건수

그러나 지금까지의 입법은 주로 각 기관에 개별적인 권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적인 피해 회복 절차로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정보연계와 업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표 3-3-1). 즉 수사 기관의 삭제·차단 요청권, 사업자의 조치 의무,

방송통신심의기구의 심의·차단 기능 및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업무는 각각 보완됐지만, 이들 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어느 단계에서 공유하고 삭제 요청 이후의 진행 상황 및 이행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관계 기관 간 협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디성센터가 정보 연계와 삭제지원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사이에서도 업무 기준의 표준화, 사례의 공유·환류, 교육 및 품질 관리 체계를 법률상 구체화하려는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존 발의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 수단과 피해자 지원 기반을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삭제지원을 단순한 삭제 요청이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탐색에서 삭제 완료 확인 및 재유포 대응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조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입법에서는 각 기관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조정 기능, 중앙디성센터의 전문적 집행 기능 및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결과 회신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수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절 | 소결

현행 법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업무와 그 수행 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삭제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피해영상물의 탐지 및 URL 확보, 삭제·차단 요청, 수사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처리 결과 확인, 미삭제 시 추가 대응, 국외 사업자와의 협력, 재유포 모니터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각 단계가 서로 다른 기관과 법률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 정비에는 새로운 처벌 규정이나 개별 기관의 권한을 단편적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지보다, 삭제지원 전 과정을 하나의 전문적인 수행 체계로 구체화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단계의 수행 주체와 필요한 권한, 기관 간 사건 연계와 정보 공유 방식, 플랫폼 등의 처리 결과 통지 및 확인,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재요청·보고·시정 요구 등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개별 기관의 자율적 협조나 담당자의 업무 관행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 정비는 삭제지원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삭제지원 업무 전문화** : 삭제지원 기관의 권한 및 역할 명확화, 단계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 구체화
- ② **삭제·차단 절차 신속화** : 피해영상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삭제·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③ **단계별 절차 간소화** : 피해영상물 탐지, 삭제·차단, 처리 결과 확인, 미삭제 시 후속 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의 수행 주체와 연계 절차 명확화
- ④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결과 통보 체계 마련
- ⑤ **플랫폼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플랫폼과 수사 기관,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삭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⑥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삭제지원 수행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4 장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비교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비교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물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재유포된다는 점에서 기존 성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각국은 피해 콘텐츠의 삭제와 차단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수사 기관 연계, 재유포 방지기술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체계는 국가별 법제도와 정책 환경에 따라 조직의 법적 지위와 권한,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EU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피해자 지원 기능, 플랫폼 협력 방식 및 기술적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별 운영모델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중앙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와 전문 기능 강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 미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1. 대응 체계의 개요

미국은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특히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법집행기

관 연계 및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을 핵심 기관으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과 법집행기관이 협력하는 중앙 집중형 대응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체계의 핵심은 NCMEC이 운영하는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이다. CyberTipline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시민으로부터 아동 성착취 의심 사례를 접수·분석한 뒤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에 전달하는 전국 단위 신고 허브로 기능한다. Take It Down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해시(Hash)값을 이용하여 참여 플랫폼에서 동일한 이미지의 게시와 재유포를 방지하는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 서비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 체계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 전문 기관,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 중앙 집중형 정보 분석 및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기술을 결합한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정보 분석, 수사 기관 연계 및 기술적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기능을 하나의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NCMEC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

가. 기관의 설립과 법적 지위

NCMEC은 1984년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 기구(Statutorily Authorized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법률에 따라 공적 기능을 부여받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 기관이다. 현재 NCMEC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집행 기관, 온라인 플랫폼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실종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PROTECT Act(2003)」와 「PROTECT Our Children Act(2008)」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NCMEC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제도화하고, CyberTipline 운영과 전자 서비스 제공자(Electronic Service Providers)

의 신고 정보 처리 등 공적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주요 기능과 운영 특징

NCMEC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실종아동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피해자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분석하여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중앙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상의 특징은 법률에 근거한 민관 협력 체계와 중앙 집중형 운영 구조에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전문 기관으로서 법집행 기관, 온라인 플랫폼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CyberTipline을 통한 신고·정보분석 기능과 Take It Down을 통한 기술적 피해자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예방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법적 권한과 한계

NCMEC은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 기구로서 직접적인 행정 규제 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를 접수·분석하고 이를 법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공식 신고 기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특히 전자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관련 신고를 접수·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접수된 신고를 분석하여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의 핵심적인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및 피해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다만 NCMEC은 행정 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수사권, 조사권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삭제 명령권과 같은 규제 권한은 보유하지 않는다. 불법 콘텐츠의 삭제와 플랫폼에 대한 조치는 법집행 기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NCMEC은 신고 접수와 정보 분석, 피해자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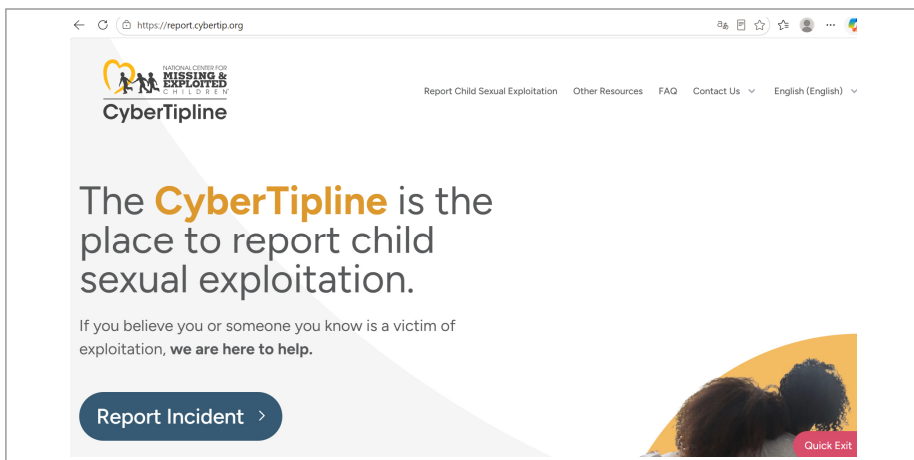
역할을 한다. 또한 기관의 법적 기능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성인 피해자의 디지털성범죄에는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주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가. CyberTipline(신고시스템)

CyberTipline은 NCMEC이 운영하는 미국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 시스템으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중앙 집중형 신고 체계이다.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국 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의 핵심 신고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자 서비스 제공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심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림 4-1-1] 미국의 CyberTipline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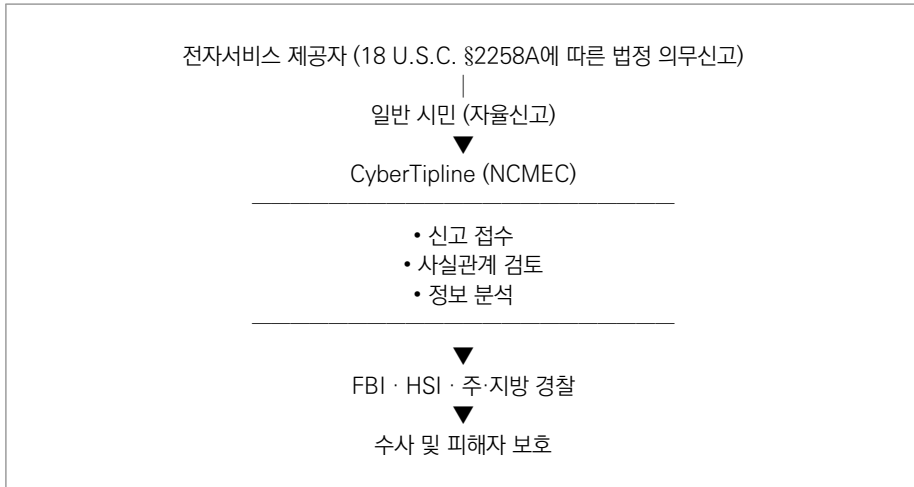


출처: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https://report.cybertip.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CyberTipline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NCMEC에서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분석한 후 연방 수사 기관(FBI), 국토 안보 수사국(HSI) 및 주·지방 법집행 기관으로 전달된다. 또한 신고 자료는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단위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4-1-2] 미국의 CyberTipline 운영 절차



출처: 저자 작성, NCMEC 운영체계 재구성

CyberTipline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에 근거한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와 중앙 집중형 신고 체계를 결합한 운영 방식에 있다. NCMEC은 직접적인 수사권은 보유하지 않지만, 법정 신고접수기관으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나. Take It Down(삭제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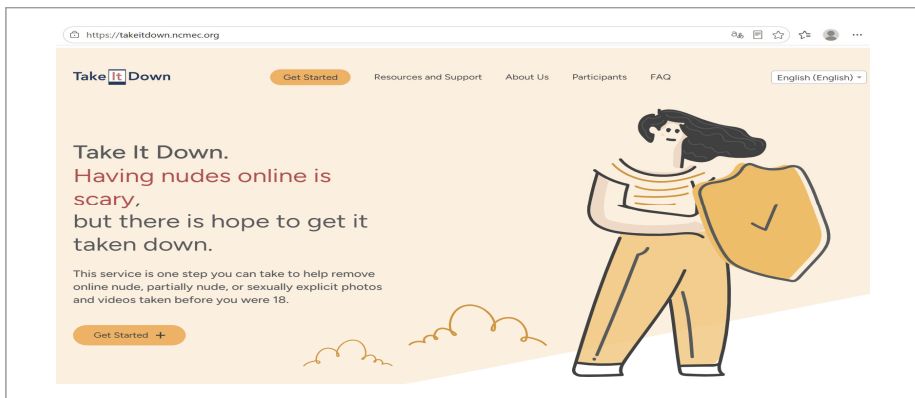
Take It Down은 NCMEC이 운영하는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삭제 및 채유포 방지 지원 서비스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대해 해시(Hash)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재게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기에서 이미지의 해시값을 생성한 후 이를 참여 플랫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원본 이미지나 영상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플랫폼에 다시 게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Meta, Instagram, Facebook, TikTok, Snapchat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ake It Down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 삭제보다 재유포 예방에 중점을 둔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 서비스라는 점이다. 특히 해시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플랫폼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 플랫폼 협력을 결합한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서비스의 효과는 참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 [그림 4-1-2] 미국의 Take It Down 해시(Hash) 기반 재유포 방지 서비스



출처: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https://report.cybertip.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4. 미국 제도의 특징

미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정보 분석, 법집행기관 연계 및 기술적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NCMEC은 연방정부와 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서 신고 체계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yberTipline과 Take It Down을 통해 신고 접수와 해시(Hash) 기반 재유포 방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법정 민간 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결합하여 플랫폼의 의무 신고 제도와 기술 기반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NCMEC는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규제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플랫폼의 법정 신고 의무와 협력 체계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주요 지원 대상이 아동·청소년 피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편 2025년 제정된 「TAKE IT DOWN Act」에 따라 일정한 비동의 친밀 이미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와 알려진 동일 복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도입되었으며, 2026년 5월부터 FTC가 관련 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대응 모델은 법정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신고, 정보 분석, 법집행 기관 연계 및 기술적 재유포 방지를 결합한 전문 기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전문기관 중심의 대응체계에 플랫폼의 법적 삭제의무가 결합되고 있다. 전문 기관의 법적 지위와 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결합한 운영 방식은 향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참고사항 제목】

미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기관 및 서비스

1.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https://www.missingkids.org>
2. CyberTipline
<https://report.cybertip.org>
3. Take It Down
<https://takeitdown.ncmec.org>
4. Federal Trade Commission(FTC)
<https://takeitdown.ftc.gov>

제2절 |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1. 대응 체계의 개요

호주는 eSafety Commissioner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세계 최초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한 이후, 「Online Safety Act 2021」을 제정하여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온라인 괴롭힘 및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제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대응 체계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나 게시자에게 삭제 명령(Removal Notice)을 발부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정보 제출 요구 및 민사 제재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독립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플랫폼 규제를 통합한 대응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삭제 명령권과 플랫폼 감독권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온라인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2. eSafety Commissioner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가. 기관의 설립과 법적 지위

eSafety Commissioner는 201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사이버 괴롭힘 및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후 「Online Safety Act 2021」의 제정으로 법적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전담 규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독립 법정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과 피해자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나. 주요 기능과 운영 특징

eSafety Commissioner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및 플랫폼 규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 명령을 발부하며,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지원과 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담과 삭제통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보 제출 요구, 삭제 명령 및 민사 제재 등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교육과 정책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사후 피해 구제뿐 아니라 온라인 안전 문화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법적 권한과 한계

eSafety Commissioner는 「Online Safety Act 2021」에 근거하여 삭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민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삭제 명령 등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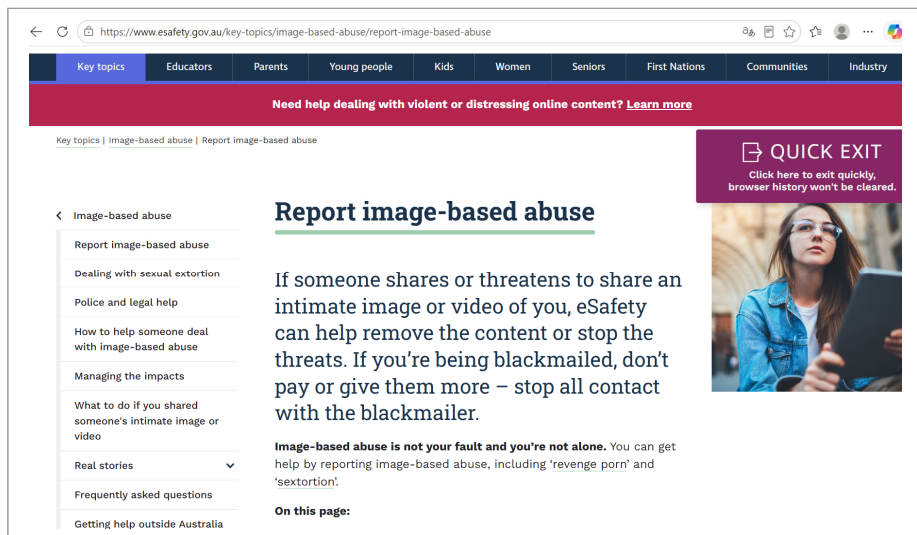
이와 같은 권한은 다른 국가의 민간 피해자 지원 기관과 달리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립 규제기관 운영에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며,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집행에는 국제법적·관할권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3.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 절차

eSafety Commissioner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유형, 게시된 콘텐츠의 위치(URL),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에는 동의 없이 게시된 사적 이미지나 영상뿐 아니라 게시 협박, 성적 갈취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 등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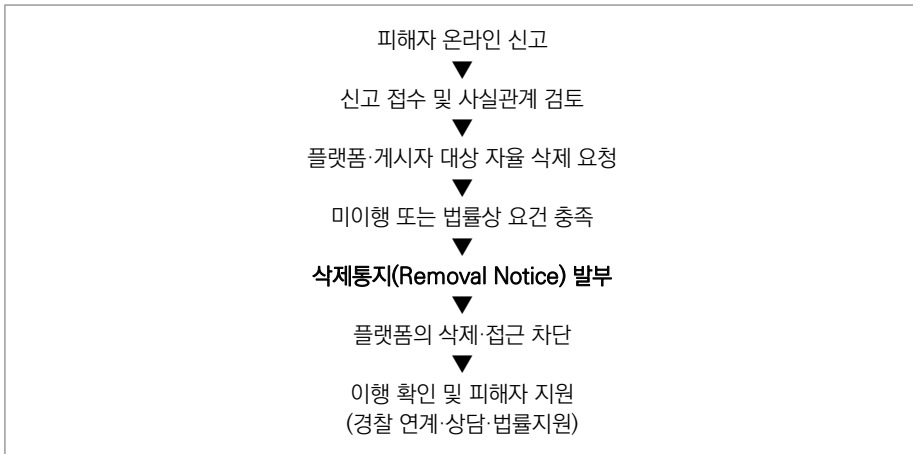
» [그림 4-2-1]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신고 페이지



출처: eSafety Commissioner, Report Image-Based Abuse,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report-image-based-abuse>
 e (최종 접속일: 2026. 7. 16.)

eSafety Commissioner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사실 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게시자에 대한 삭제 요청, 삭제 명령, 이행 확인 및 피해자 지원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4-2-2]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 대응절차



출처: 저자 작성, eSafety Commissioner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호주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대응 절차는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조치, 플랫폼의 이행 확인 및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eSafety Commissioner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삭제 통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과 규제를 결합한 독립 규제기관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참고사항 제목]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및 이미지 기반 성폭력 대응 관련 웹사이트

1. eSafety Commission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
2.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안내 및 신고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
3. 이미지 기반 성폭력 신고 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report-image-based-abuse>
4. 「Online Safety Act 2021」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au/C2021A00076/latest>

제3절 | 영국 등 기타 국가의 대응 체계

1. 영국

영국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성착대물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율과 전문기관의 피해지원·플랫폼 협력을 결합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South West Grid for Learning(SWGfL)과 Internet Watch Foundation(IWF) 등 전문기관이 피해자 지원, 불법 콘텐츠 신고·삭제 및 재유포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플랫폼·수사기관과 연계하는 구조가 발달해 있다. 최근에는 「Crime and Policing Act 2026」을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전문기관·플랫폼 협력 중심 체계에 법적 의무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가. Revenge Porn Helpline

Revenge Porn Helpline은 SWGfL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피해 상담, 콘텐츠 삭제지원 및 경찰·플랫폼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피해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콘텐츠의 삭제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이다.

나. StopNCII

StopNCII는 SWGfL이 운영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재유포 방지 시스템으로, 피해자의 원본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생성한 해시(Hash)를 참여 플랫폼과 공유하여 동일한 이미지의 재게시를 탐지·차단한다. 플랫폼과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재유포를 방지하지만, 참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 [그림 4-3-1] 영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요 서비스



출처: (좌) Revenge Porn Helpline,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StopNCII, <https://stopncii.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다. Internet Watch Foundation(IWF)

Internet Watch Foundation(IWF)은 온라인 아동성적학대물(CSAM)의 신고·판단·삭제 및 재유통 방지를 담당하는 독립 비영리 전문기관이다. 일반적인 성인 NCII가 아니라 아동 성적학대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신고된 콘텐츠의 불법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삭제를 지원하고 해시 기술 등을 활용한 재유통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Childline(아동·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과 함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Report Remove를 운영하고 있다.

라. 2026년 법제 변화와 플랫폼의 삭제의무 강화

영국에서는 최근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삭제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4월 29일 제정된 「Crime and Policing Act 2026」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유효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등이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Trusted Flagger 지정 및 Hash Registry에 관한 규정도 도입하였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아직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며, 영국의 대응체계는 기존의 전문지원·기술협력 중심 방식에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 영국 제도의 특징

영국의 대응체계는 피해 유형과 기능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으면서, 플랫폼과의 협력 및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지원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성인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피해에 대해서는 Revenge Porn Helpline과 StopNCII가 피해지원과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를 담당하고, 아동성적학대물에 대해서는 IWF가 신고·판단·삭제 및 재유포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는 그동안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2026년 법제 변화를 통해 플랫폼의 삭제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기존의 전문지원·기술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결합해 나가는 모델로 볼 수 있다.

2. 독일

독일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법률 지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는 권리구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인 HateAid는 디지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공익법인(gGmbH)으로, 전략적 소송과 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가. HateAid의 조직과 기능

HateAid는 2018년 설립된 민간 전문 기관으로, 디지털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연계 및 소송지원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삭제 명령권은 보유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략적 소송과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차별화된다.

나. Trusted Flagger를 통한 플랫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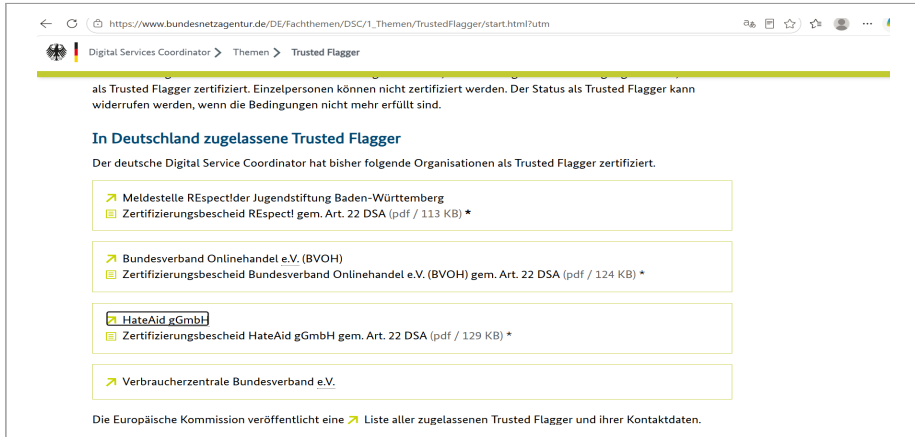
HateAid는 2025년 「Digital Services Act」 제22조에 따라 독일의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HateAid가 제출하는 불법 콘텐츠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선 심사되지만, 삭제 명령권이나 규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Trusted Flagger는 전문 기관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Trusted Flagger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지정요건, 신고의 효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4. EU 차원의 협력체계'에서 살펴본다.

다. 독일 제도의 특징

독일은 법률지원과 전략적 소송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Trusted Flagger 제도를 통해 플랫폼 대응을 보완하는 권리구제 모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행정적 규제보다 사법적 권리구제와 플랫폼의 절차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호주, 영국과 차별화된다.

▶▶ [그림 4-3-2] 독일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의 Trusted Flagger 안내 페이지



출처: Bundesnetzagentur, Trusted Flagger,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Fachthemen/DSC/1_Themen/TrustedFlagger/start.html (최종 접속일: 2026. 7. 16.)

3.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와 디지털 피해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대응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France Victimes가 법률·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반면, e-Enfance는 국가 상담번호 3018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및 플랫폼 대응을 수행한다.

가. France Victimes

France Victimes는 전국 단위의 범죄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심리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기반 기관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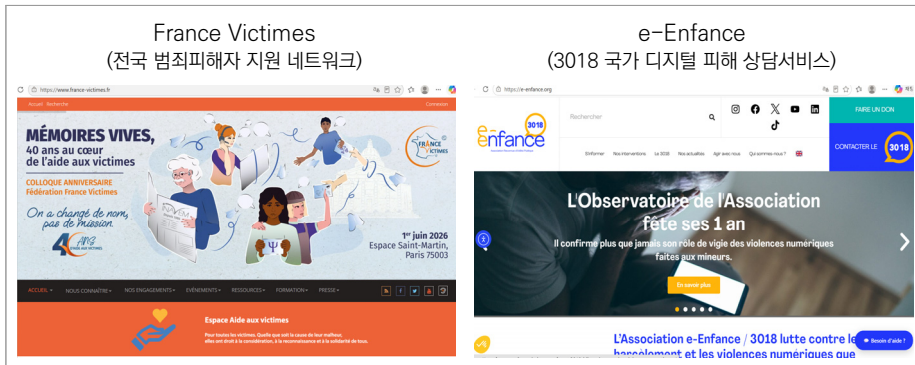
나. e-Enfance 및 3018

e-Enfance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폭력 대응을 위한 공익 비영리기관으로, 국가 상담 서비스 3018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상담과 플랫폼 신고·삭제지원을 수행하며, 2024년 「Digital Services Act」에 따라 프랑스 최초의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e-Enfance가 제출하는 불법 콘텐츠 신고는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되지만,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다. 프랑스 제도의 특징

프랑스는 France Victimes의 종합 피해자 지원과 e-Enfance의 디지털 전문지원을 연계한 이원적 지원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Trusted Flagger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 기관의 플랫폼 신고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직접적인 규제 권한 없이도 신속한 콘텐츠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그림 4-3-3] 프랑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출처: (좌) France Victimes: <https://www.france-victimes.fr/> (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e-Enfance(3018): <https://e-enfance.org/> (최종 접속일: 2026. 7. 16.)

4. EU 차원의 협력체계

EU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단일 중앙 기관을 두기보다, 회원국의 상담·신고 기관, 국제 신고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INHOPE가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 신고 협력을 담당하고, Safer Internet Centres가 회원국 단위의 상담·신고·예방 기능을 수행하며, 「Digital Services Act」가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처리 의무와 Trusted Flagger의 법적 지위를 규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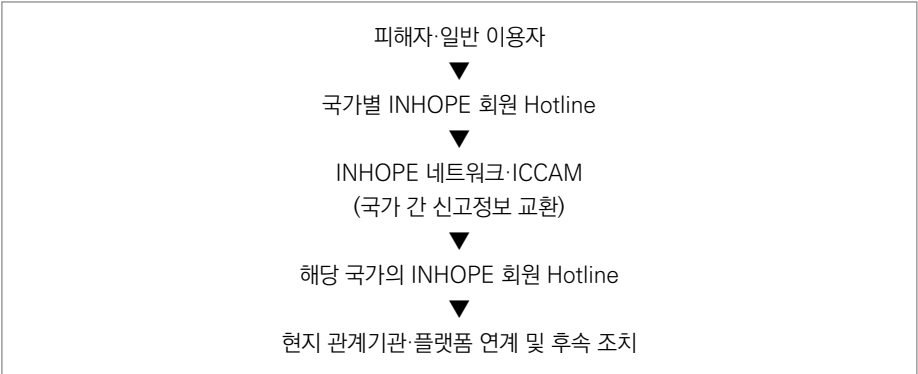
가. INHOPE와 Safer Internet Centres

INHOPE는 국가별 인터넷 신고센터를 연결하여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정보를 해당 콘텐츠가 호스팅된 국가의 신고 기관과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INHOPE 자체는 피해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중앙 기관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접수와 콘텐츠 분석은 각국의 회원 신고 센터가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법적 권한은 독자적인 삭제 명령이나 수사가 아니라 국가 간 신고 정보의 안전한 교환과 대응 조정에 있다.

Safer Internet Centres는 EU의 지원 아래 회원국별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인식 개선, 상담,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청소년 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EU 중앙기관이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의 기존 기관이 공통 정책 체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지원구조이다.

▶▶▶ [그림 4-3-4] INHOPE를 통한 국제 신고·연계체계



출처: INHOPE, “How to report”; INHOPE, Annual Report 202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나. Digital Services Act와 Trusted Flagger

「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대응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신고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Trusted Flagg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전문기관의 신고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법적으로 구조화한 제도로서, 특히 전문기관의 신고에 일반 신고와 구별되는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 Trusted Flagger의 지정과 지정요건

DSA 제22조는 Trusted Flagger의 지정과 그 신고의 우선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Trusted Flagger의 지위는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Digital Services Coordinator가 부여하며, 신청기관은 ① 불법 콘텐츠를 탐지·식별·신고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②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③ 신고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2항).

이에 따라 Trusted Flagger는 단순히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DSA가 정한 전문성·독립성·책임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회원국의 Digital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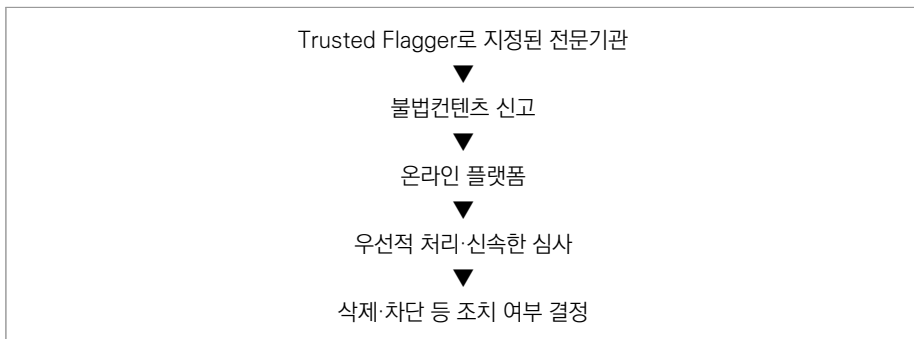
Coordinator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전문 신고기관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신고의 우선처리와 법적 효력

Trusted Flagger 제도의 핵심적인 법적 효과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일반 신고와 구별되는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Trusted Flagger가 지정된 전문영역에서 제출한 신고가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부당한 지체 없이 심사 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우선처리 지위가 Trusted Flagger에게 콘텐츠의 삭제를 직접 결정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즉 DSA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절차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콘텐츠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결정은 플랫폼에 남겨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그림 4-3-5] DSA에 따른 Trusted Flagger의 우선처리 구조



출처: 저자 작성, EU 「Digital Services Act」 제22조 및 관련 기관 자료 참조

이러한 점에서 Trusted Flagger 제도는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만 의존하는 방식과 행정기관이 직접 삭제를 명령하는 규제방식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규율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3) Trusted Flagger의 관리와 운영현황

전문기관의 신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DSA는 Trusted Flagger의 전문성

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통제장치도 두고 있다. Trusted Flagger는 매년 플랫폼 품별 신고 건수, 신고한 불법 콘텐츠의 유형 및 플랫폼이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관인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DSA 제22조 제3항).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Trusted Flagger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신고를 상당수 제출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Digital Services Coordinator가 조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동안 그 지위가 정지될 수 있으며(DSA 제22조 제6항), 조사 결과 제22조 제2항의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취소된다(DSA 제22조 제7항). 이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신고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Trusted Flagger 제도는 DSA 시행 이후 실제 운영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현재 70개가 넘는 기관이 Trusted Flagger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전문영역도 아동 성착취물, 온라인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과 비동의 친밀 이미지 공유(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materials) 등 다양한 불법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 [그림 4-3-6] EU의 DSA Trusted Flagger 지정기관 목록

List of DSA trusted flaggers

The Commission is tasked to publish, on the basis of notifications received from national DSCs, up-to-date information on the entities that have been awarded the status of trusted flagger across the EU.

Below, you can find the full list of trusted flaggers (last update 08/06/2026). You can look them up based on 'country' and 'area of expertise'.

[Download the updated list of trusted flaggers \(xlsx\)](#)

Country

All countries

Areas of expertise

All areas of ...

MAPINET - Movimento Anti Pirataria na Internet

Areas of expertis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Country: Portugal

Date of publication in the database: 04/08/2026

Website: <https://www.mapinet.org>

Trusted Flagger Contact: geral@mapinet.org

Postal address: Av. Infante D. Henrique, 306, Lt6, 1.º, 1950-421, Lisabon, Portugal

자료: European Commission, “Trusted flagger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출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trusted-flaggers-under-dsa>
(최종 접속일: 2026. 9. 1.)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Trusted Flagger의 지정·정지·취소 기준과 플랫폼의 우선처리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2026년 7월 10일 종료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하반기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최종 채택 여부 및 이후 업데이트는 EU 집행위원회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는 Trusted Flagger 제도가 전문기관의 신고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제도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EU 제도의 특징

EU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단일한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회원국의 피해지원·신고기관과 국제 신고 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을 EU 차원의 공통 규범을 통해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모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INHOPE를 통한 국가 간 신고 연계와 DSA에 따른 플랫폼 규율은 국경을 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DSA의 Trusted Flagger 제도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에 해당 신고를 우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협력과 직접적인 행정규제 사이의 중간적 규율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심리 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별 제도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산형 구조이다. 또한 INHOPE와 Safer Internet Centres의 협력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및 유해 콘텐츠 대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0) 가이드라인의 최종 채택 여부 및 후속 업데이트는 EU 집행위원회, “Draft Commission guidelines on trusted flaggers” 참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raft-commission-guidelines-trusted-flaggers?utm>. (최종 접속일: 2026. 9. 1.)

5. 대만

대만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 신고·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형 피해자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기관인 性影像處理中心(Sexual Image Abuse Reporting Center; SIARC)은 온라인 신고, 피해 콘텐츠 삭제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가. 性影像處理中心

性影像處理中心은 대만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식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합성·변형 성적 영상물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국가 단위의 전문 신고 창구로서 피해자가 단일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림 4-3-7] 대만 性影像處理中心(SIARC) 홈페이지



출처: Sexual Image Abuse Reporting Center, <https://siarc.mohw.gov.tw> (최종 접속일: 2026. 7. 16.)

나. 신고·삭제지원 체계

센터는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 내용을 검토하여 플랫폼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다만 센터는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수사권은 보유하지

않으며, 플랫폼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다. 대만 제도의 특징

대만은 국가 지정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 삭제지원, 상담 및 수사 기관 연계를 통합한 국가 주도형 피해자 지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처럼 독립 규제 기관이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과 달리, 기존 피해자 지원 기관에 법적 근거와 전문 기능을 부여하여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국가 단위의 전문 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과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접적인 플랫폼 규제권이 없어 해외 플랫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6. 일본

일본은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단일 중앙기관을 두기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민간 전문 단체 및 인터넷 불법 정보 신고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심리·법률 지원은 One Stop Support Center(#8891)가 담당하고, 디지털성폭력 상담과 삭제지원은 PAPS, 인터넷상 불법 정보 신고와 경찰 연계는 Internet Hotline Center(IHC)가 수행한다.

가. One Stop Support Center(#8891)

One Stop Support Center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 기반 지원 기관으로, 전국 공통번호 #8891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심리 지원 및 법률·수사 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 [그림 4-3-8]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요 기관



출처: (좌) One Stop Support Center(#8891):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seibouryoku/consult.html(최종 접속일: 2026. 7. 16.)
(우) PAPS: <https://www.paps.jp/> (최종 접속일: 2026. 7. 16.)

나. PAPS

PAPS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피해 상담, 플랫폼 대상 삭제 요청, 관계 기관 연계 및 권리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이나 수사권은 보유하지 않으며, 플랫폼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다. Internet Hotline Center

Internet Hotline Center(IHC)는 일본 경찰청이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정보 신고 센터이다.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며, 불법 콘텐츠 신고와 경찰 연계를 담당한다. 다만 피해자의 심리·법률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라. 일본 제도의 특징

일본은 종합 피해자 지원(#8891), 디지털성폭력 전문 지원(PAPS), 불법 정보 신고(IHC)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기능 분산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과 플랫폼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사항 제목]

영국 등 기타 국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주요 웹사이트

1.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공식 홈페이지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StopNCII 공식 홈페이지 <https://stopncii.org/>

2. 독일

HateAid 공식 홈페이지 <https://hateaid.org/>

3. 프랑스

France Victime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rance-victimes.fr/>
e-Enfance·3018 공식 홈페이지 <https://e-enfance.org/>
3018 피해자 지원 안내 페이지 <https://e-enfance.org/besoin-daide/>

4. EU 차원의 협력체계

INHOPE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hope.org/>
Better Internet for Kid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
Safer Internet Centre 네트워크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sic>
EU Digital Services Act 공식 안내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
DSA Trusted Flagger 공식 안내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trusted-flaggers-under-dsa>

5. 대만

대만 보건복지부 성영상처리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siarc.mohw.gov.tw/>
온라인 신고·이의제기 페이지 <https://siarc.mohw.gov.tw/appeal.php>

6. 일본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8891)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seibouryoku/consult.html
PAP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ps.jp/>
Internet Hotline Cent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ternethotline.jp/>

제4절 | 해외 대응체계 비교 및 정책적 함의

1.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모델의 비교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각국의 법제도와 정책 환경에 따라 기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지위, 피해자 지원 방식 및 플랫폼 대응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피해자 상담과 신고를 넘어 피해영상물의 삭제통보, 플랫폼 대응, 법률지원, 수사기관 연계 및 재유포 방지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별 대응체계는 하나의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피해지원과 플랫폼 규제 of 결합 정도, 대응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삭제 요청의 법적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호주의 독립 규제기관형, 미국·영국의 전문기관 중심 협력형, 대만의 국가 주도형, 일본의 기능 분산형, 독일·프랑스의 민간 전문기관과 EU Trusted Flagger 제도가 결합된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별 기관의 법적 지위와 주요 기능 및 대응방식은 <표 4-4-1>과 같다.

▶▶▶ [표 4-4-1] 국가별 대응모델의 특징과 주요 기능

국가	운영주체	법적지위	핵심기능	플랫폼대응	특징
미국	NCMEC	법정 민간기관	신고·삭제통보·피해지원	CyberTipline·Take It Down	법정 전문 기관
호주	eSafety	독립 규제기관	피해지원·조사·규제	Removal Notice	직접 규제형
영국	RPH·StopNCII·IWF	민간 전문기관	피해상담·삭제통보·재유포 방지	플랫폼·기술 협력 + 최근 법적 의무 강화	전문기관 협력 + 법적 의무 강화
독일	HateAid	민간	권리구제	Trusted Flagger 신고	법률지원·전략소송형
프랑스	France Victimes / e-Enfance	민간 비영리·국가 지원	종합지원·디지털 전문지원	Trusted Flagger 신고(e-france)	기능 연계형

국가	운영주체	법적지위	핵심기능	플랫폼대응	특징
EU	회원국 DSA 감독기관·Trusted Flagger	DSA상 법정 지위	불법 콘텐츠 전문신고	법정 우선처리	법정 우선처리형
대만	SIARC	국가 설치·지원	상담·신고· 삭제통보	플랫폼 협력	국가 주도형
일본	#8891 / PAPS / IHC	공공·민간 분산	상담·신고· 삭제통보	삭제 요청	기능 분산형
한국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법정 피해지원기관	피해접수·상담·삭 제통보·관계기관 연계	삭제 요청· 플랫폼 협력	전문 피해지원형

이러한 국가별 차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피해영상물 삭제통보가 플랫폼의 대응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운 국외 영역에서 이를 어떠한 협력수단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외 대응체계를 비교한다.

가. 피해영상물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차이는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플랫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삭제통보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이다.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통보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피해지원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플랫폼의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호주의 규제방식이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명령(Removal Notice) 등을 발령하고 플랫폼 등에 삭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기보다 규제기관의 법적 권한을 통해 삭제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U의 Trusted Flagger 제도는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한다. 즉 일반 신고가 플랫폼의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따르는 것과 달리, Trusted Flagger의 신고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당한 지체 없이 심사·결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삭제·차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플랫폼이 결정한다. 따라서 이는 자율적 협력에 기초한 삭제

요청과 직접적인 행정적 삭제명령 사이의 중간적 규율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존의 전문기관 및 플랫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NCMEC의 전문 신고체계와 Take It Down을 통한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 입법을 통해 일정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를 강화하였다. 영국 역시 Revenge Porn Helpline과 StopNCII 등을 중심으로 전문지원과 기술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나, 2026년 법제 변화를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와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에 가깝다. 피해지원기관이 플랫폼에 직접적인 삭제명령을 내리는 구조는 아니며, 전문적인 신고와 삭제통보, 관계기관 및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영상물의 삭제통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삭제통보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거나 법정 우선처리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전문 피해지원기관의 삭제통보와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에 가깝다.

이처럼 해외의 삭제 대응은 직접적인 삭제명령, 전문기관 통보의 법정 우선처리, 전문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 그리고 최근 미국·영국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법적 삭제의무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각국 제도의 규제 강도를 단순히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위한 통보가 플랫폼의 대응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과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표 4-4-2] 국내외 디지털성범죄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비교

구분	국가·지역	삭제 대응의 법적 효력	주요특징
직접 규제형	호주	법적 삭제명령 가능	eSafety의 Removal Notice 등 직접 규제
법정 우선처리형	EU (프랑스, 독일 사례)	삭제명령권 없음 / 신고의 법정 우선처리	Trusted Flagger 신고의 우선적·신속한 처리
법적의무 강화형	미국·영국	플랫폼에 일정한 삭제의무 부과	전문기관·기술협력 및 최근 플랫폼 의무 강화
협력적 삭제통보형	대만·일본·한국	삭제통보의 직접 강제력 없음	전문기관의 삭제통보 및 플랫폼 협력

나. 국내 규제의 한계와 국제협력의 필요성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은 플랫폼이나 서버의 소재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국경을 넘어 복제·유통되므로, 국내에서 삭제 요청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플랫폼 간 기술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INHOPE는 국가별 신고기관을 연결하여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정보가 해당 국가의 신고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국의 Take It Down과 영국의 StopNCII는 해시 기반 기술과 플랫폼 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국가의 법적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 간 신고 연계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부여되는 법적·제도적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외 영역에서는 국제 신고망, 해외 전문기관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모델과 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모델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피해영상물 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방식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 호주는 독립 규제기관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고, EU는 전문기관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존의 전문기관·기술협력 체계에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일본 등은 전문기관의 피해지원과 플랫폼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향 역시 독립 규제기관의 설치 여부만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보다, 현행 센터의 피해지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과 국외 대응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발전모델을 ① 독립 규제기관형, ② 법정 전문기관형, ③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가. 독립 규제 기관형

독립 규제기관형은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와 같이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 결합하는 모델이다. eSafety Commissioner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통지(Removal Notice) 등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등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적 권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규제방식이다. 피해지원과 조사, 삭제명령 및 플랫폼 규제를 연계하여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관의 설치와 함께 조사권·삭제명령권·제재권 등의 권한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및 피해지원기관 등 기존 기관과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삭제의 법적 실효성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상당한 법제·조직 개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법정 전문기관형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플랫폼·관계기관에 대한 신고·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모델이다. 미국의 NCMEC와 같이 법률상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전문기관이 신고접수, 정보분석, 기술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주요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명령이나 감독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전문기관의 법적 지위와 공신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지원과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EU의 Trusted Flagger 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이 제출한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도 플랫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디성센터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관한 전문 신고기관

으로 제도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삭제통보에 대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센터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일정한 절차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행 협력 중심의 삭제통보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플랫폼, 수사기관 및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창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센터의 설치 근거나 기관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 플랫폼 및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정보연계 및 국제협력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별도 독립기관을 신설하거나 센터의 법적 성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현행 조직을 기반으로 삭제통보·기술적 대응·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센터가 이미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단기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별 삭제통보 절차와 협력창구를 체계화하고, 삭제통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와 유사 콘텐츠 탐지·추적 등 기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별 신고·삭제 절차와 담당창구, 국제 신고 네트워크 및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기존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제도 개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에 대한 삭제통보의 법적 효력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능 고도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지만,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라. 발전 모델의 종합적 검토

세 가지 발전모델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제도 개편의 수준과 삭제통보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적 대응과 국제협력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고, 법정 전문기관형은 여기에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플랫폼의 우선처리 등 법적 기반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독립 규제기관형은 직접적인 삭제명령권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중앙 디성센터를 기반으로 삭제통보·기술적 대응·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플랫폼의 우선처리·결과 통보 등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삭제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 전반과 연계하여 독립 규제기관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3.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해외 주요국의 피해지원은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넘어 전문적 신고와 플랫폼 대응,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률 및 피해회복 지원,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앙 디성센터 역시 기존의 피해지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삭제통보의 실효성 강화와 국외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적 대응과 법률·피해회복 지원을 함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가.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 강화

중앙 디성센터는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영상물의 삭제통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삭제통보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삭제 여부와 처리속도는 플랫폼의 정책과 협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는 직접적인 삭제명령권 외에도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가 법적 삭제명령을 통한 직접 규제방식을 취하는 데 비해, EU는 Trusted Flagger의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신고와 플랫폼의 대응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센터의 삭제통보와 플랫폼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삭제통보의 대상과 요건, 요청방식, 처리절차 및 결과통보 등을 체계화하고, 센터에 전문 신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삭제통보에 대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협력 중심의 삭제통보에 일정한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나. 국제협력 및 국외 삭제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플랫폼과 국외 서버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국내 삭제통보체계의 강화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국내법상 삭제의무나 우선처리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협력과 국외 삭제통보는 국내 삭제제도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핵심 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HOPE와 같은 국제 신고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피해영상물의 유형과 피해자 범위에 따라 검토하고, NCMEC 등 해외 전문 기관과의 신고·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신고·삭제 절차와 담당 창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센터가 전문 기관으로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전문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도 신고 정보 전달을 넘어 기술적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원본 영상의 보호를 전제로 해시정보 등을 활용한 재업로드 방지 및 플랫폼 간 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외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기술 기반 삭제지원 및 재유포 방지 강화

피해영상물은 짧은 시간에 복제·변형되어 다수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개별 URL에 대한 사후적 삭제만으로는 피해의 재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 대응은 동일·유사 콘텐츠의 재유포를 예방하고 확산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기술 기반 대응체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Take It Down과 영국의 StopNCII는 피해영상물 자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고 해시값을 활용하여 참여 플랫폼에서 동일 콘텐츠의 재업로드를 탐지·차단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센터의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AI 등을 활용한 변형·유사 콘텐츠의 탐지·추적 역량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영상물 발견-신고-삭제통보-삭제 확인-재유포 탐지’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보존·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국내외 플랫폼 및 전문 기관과의 정보·기술 협력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라. 법률지원 및 피해회복 연계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은 피해영상물의 삭제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삭제통보 이후에도 필요한 법률 및 피해회복 지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독일 HateAid의 법률지원과 전략소송, 프랑스의 일반 범죄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전문 지원의 연계, 일본의 기관 간 기능 분담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각 분야의 전문 기관을 피해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앙 디성센터 역시 모든 지원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법률 구조기관 및 법률 전문가, 수사기관, 해바라기센터 및 지역 피해 지원기관 등과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신고·상담, 삭제통보, 수사·법률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이 상호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삭제 이후의 재유포 탐지와 후속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속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 기능 강화의 기본 방향과 우선 순위

이상의 기능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피해영상물 삭제통보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고 국외 피해영상물에 대한 국제협력 및 삭제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 기반 삭제 대응과 재유포 방지는 이러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법률지원과 피해회복 연계는 삭제 이후까지 피해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는 기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지위, 피해지원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플랫폼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호주의 직접적인 삭제 명령, EU Trusted Flagger의 법정 우선처리, 미국·영국의 전문 기관·기술 협력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플랫폼의 법적 의무 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삭제의 실효성이 기관의 조직 형태 자체보다는 전문 기관의 삭제통보에 어떠한 법적·제도적 효과가 부여되는지, 이를 기술적·협력적 수단이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해외 사례는 피해자 지원이 영상물의 삭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여 준다.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법률지원과 권리구제, 수사기관 및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심리·사회적 회복지원 등이 결합될 때 보다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 디성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전문 피해지원기관으로서 이미 상담, 삭제통보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의 기능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해외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곧바로 규제기관으로 전환하기보다, 현행 피해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수단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특히 전문 신고기관으로서의 지위, 플랫폼의 우선처리 및 결과통보, 삭제 통보와 협조절차의 제도화 등은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해외 플랫폼과 국외 서버를 통한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 제도의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외 전문 기관의 연계,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식 협력채널, 해시정보 활용 등 국제적·기술적 협력체계를 병행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중앙 다성센터는 삭제통보, 기술적 재유포 방지, 법률 및 피해회복 연계를 포괄하는 전문 피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고도화하되, 당면한 정책과제로는 국내에서는 삭제통보의 제도적·절차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외에서는 국제협력과 기술적 연계를 확대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언

제1절 |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을 핵심적인 분석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피해영상물의 탐지와 인터넷주소 확보,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실제 조치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지원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개별 기관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관의 조치가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피해확산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삭제지원의 실효성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조치의 존재뿐만 아니라, 각 단계 사이의 정보와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계량적 분석, 중앙디성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 현행 법령 및 발의 법률안 검토,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탐색하고, 그 원인을 법령과 기관 간 관계의 구조에서 분석한 뒤, 해외의 상이한 대응방식에서 제도개선의 준거를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규범의 내용과 실제 수행조건을 함께 살펴보고, 중앙디성센터의 조직적 역량과 외부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연결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1. 선행 연구 분석과 실무 현장의 주요 발견

제2장에서는 국내 선행 연구의 분포를 분석하고, 중앙디성센터 관계자 심층 면접과 SWOT 분석을 통해 삭제지원 실무의 난점과 제도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KCI 등재·등

재후보 학술논문 300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입법·처벌규정 정비, 수사방법 및 기술적 탐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삭제지원기관의 운영구조와 성과, 기관 간 협업 및 법적 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술을 지속적인 피해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에 연결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15일 중앙다성센터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접속링크만 게시된 경우, 피해영상물과 신상정보가 결합된 경우 및 영상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등에서 법령과 기관별 처리기준 사이의 간극이 제기되었다. 비공개 공간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어, 지원 대상의 확대와 함께 사실확인 방법과 제출자료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서는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와 해외 성인사이트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면접에서 인용된 자료상 국내 주요 조치의무사업자의 삭제 완료율은 2025년 기준 95.4%를 넘었고, 실무자들은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해외 성인사이트의 완료율은 2025년 기준 52.7% 수준으로 언급되었으며, 요청 창구나 운영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문제로 제시되었다. 국내 사업자 역시 개별 게시물의 삭제 이후 동일·유사 콘텐츠의 재유포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협조 가능성 및 집행수단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관 간 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완료 사실이 적시에 전달되지 않아 삭제 지원이 지연되거나, 심의 결과와 별도로 실제 차단 여부를 센터가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사업자별 요청·회신 양식의 차이와 결과통보의 미비는 수작업을 늘리고 처리시간의 집계와 피해자 안내를 어렵게 하였다. 또한 재유포 위험으로 지원 종결이 어려운 가운데 동의 갱신이나 연락 단절에 따른 지원 공백이 제기되었다. 중앙·지역센터의 기능분담은 피해자 접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공통 업무기준과 교육·사례공유 및 품질관리의 체계화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WOT 분석에서는 축적된 실무 경험과 데이터, 주요 플랫폼과의 협력 및 중앙·지역

의 기능분담이 강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원 대상과 절차의 불명확성, 해외 대응과 정보연계의 한계 및 조정기반의 취약성이 주요 제약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단의 출범과 입법 논의는 이를 보완할 기회인 동시에,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면 업무 중복이나 센터의 역할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삭제지원의 어려움을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면접 결과는 중앙디성센터 관계자의 경험에 기초한 탐색적 분석으로서, 후속 규범 분석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2. 현행 법령과 입법 동향 분석의 주요 결과

제3장에서는 실무에서 확인된 문제를 피해자 지원, 범죄 처벌, 수사, 삭제·차단, 플랫폼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구조에 비추어 검토하고, 제21대·제22대 국회의 관련 발의 법률안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중앙·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및 수사기관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업무와 기관의 법적 기반에 비하여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공통 절차와 책임구조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삭제지원의 단계별 수행권한과 후속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 업무는 탐지·자료확보에서 반복 요청과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이어지지만, 각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협조와 상대방의 대응의무는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조치나 회신 누락이 발생한 경우의 담당주체, 후속절차 및 지원 종료기준은 실무 운영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둘째, 수사·심의·사업자 조치가 연속적인 피해지원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정보의 제공 범위와 시점, 센터의 사실확인 자료 활용, 긴급사건의 연계 및 결과공유에 관한 일관된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공유의 근거와 함께 최소정보의 범위, 요청·회신 방식, 제공 제한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재유포 대응 및 실제 이행확인을 결합하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 개별 게시물에 대한 요청 중심의 대응은 주소나 형태를 달리한 재유포에

반복적인 업무를 발생시키며, 해외 사이트나 불응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의·집행에 필요한 시간이 문제로 나타난다. 다만 플랫폼 내부의 삭제와 통신망을 통한 외부 사이트 접근 제한은 구분하여야 하며, 신속처리 제도는 불법성 판단과 잠정조치의 범위 및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지역센터 역시 설치와 기본 업무의 법제화를 넘어 표준 처리기준, 교육, 사례관리 및 업무평가를 연결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법 동향에서는 처벌과 수사권한의 강화, 플랫폼의 조치의무와 임시차단, 신고·피해배상 및 지원기관의 법제화가 주요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앙·지역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참여는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인 성과이다. 다만 개별 권한과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에 비하여 피해정보의 발견부터 조치 확인과 재유포 대응까지를 연결하는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를 토대로 정보연계, 결과통보 및 미이행 시 후속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도출되었다.

3. 해외 대응체계의 비교와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발전모델

제4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및 유럽연합의 대응체계를 비교하였다. 비교의 초점은 피해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삭제 요청의 효력, 플랫폼·수사기관과의 협력, 기술적 대응 및 피해 회복 기능이 결합되는 방식에 두었다.

미국의 NCMEC는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기관이 신고접수·정보분석·수사기관 연계와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를 수행하는 사례이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조사와 삭제통지 등 규제수단을 피해지원에 결합하는 모델이다. 영국의 Revenge Porn Helpline과 StopNCII는 전문적인 상담·삭제지원과 플랫폼의 기술적 협력을, 독일의 HateAid는 법률지원과 전략적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일반 피해지원과 디지털 전문지원의 연계, 대만은 국가 단위 전문창구를 통한 통합적 지원, 일본은 지역 피해지원·디지털성폭력 전문지원·불법정보 신고기관의 기능분담이라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는 전문기관에 직접적인 삭제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에 법정 우선처리 지위를 인정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국제 신고 네트워크와 해시 기반 플랫폼 협력도 국내법의 적용 집행이 어려운 국외 유통에 대응하는 보완수단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아동 성착취 대응체계와 성인 피해지원체계는 대상과 기능이 다르며, 기술적 대응 역시 참여 플랫폼과 서비스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비교 결과, 삭제지원의 실효성은 기관의 조직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의 요청에 부여된 법적·절차적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협력체계가 중요하였다. 직접적인 규제권한에도 해외 집행의 한계가 남고, 협력 중심의 모델도 사업자의 불응이나 참여 범위의 제한에 직면하므로, 법적 권한과 절차적 의무 및 국제·기술 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다성센터의 발전모델을 독립 규제기관형, 법정 전문기관형 및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 규제기관형은 조사·삭제명령·제재를 연계할 수 있으나 상당한 조직·법제 개편을 요구한다. 법정 전문기관형은 피해지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 신고의 지위와 상대 기관의 처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피해지원기관 고도화형은 기존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국제협력 기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지만, 기능 보완만으로 삭제 요청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세 모델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보다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전경로로 평가하였다. 현행 센터의 기능 강화와 전문 신고·결과통보 등 법적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과제로는 삭제 요청의 실질적 효력과 국외 대응역량의 강화가 도출되었으며, 기술적 재유포 방지와 법률·피해 회복 연계는 지원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정리하였다.

4.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의 연구 결과는 삭제지원의 주요 제약이 개별적인 법적 권한이나 기술의 부족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한과 정보 및 전문성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면접에서는 기관 간 기준의 차이, 정보전달의 지연 및 이행확인의 부담이 확인되었고, 법령 분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통 절차와 책임구조의 미비가

드러났다. 비교법적 검토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단이 직접적인 규제권한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문 신고에 대한 절차적 효력과 플랫폼·수사기관·해외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서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삭제지원은 최초 게시물의 제거로 종료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해정보는 다른 주소나 플랫폼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고, 수사·재판의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불안과 권리구제 및 회복의 필요성이 남는다. 따라서 삭제 요청 이후의 실제 조치 확인과 재유포 대응, 법률·심리·의료지원의 연계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지원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 역시 요청·처리 건수와 함께 실제 조치까지의 시간, 미조치 원인, 후속절차의 연결 및 재유포 대응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삭제지원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절차적 연속성이라는 관점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현행 법령과 해외 대응방식의 비교에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제 정비의 중심 과제를 삭제지원 업무의 전문화,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을 통한 초기 대응, 단계별 절차의 간소화, 기관 간 정보공유와 결과통보, 플랫폼·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관계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제2절 | 입법 원칙과 입법 방안 제언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본 연구는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삭제·차단 지원체계의 운영 현실과 법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삭제지원의 주요 한계는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피해영상물의 탐지, 삭제 요청, 심의·차단, 수사정보의 활용, 처리 결과의 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연결하는 규범적 기반의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내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해외 사이트에 대한 지원 사이에 나타나

는 성과의 차이는 수행기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요청에 대응할 상대방의 법적 의무와 후속조치 수단이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입법은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총괄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지원과 중앙여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각 단계의 수행주체와 권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대응의무, 정보연계와 후속조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 형식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피해지원의 기본적인 절차와 책임을 정하는 중심 법률로 정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입법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체계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은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개별적인 지원업무를 넘어, 피해정보의 탐지에서 삭제·차단, 처리 결과의 확인, 미삭제 시 후속조치 및 재유포 대응까지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피해지원 제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독립적인 제도로 체계화한다는 것은 별도의 법률이나 독립 규제기관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삭제지원의 목적과 대상, 수행절차 및 책임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나 기관 간 자발적인 협조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제7조의4를 정비하고, 삭제지원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삭제지원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정보의 유포 여부 탐지·확인, 인터넷주소와 게시물 식별정보의 확보, 삭제·접속차단 및 검색결과 노출 제한 요청, 실제 조치 여부의 확인, 미조치·불완전 조치에 대한 재요청과 관계기관 연계, 재유포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된 정보 수집·보관과 삭제 요청 후 확인·점검 업무도 이러한 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삭제 등의 요청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는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요청, 긴급심의 요청, 국내 접속차단 또는 국제협력 등 적절한 후속절차로 연결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피해정보의 완전한 삭제라는 결과를 지원기관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한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원 개시 시 담당기관과 담당자를 정하고, 피해의 긴급성·확산 가능성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처리상황과 지원의 변경·종료 사유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역시 기술과 유통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이미 포함된 불법촬영물, 성적 편집·합성·가공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관련 신상정보를 기초로 하되, 유포 전 협박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과 변형·재유포에 대한 후속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협박받았거나 유포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담, 자료보존 지원,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특징정보 등록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 형사고소나 수사 개시를 일률적인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방지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강제삭제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의 삭제·차단은 관계 법률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피해영상물과 연계된 신상정보, 공유주소 및 접근유도정보에 대해서도 피해지원 규정과 사업자의 조치의무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대응절차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추가 침해를 일으키는 신상정보와 특정 피해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링크·공유주소 등의 처리요건을 구체화하되, 단순한 관련 언급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개형 오픈채팅방과 클라우드 공유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명칭보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관련 의무의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적 통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피해자나 대화 참여자가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하는 개별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유포 대응은 최초 삭제 이후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삭제지원의 필수적인 단계로 규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의 의사, 재유포 위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유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지원신청과 확인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주요 사실관계나 피해자의 의사가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청이나 동일한 자료의 반복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종료만을 이유로 지원을 종결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와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하여 이미지 해시값 등 특징정보를 활용한 재유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예방 목적으로 등록한 정보와 법정 절차에 따라 유통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정보를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범위와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특징정보의 등록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영구적인 자동차단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기술적 유사성만으로 위법성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등록·공유·갱신·삭제 기준과 함께 오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정정절차를 마련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적절한 정보처리를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나. 삭제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체계의 법제화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해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에서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상담·삭제·수사·처벌을 연결하고,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³¹⁾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전제로 할 때, 중앙디성센터를 피해자지원의 중심축으로 두고 경찰청의 수사기능과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심의기관의 삭제·차단 조치 등을 법률상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와

31) 성평등가족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2026.

경찰, 심의기관 사이에 법정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신속한 통보와 정보공유, 공동사례 관리 절차 및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체계와 피해자 보호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는 것을 공식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은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을 업무 협약이나 실무협의체 수준에 머물게 하기보다 법률에 근거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다성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 기관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삭제지원은 중앙다성센터, 지역다성센터,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가 각자의 권한과 정보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복합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중앙다성센터를 피해지원의 중심축으로 두면서 각 기관의 기능이 상시적으로 연결되도록 법정 협력의무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통합지원단이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되는 협력을 기반으로 삼되, 담당기관의 변경이나 개별 사업의 종료에도 필수적인 연계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유통방지 의무를 전문적인 삭제지원 절차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다성센터에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정한 전문인력·사실확인 절차·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지역다성센터도 같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는 삭제요청의 자격에 더하여 우선처리, 불필요한 중복 확인의 제한 및 결과통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효과를 수반하여야 한다. 센터는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한 사실, 위법성 판단의 근거 및 긴급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는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자료나 피해자의 별도 신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실확인에 위법성을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신속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처리기한과 회신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본적인 처리기한과 긴급사건의 우선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불법성의 명백성, 확산 위험 및 추가 확인의 필요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예컨대 불법성이 명백하고 확산 위험이 큰 사건에는 단축된 조치기한을 적용하고, 그 밖의 전문 신고에는 일정한 시간 안에 조치하거나 구체적인 미조치·추가검토 사유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은 실제 처리시간과 상시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정하되, 기한의 기산점, 야간·공휴일의 산업 및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유를 통보한 것만으로 처리가 종료되지 않도록 추가검토의 예정기한과 심의기관 연계절차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의무에는 상응하는 이행확보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감독·제재 규정을 함께 정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처리기한 위반, 결과통보 누락 및 반복적인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기존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의 중복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정보나 객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디성센터는 요청과 이행확인 및 미이행 통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과 제재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심의·차단 절차 역시 삭제지원과 연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긴급심의 근거와 야간·공휴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센터가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확인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조치 여부도 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의 이후의 이행확인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확산이 급박한 사건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절차의 종료를 기다리느라 다른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임시접속차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조치의 요건, 결정주체, 효력기간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대상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확산 위험이 소명된 정보로 한정하며, 원칙적으로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짧은 존속기간 안에 본안심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에 따른 반복 연장으로 임시조치가 사실상 영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의 이유와 불복방법을 알리고 오차단을 신속하게 해제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연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정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요청 사실과 후속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필요한 수사 연계를 지원하고, 삭제·차단 요청 및 처리현황과 재유포 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통 사건식별번호와 표준 요청·회신 양식을 활용하고, 기관별 담당부서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정보와 업무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는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공유 목적, 제공기관과 수령기관, 정보의 항목 및 이용범위를 명시하고, 인터넷주소, 게시물 식별정보, 특징정보, 요청·처리 이력 및 재유포 확인 사실 등 삭제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 식별정보와 상담기록은 별도의 동의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제공이 법률상 제한되거나 수사에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범위를 회신하도록 하여, 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든 연계가 중단되거나 반대로 포괄적인 협조조항을 근거로 과도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삭제와 증거보존의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수집 일시·방법·출처, 변경·접근 이력 및 동일성·무결성 확인절차를 표준화하고, 적법한 수사기관 이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별도 채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지원을 일률적으로 유보하지 않도록 두 업무를 병행하는 협력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센터가 수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료에 포괄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집·보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은 일반적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연계체계에서 중앙디성센터는 전문적인 사실확인, 기술지원, 해외 대응 및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사건의 실무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디성센터는 접근성 높은 상담과 지역 내 피해 회복 지원을 담당하도록 업무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 설명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기관 간 이관 이후에도 담당주체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소송지원·심리치유·의료지원의 연계 역시 삭제 완료 이후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삭제지원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의 삭제와 재유포 방지는 개별 피해자나 특정 지원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보가 여러 플랫폼과 국가를 거쳐 확산되고 새로운 기술과 유통방식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국가는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은 개별 사건의 처리권한과 협조의를 정하는 데 더하여, 정책 수립, 기관 간 조정, 인력·기술 확보 및 평가·환류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삭제지원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삭제지원의 중장기 목표, 관계기관별 과제, 해외 대응, 전문인력과 기술 확보 및 성과평가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계획 간 중복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유통방식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장애요인을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조정을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 관계 부처,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중앙디성센터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협력체계는 표준 처리절차, 정보연계 기준, 장기 미조치 사건의 대응, 국제협력 및 제도개선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관계기관은 협의사항의 이행 결과나 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과 심의·처분은 각 기관의 법정 권한과 독립성

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디성센터는 전문적인 피해지원과 실무 연계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는 센터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 간 장애를 조정하도록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삭제지원은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영역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외교부, 수사기관 및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유통 피해정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응계획에는 주요 해외 플랫폼과의 연락체계, 국가별 법제와 협력절차, 장기 미삭제 사건의 처리, 국제적인 특징정보 활용 및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디성센터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요청과 이행확인 및 사례 축적을 담당하고, 자체 대응이 곤란한 사건은 관계기관의 외교·수사·규제 협력수단과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연락창구를 통한 요청 접수, 본사 전달 및 결과회신 의무도 관련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연락창구의 확보와 국외 서버에 있는 원본의 삭제는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법상 의무의 부과만으로 해외 집행의 한계가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원본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 국내 접속차단 및 검색 노출 제한을 각각의 기능과 한계에 따라 병행하고, 실제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 기반도 국가의 책무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단축된 처리기한과 야간·공휴일 대응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시 대응인력, 안전한 정보연계시스템, 탐지·특징정보 분석 기술 및 종사자 교육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전문인력과 기술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별 지원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의 지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반복적인 피해영상물 노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업무환경과 심리적 지원 역시 전문적인 수행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도 지속적인 제도운영의 필수조건이다. 원본 자료, 특징정보, 상담기록 및 처리이력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업무별 접근권한과 접근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은 지원과 증거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목적이 소멸한 자료는 파기하되 다른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분리하여 관리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외 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관계 법률에 따른 국외이전 요건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기관 간 협력을 제약하는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원체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구성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지원의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환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처리건수뿐만 아니라 최초 접수부터 실제 조치까지의 기간, 미조치 원인, 후속절차 연결 여부, 재유포 발견 후 대응시간, 해외 사업자의 이행 및 피해자의 반복 자료제출 부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원본 삭제, 국내 접속차단, 검색결과 노출 제한 및 일시적인 접근불가를 구분하고, 국내외 사업자별로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비식별 통계와 미조치 원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며, 이를 인력·예산·기술 및 법령 정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입법 방향은 현행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표준 요청·회신 절차, 전담 연락체계, 사실확인 기준 및 기술적 연계를 정비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처리기한, 결과통보, 정보공유 및 후속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외 대응과 재유포 방지 및 성과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입법의 성과는 개별 기관에 추가된 권한의 수보다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이후 탐지·조치·확인·회복의 과정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연속성을 법률상 보장하는 것이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피해지원 법제의 핵심 과제이다.

2. 입법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앞서 제시한 입법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지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 대상과 수행절차, 중앙·지역다성센터의 역할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처리의무와 이행확보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차단 관련 법률에는 긴급처리의 요건과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사와 피해지원의

연계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정비는 현행 제도에 마련된 삭제지원과 기관 간 협력의 근거를 토대로, 요청·조치·회신·확인·후속대응을 의무적인 절차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삭제지원의 제도적 기반, 기관 간 연계와 이행확보, 국가의 지속적인 추진·관리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과 핵심 조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조문은 규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시안이며, 신설조문의 번호는 ‘제○조’로 표시하였다. 처리기한과 임시조치의 존속기간 등은 정책적 검토를 위한 제안으로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운영자료와 관계기관의 수행능력을 토대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간 인용관계, 권한의 위임·위탁, 사업자의 이행의무 및 제재규정도 해당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가. 삭제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수행 절차에 관한 개정안

(1) 삭제지원의 범위 및 단계별 수행권한·책임 구체화

삭제지원은 피해영상물의 탐지와 유포 여부 확인, 인터넷주소 등 관련 정보의 확보, 삭제·차단 요청, 처리 결과 확인, 미조치 시 후속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제7조의4를 정비하여 지원 대상과 수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단계별 수행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 중 지원체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확인과 자료제공 및 처리 결과 회신의 근거를 관계 법률에 연결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는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불완전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로 연결할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제○조(삭제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삭제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정보의 유통 여부 탐지 및 확인
2. 해당 정보의 인터넷주소, 게시위치 등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존

3.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또는 검색결과 노출 제한의 요청
4. 제3호에 따른 조치 여부의 확인 및 미조치 등에 대한 재요청
5. 삭제·접속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에 대한 심의 요청 등 후속조치
6. 지원 대상 정보의 탐지·확인 및 수집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활용과 관련 정보의 안전한 관리인터넷주소, 게시위치 및 그밖에 삭제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존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의 긴급성, 확산 가능성 및 지원 대상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삭제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요청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매년 삭제지원에 관한 피해지원 총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삭제지원의 개시·변경·종료, 처리 결과의 안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피해정보의 완전한 삭제라는 결과를 지원기관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해의 사업자의 불응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최초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접속차단, 국제협력 및 재유포 모니터링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실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원계획의 필수사항, 실제 조치의 확인방법, 장기 미조치 사건의 연계기준 및 지원 종료 시 안내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유포 전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 및 지원 대상의 정비

지원 대상의 정비는 유포 전 협박 피해, 변형·재유포 및 피해영상물과 연계된 정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유포 협박을 받았으나 아직 실제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과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기술적 예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유포 전 피해에 대한 예방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을 이용한 유포 협박을 받았거나 그 유포로 피해

를 입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유포·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수사절차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고소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만으로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신상정보와 접근유도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범위와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연결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개형 오픈채팅방과 클라우드 공유에 대한 적용 여부도 실제 유통방식과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5-2-1] 유포 전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내용

구분	구체적 정비 내용	관련 규정
유포 전 피해	상담, 자료보존,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특징정보 등록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예방지원 조항
변형·재유포	잘라내기, 자막 삽입 및 화면 변형 등이 이루어진 정보에 대한 동일 피해의 후속지원	삭제지원 절차 및 기술적 확인기준
관련 신상정보	피해영상물과 함께 게시되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추가 침해를 일으키는 정보의 처리	피해지원 규정과 사업자 조치의무의 연계
접근유도정보	특정 피해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링크·공유주소·접근코드의 처리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개형 오픈채팅·클라우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공개성과 접근 가능성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개 유통정보의 범위

지원의 개시와 형사처벌의 확정은 구분하여야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강제삭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상정보와 접근유도정보는 피해영상물과의 연관성 및 추가 침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적 통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대화 참여자가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하는 개별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공개 유통정보에 대한 조치의무가 포괄적인 사적 대화 감시의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지역디성센터 간 통합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은 관계기관 사이뿐만 아니라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사이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인력, 전문성 및 플랫폼 대응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한 수준과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업무기준과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성센터의 지역센터 지원기능을 구체화하고, 공통 사건분류, 표준 처리절차, 교육·훈련, 사례공유 및 고난도 사건의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적인 기본기준과 운영방향을 정하고, 중앙디성센터는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업무지침과 플랫폼별 대응방식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디성센터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처리사례를 공유하도록 역할을 배분할 수 있다.

제○조(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연계)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역 간 지원격차를 줄이고 삭제지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삭제지원의 기본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그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1항의 기본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 업무지침, 사건분류 및 처리기준의 개발·보급
 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플랫폼별 대응정보, 기술적 대응방법 및 주요 사례의 공유
 4. 국외 유통, 대규모 확산 또는 전문적 기술 대응이 필요한 사건의 지원
 5.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의 파악·공유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을 연계하는 경우 담당기관, 연계 내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의 반복 제출이나 동일한 피해사실의 반복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업무분담, 사건의 이관·공동처리, 처리 결과의 공유, 교육·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지역센터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유지하면서 중앙의 전문적인 기술·국제협력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의 전문지원이 지연되거나, 중앙으로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상담·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통 사건관리체계에 서 연계 요청의 수신 여부, 담당기관의 인수 및 주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최초 삭제 이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재유포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일성이 확인된 피해영상물이 다른 인터넷주소나 플랫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확인 결과와 처리이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신청·확인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삭제지원 이후의 사후지원)

-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등의 재유통 가능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관련된 촬영물등의 유통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원신청 및 확인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 또는 주요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새로운 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반복적인 유통 확인 및 삭제지원을 위하여 촬영물등의 특징정보 생성·등록 및 대조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특징정보의 등록·공유·이용·삭제 및 오인식의 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징정보의 활용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하되, 등록의 경위와 확인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유포 전 예방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록한 정보는 참여 사업자와의 협력 및 탐지 지원에, 전문기관이 확인하여 심의 중인 정보는 우선검토와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유통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정보는 관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게재 제한에 활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의 등록이나 기술적 유사성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형된 정보에 대한 오인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재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삭제 등의 조치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관련된 촬영물등의 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지원신청과 확인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가적인 삭제지원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심리·의료지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기관 간 연계 및 신속한 이행확보에 관한 개정안

(1)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와 긴급삭제 요청절차 마련

플랫폼의 책임은 현행법상 삭제·접속차단 및 유통방지 의무를 전문적인 삭제지원 절차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센터의 긴급삭제 요청과 사실확인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문 신고에 대한 우선처리와 결과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센터의 긴급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제○조(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

-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된 사실, 판단 근거 및 긴급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처리의무, 처리기한 및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전문 신고기관 지위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신고에 구체적인 절차적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제○조(전문 신고기관의 요청에 대한 처리)

-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전문 신고기관으로 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인력, 사실확인 절차 및 정보보호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문 신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문 신고기관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 정보의 위치, 확인된 사실 및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조치의무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요청은 별도의 소명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 또는 미조치 사유는 전문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료의 반복 제출이나 피해자의 별도 신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전문 신고기관의 사실확인 결과는 우선처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의 위법성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사실확인서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긴급사건에서는 이를 ‘긴급삭제 확인서’로 활용하여 센터가 확인한 자료를 사업자와 심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사항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여부나 직권지원의 근거, 대상 정보와 피해자의 관련성,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또는 비교자료의 확인 결과, 인터넷주소와 게시계정 식별정보, 위법성 판단의 근거, 재유포 여부 및 기존 삭제·차단 이력을 포함할 수 있다.

확인서는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거나 원본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심의기관과 사업자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활용하되,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일성 확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대상 정보의 모든 위법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 구축 및 단계별 처리기한의 정립

전문 신고기관의 긴급삭제 요청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

역디성센터, 플랫폼 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연결하는 신속 삭제·차단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은 사건의 불법성에 관한 확인 수준, 피해확산의 긴급성 및 사업자의 조치 가능성에 따라 처리 경로를 구분하고, 각 경로 사이의 전환과 결과 확인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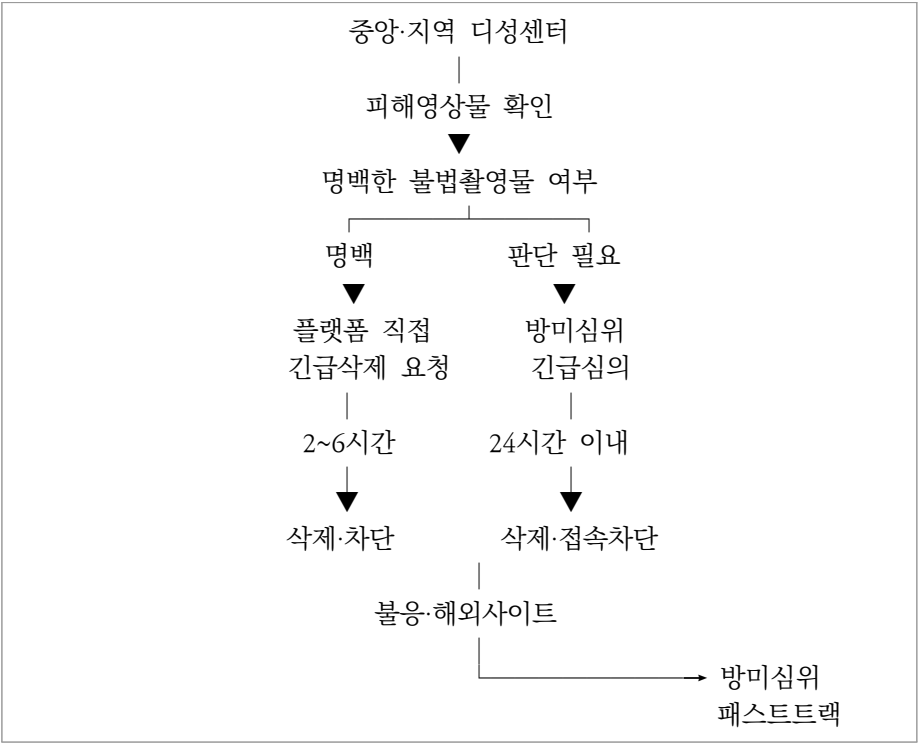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하여 기존의 심의 중심 절차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서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요구권과 동일·유사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³²⁾ 또한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7175)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는 긴급조치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신속한 사업자 조치와 심의절차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사실확인, 사업자의 직접 조치, 긴급심의, 미조치 시 절차 전환과 이행확인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고 각 단계의 처리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전문기관의 직접 요청이 중간기관을 거치는 방식보다 신속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 요청과 심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기존 심의에는 수개월, 서면심의에도 수일이 소요될 수 있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시간 단위의 대응 필요성이 지적되었다.³³⁾

따라서 필요한 것은 별도의 긴급조치 제도를 단편적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신고기관의 사실확인을 출발점으로 사업자의 신속조치와 심의기관의 긴급심의 를 분기·병행·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

32)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배포자료, 2026. 8. 20.자 배포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026. 9. 1. 최종접속).

33) 제22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39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9. 15.



첫 번째 경로는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신속 삭제·접근제한 절차이다. 센터가 대상 정보와 긴급성을 확인하여 표준화된 긴급삭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법정 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 조치에 심의기관의 사전심의를 일률적인 선행조건으로 추가하지 않고, 센터의 전문적인 사실확인과 사업자의 법정 조치의무가 직접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 또는 해외 사이트·불응사업자에 대한 긴급심의와 접속차단 절차이다. 센터는 확보한 사실확인 자료와 기존 요청·처리 이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활용하여 법적 판단과 필요한 조치의 결정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고 통상의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한시적인 임시접속차단과 기간 내 본안심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표 5-2-2] 패스트트랙 처리절차

구분	적용 대상	주요 처리절차	후속 연계
제1경로: 사업자 신속조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정보	센터의 긴급확인 및 요청 → 사업자의 삭제·접근제한 → 결과통보	미조치·불완전 조치 또는 기한 경과 시 긴급심의 및 이행점검 연계
제2경로: 긴급심의·접속차단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 해외 사이트 및 불법사업자 관련 정보	센터의 자료 전달 → 긴급심의 →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 결과통보	실제 이행확인 및 필요 시 추가 대응
병행처리	해외 유통·대규모 확산 등 대응이 급박한 사건	사업자에 대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	조치별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남은 피해에 대응

두 경로는 순차적으로만 진행되는 절차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미조치나 법정기한 경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첫 번째 경로에서 두 번째 경로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하고, 해외 유통이나 대규모 확산 등으로 대응이 급박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긴급심의 요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확인자료와 사건관리번호를 활용하여 경로가 전환되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신청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본적인 처리기한 또는 상한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긴급사유, 기한의 기산점, 예외 및 회신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 내부의 보다 엄격한 운영상 목표는 법정기한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구분에 따른 처리기준의 예시이다.

» [표 5-2-3] 처리 단계·유형별 법정 처리기준

처리 단계·유형	법정 처리기준의 예시	운영상 목표 및 유의사항
요청 접수	전자적 접수확인 즉시 제공	접수 시각을 객관적으로 기록
불법성이 명백하고 확산 위험이 큰 정보	지체 없이 조치하되 최대 6시간 이내	유포 중인 불법촬영물·성적 합성물 등은 명백성과 긴급성을 함께 확인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확산이 특히 급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긴급사건의 법정기한 적용	2시간 이내 우선조치를 운영상 목표로 검토
그 밖의 전문 신고	24시간 이내 조치 또는 구체적인 미조치·추가검토 사유 통보	사유 통보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후속처리 의무 규정

처리 단계·유형	법정 처리기준의 예시	운영상 목표 및 유의사항
긴급심의 요청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기준 검토	12시간 이내 처리를 운영상 목표로 설정 가능
조치 완료	조치 즉시 결과통보	원본 삭제·접근제한·검색 노출 제한을 구분

위 시간은 입법·운영기준의 설계를 위한 예시이다. 최종 기한은 실제 처리시간과 야간·휴일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적 합성물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성의 명백성, 피해의 긴급성 및 추가 확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조치의 법적 근거와 피해영상물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한은 영업시간이 아닌 연속된 시간으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추가검토를 이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예정기한을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보완 요구나 사유 통보만으로 법정기한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당한 지연 사유와 후속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한을 넘긴 사건은 센터가 확인하여 긴급심의 또는 감독기관의 이행점검으로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정비

사업자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요청을 받았을 때 수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를 연결하여야 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미처리, 법정기한 위반, 결과 또는 미조치 사유의 통보 누락, 반복적인 미이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과 정도에 맞는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제○조(처리 의무의 이행 확보)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 의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 신고기관의 요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또는 결과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정보의 특정 가능성, 사업자의 기술적 통제 가능성, 추가 확인의 필요성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전문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통보 의무 위반과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제재조항에서 규정하되, 상한은 법률에 직접 정하고 반복성과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의 중복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되, 사업자의 단순한 내부 사정이 포괄적인 면책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디지털센터는 미이행 사실의 확인과 감독기관 통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과 제재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감독기관의 조치 결과가 센터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삭제 요청 이후의 이행점검도 피해지원 절차 안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심의와 한시적 접속차단 절차의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심의의 조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한시적 접속차단의 요건과 효력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와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외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는 권한과 절차를 구분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긴급심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제○조(디지털성범죄정보의 긴급심의)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긴급심을 요청한 사건을 우선 심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을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문 신고기관이 제출한 사실확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중대한 누락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실확인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와 조치의 대상·범위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도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심의소위원회는 예컨대 상임위원 또는 지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전자회의·화상회의·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구성과 정족수 및 의결방식을 정할 수 있다. 운영은 상시 접수, 당직전문관의 사실검토, 긴급소위원회 회부 및 전자적 의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간·공휴일의 당직체제와 긴급 사건 분류기준 및 담당자의 권한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사무처는 자료 확인과 안전 준비를 담당하고, 법적 판단과 조치의 결정은 권한 있는 심의주체가 담당하도록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시적 접속차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과 짧은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조(긴급한 임시접속차단)

-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소위원회는 대상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통상의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접속차단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임시접속차단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내 본안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동일한 사유로 이를 반복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접속차단은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하여 실시하되, 개별 정보에 대한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조치의 상대방과 정보게시자에게 조치의 사유, 기간 및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잘못된 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관련 차단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임시접속차단은 24시간 또는 48시간과 같이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 시안에서는 48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입법에서는 의결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의무, 조치의 통지방법, 기간 내 본안심의, 자동실효 및 신속한

불복절차를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불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긴급심의로 처리하고, 임시차단은 명백성과 긴급성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와 표현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보장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수사기관과의 양방향 연계 및 공동 위험평가

센터와 수사기관의 협력은 경찰의 피해자 안내와 센터의 수사기관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제 지원과 보호조치가 연결되는 양방향 절차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삭제지원과 모니터링, 법률·상담·의료지원 등을 안내·연계하고, 센터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협박, 반복적 채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또는 조직적 유통 등 범죄혐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 연계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삭제·접속차단 요청절차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추가 규정안

사법경찰관리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요청 사실과 후속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나 삭제 요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안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피해자 보호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센터에서 수사기관으로의 연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제○조(수사기관과의 피해자 보호 연계)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지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보호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절차와 이용 가능한 지원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②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반복적 유포 협박, 대규모 확산 또는 추가 피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처리 요건을 고려하여 공동 위험평가 및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에서는 긴급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자료보존 및 법률·심리·의료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담당기관과 후속조치를 정할 수 있다.
- ④ 연계 요청 및 회신, 긴급통보, 공동 위험평가 및 사례관리의 대상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 위험평가는 개별 기관의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피해확산과 추가 침해의 위험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배분하는 절차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계기관은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담당자를 회신하고, 사건의 이관·종료 또는 지원계획 변경 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수사 연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이나 삭제지원 전체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자료보존·이관

양방향 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의 목적과 항목, 제공기관과 수령기관, 제공 제한사유 및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수사기관 및 심의기관은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1. 대상 정보의 인터넷주소, 게시물 식별정보 및 적법하게 확보한 계정 식별정보
 - 2. 최초 발견일시 및 특징정보
 - 3. 삭제·차단 요청의 일시, 처리상황 및 결과
 - 4. 재유포 확인 사실 및 추가 조치의 필요성
 - 5. 피해자의 지원 연계 의사
- ②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법률상 제한이나 수사상 지장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범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 식별정보와 상담기록은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④ 다른 법률에서 제공 요건과 절차를 정한 정보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정보연계에는 공통 사건관리번호와 표준화된 요청·회신 양식을 활용하고, 단계별 처리상황과 결과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수사 목적으로 상담기록 전부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은 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맞는 절차에 따르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형사절차 종료 후의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수사·재판절차 종료 후 남아 있는 피해와 지원요건에 따라 지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속한 삭제와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채증자료에 관한 수집·보존·이관 절차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의 영상물이나 게시화면을 그 존재와 당시의 게시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와, 그 안에 포함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센터의 채증자료 활용을 일률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 확대 문제로 구성하기보다는 자료의 성격과 입증취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삭제지원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관)

-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삭제지원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수집 일시·방법·출처, 인터넷주소, 게시상태 및 변경·접근 이력을 기록하고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피해확산 방지와 자료보존이 병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지원을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료의 수사기관 이관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조항의 목적은 센터가 수집한 자료에 포괄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지 않다. 디지털 자료는 수집·저장·출력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집방법과 보존 형식, 무결성 확인 및 이관기록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의 적법한 채증 이후 필요한 삭제·차단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수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일반적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의 지속적인 추진·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개정안

(1) 상설적인 협력체계와 실무협의 기능의 법제화

기관 간 협력은 특정 정책사업이나 담당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설적인 구조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을 규정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실제 사건대응 절차를 조정하는 실무협의 기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조(삭제지원 협력체계)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 심의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협력체계에서는 표준 처리절차, 기관 간 정보연계, 장기 미조치 사건 대응, 해외 협력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두어 사건연계, 긴급대응 및 공동 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은 담당부서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개별 사건의 수사, 심의 및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협력체계에는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의 수사 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적 연계와 요청·회신 절차 등 필요한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되, 개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는 기관 간 조정과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실무협의체는 실제 사건대응 절차와 현장의 연계 문제를 다루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단 등에서 축적된 협력 경험을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면서 중앙디성센터의 전문적인 피해지원 기능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유통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임 구체화

해외 플랫폼과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삭제 요청과 국가 차원의 국제 협력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주요 사업자와 사이트의 특성, 국가별 법제 및 삭제 요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디성센터는 요청·확인 및 사례 축적을 담당하며, 관계기관은 소관 권한과 해외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조(국외 유통에 대한 대응)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유통 피해정보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대응계획에는 국외 사업자·피해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국가별 대응절차, 장기 미삭제 정보 대응, 특징정보의 활용 및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이행확인 및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 피해지원기관 등과 특징정보를 공유하거나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은 소관 권한과 국제협력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징정보의 제공·공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응계획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장기 미삭제 사건의 관계기관 이관기준과 진행상황 점검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창구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규율에 요청 접수, 본사 전달 및 결과회신 의무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연락창구의 확보만으로 해외 원본 삭제의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접속차단 및 검색 노출 제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조치의 범위와 한계 및 추가 대응 여부를 피해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내 접근이 제한된 상태를 원본 삭제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지원정보의 처리 및 보호기준 마련

정보공유와 기술적 대응의 확대에 상응하여 처리목적, 접근권한, 보존기간 및 국외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처리의 근거와 보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자료보존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조(지원정보의 보호)

- ① 지원정보는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본자료, 특징정보, 상담기록 및 처리이력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자료의 보존기간은 지원 및 증거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고,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외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외이전 요건을 준수하고 제공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자료 유형별 보존기간,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용기록의 점검, 목적 달성 여부의 재검토 및 파기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특징정보도 피해자 또는 지원사건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전송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종합관리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연계의 편의와 함께 업무별 접근 제한 및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지원의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환류

삭제지원의 평가는 처리건수와 삭제건수뿐만 아니라 최초 접수부터 실제 조치 및 재유포 대응까지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차원의 평가기준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다성센터가 사건별·플랫폼별 자료의 수집·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제○조(삭제지원의 평가 및 제도개선)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삭제지원의 신속성, 이행률, 유통 대응 및 피해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접속차단 등 조치유형 조치유형과 국내외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제도적 장애 요인을 검토한다.
- ④ 관계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비식별 통계와 미조치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관계 법령, 업무기준, 전문인력, 대응체계, 기술개발 및 피해 회복 지원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적된 자료는 사건별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의 반복적인 불응, 기관 간 이관 지연, 기술적 탐지의 한계 및 지역별 지원격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분석 결과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수립과 지역센터의 업무개선에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경험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5) 전문인력과 기술개발·도입의 지속적인 지원

단축된 처리기한, 상시 긴급대응 및 재유포 모니터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탐지와 특징정보 대조 등 기술적 대응은 개별 기관의 일시적인 시도에 맡기기보다 성과평가에서 확인된 미탐지·오인식과 재유포 양상을 바탕으로 개발·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조(전문인력 및 기술기반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삭제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상시 대응체계 및 안전한 정보처리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삭제지원 성과와 재유포 양상을 고려하여 탐지, 특징정보 대조 및 기관 간 정보연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검토 및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술의 도입·운영 시 정확성, 오인식, 정보보호 및 업무부담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는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미삭제 원인과 변형·재유포 방식에 따라 정하고, 도입 이후에도 실제 조치시간과 탐지 정확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센터가 중앙의 기술과 대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공동 활용체계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반복적인 피해영상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업무환경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개정안은 지원의 개시와 사실확인, 사업자의 조치, 긴급심의, 수사정보의 활용, 이행확인 및 재유포 대응을 하나의 법정 절차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입법에서는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중앙·지역센터의 업무기준과 정보연계시스템 및 상시 대응인력의 준비에 필요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각 단계의 담당주체와 다음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초 요청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되고, 현장의 처리 경험이 다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국내 문헌

-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공지능 대비실태 I(신뢰성 확보 분야)』, 2025. 1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

2. 국외 문헌

- Helms, M. M. & J. Nixon, "Exploring SWOT Analysis – Where Are We Now? A Review of Academic Research from the Last Decade," *Journal of Strategy and Management* 3(3) (2010), pp. 215-251.
- Hill, T. & R. Westbrook, "SWOT Analysis: It's Time for a Product Recall," *Long Range Planning* 30(1) (1997), pp. 46-52.
- Learned, E. P., C. R. Christensen, K. R. Andrews & W. D. Guth, *Business Policy: Text and Cases* (Homewood, IL: Irwin, 1969).
- Pickton, D. W. & S. Wright, "What's SWOT in Strategic Analysis?," *Strategic Change* 7(2) (1998), pp. 101-109.
- Puyt, R. F., F. B. Lie & C. P. M. Wilderom, "The Origins of SWOT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56(3) (2023), 102304.
- Puyt, R. F., F. B. Lie & C. P. M. Wilderom, "From SOFT Approach to SWOT Analysis, a Historical Reconstruction,"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31(2) (2025), pp. 333-357.
- Valentin, E. K., "SWOT Analysis from a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9(2) (2001), pp. 54-69.
- Weihrich, H., "The TOWS Matrix – A Tool for Situational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15(2) (1982), pp. 54-66.

3. 기타 자료

가. 국내 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현안 및 제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23. 9. 19.

로톡뉴스,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가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2026. 5. 28., <https://lawtalknews.co.kr/article/N6RDNLLX0ET8> (최종접속일: 2026. 7. 14.).

성평등가족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2026.

성평등가족부,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 한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창구 하나로 통합”, 보도자료, 2026. 2. 23.,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3282 (최종접속일: 2026. 7. 16.).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배포자료, 2026. 8. 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최종접속일: 2026. 9. 1.).

나. 국외 자료

European Commission, *Draft Commission Guidelines on Trusted Flaggers*, 2026.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OJ L 277, 27.10.2022, pp. 1-102.

HateAid, *Trusted Flagger Jahresbericht 2025*, 2026.

INHOPE, *Annual Report 2025*, 2026.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2025 CyberTipline Report*, 2026.

4. 웹사이트

가. 미국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https://www.missingkids.org/gethelpnow/cybertipline> (최종접속일: 2026. 9. 6.).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CyberTipline Data”,
<https://www.missingkids.org/gethelpnow/cybertipline/cybertiplinedata>
 (최종접속일: 2026. 9. 6.).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Take It Down”,
<https://takeitdown.ncmec.org/ko/> (최종접속일: 2026. 9. 6.).

나. 호주

Australian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Commissioner”, <https://www.esafety.gov.au/> (최종 접속일: 2026. 9. 6.).

Australian eSafety Commissioner, “Image-based abuse”,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image-based-abuse> (최종 접속일: 2026. 9. 6.).

다.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Revenge Porn Helpline”,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최종 접속일: 2026. 9. 6.).

StopNCII.org, “StopNCII.org”, <https://stopncii.org/> (최종 접속일: 2026. 9. 6.).

StopNCII.org, “How StopNCII.org Works”, <https://stopncii.org/how-it-works/?lang=en-gb> (최종 접속일: 2026. 9. 6.).

라. 독일

HateAid, “HateAid”, <https://hateaid.org/en/> (최종 접속일: 2026. 9. 6.).

HateAid, “Trusted Flagger: Melden mit Wirkung”, <https://hateaid.org/trusted->

flagger-dsa/ (최종 접속일: 2026. 9. 6.).

Bundesnetzagentur, “Trusted Flagger”,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Fachthemen/DSC/1_Themen/TrustedFlagger/dokument.html (최종 접속일: 2026. 9. 6.).

마. 프랑스

France Victimes, “France Victimes”, <https://www.france-victimes.fr/> (최종 접속일: 2026. 9. 6.).

e-Enfance, “e-Enfance / 3018”, <https://e-enfance.org/> (최종 접속일: 2026. 9. 6.).

바. EU 및 국제협력

European Commission, “Trusted Flagger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trusted-flaggers-under-dsa> (최종 접속일: 2026. 9. 6.).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ervices Coordinators”, <https://dscdb.edri.org/> (최종 접속일: 2026. 9. 6.).

INHOPE, “How to Report”, <https://www.inhope.org/what-we-do/how-to-report> (최종 접속일: 2026. 9. 6.).

사. 대만

衛生福利部 性影像處理中心(Sexual Image Processing Center, SIARC), “性影像處理中心”, <https://siarc.mohw.gov.tw/> (최종 접속일: 2026. 9. 6.).

아. 일본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性犯罪・性暴力被害者のための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seibouryoku/consult.html (최종 접속일: 2026. 9. 6.).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女性に対する暴力の根絶”, <https://www.gender.go.jp/policy/>

no_violence/ (최종 접속일: 2026. 9. 6.).

Internet Hotline Center (IHC), “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センター”,
<https://www.internethotline.jp/> (최종 접속일: 2026. 9. 6.).

PAPS, “PAPS”, <https://www.paps.jp/> (최종 접속일: 2026. 9. 6.).

자. 한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 <https://d4u.stop.or.kr/main> (최종접속일: 2026. 9. 6.).

[신행] 여구 파서 대상 보며 먹다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지식키워드	주제분류
1	2005	기타공학일반	손정환, 김귀남	국내 디지털 포렌식 기술현황과 발전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수사·포렌식
2	2008	헌법	김형상, 김학신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	미국헌법연구	디지털 범죄(Digital Crime), 프라이버시(Privacy)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3	2009	헌법	김학신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헌법상 영장주의	미국헌법연구	기본권 보호	수사·포렌식; 피해지지원·삭제
4	2010	컴퓨터학	최재민, 이상진, 오정호	국내 환경에 적합한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용 이미지 구성 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컴퓨터 포렌식 툴 테스트, 컴퓨터 포렌식 이미지, 검증	수사·포렌식
5	2015	컴퓨터학	황현호, 박동주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SSD TRIM 명령의 선택적 복구	정보처리학회논문 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안정성, SSD, TRIM 명령	수사·포렌식; 피해지지원·삭제
6	2017	법학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재더법학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유란, 도촬, 아동청소년음란물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 유통차단
7	2017	경찰행정	허경미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 연구	한국경찰연구	섹스팅, 리벤지 포르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포르노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8	2017	기타여성학	장명선	성평등 입법과제의 현황	페미니즘연구	성평등, 헌법개헌,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입법·차별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9	2018	법학	권미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재판법학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폭력,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	입법·차별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채널
10	2018	비교법학	김연수, 정준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물라카메라 범죄, 디지털성범죄, 리벤지포르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불법유통	입법·차별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채널; 예방교육
11	2018	철학	윤지선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의 형이상학적 분석 본채도: 남성 시선-주체의 인식차표계	철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 불법 도촬카메라, 데카르트, 카메라 옵스큐라, 좌표	피해실태·인식조사
12	2018	신문방송학	한희정	사이버 성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들: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정서, 코나투스, 정서모방, 한사성,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열굴, 그 곳은편〉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채널
13	2019	사회과학일반	남재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	입법·차별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채널; SI·기술활용
14	2019	기타법학	이윤정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강원법학	양성갈등, 여성, 일별, 디지털 성범죄, 도촬, 리벤지 포르노	입법·차별규정;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채널
15	2019	경찰행정	비한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통(보복성 음란물)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통,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보복성 음란물	입법·차별규정; 수사·포렌식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6	2019	법학	배상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딥페이크 포르노,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폭력, 형사규제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17	2019	철학	윤지선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철학연구	관음충, 군집구성체, 데리다, 신물질주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포렌식
18	2019	경찰행정	이은영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비동의 성적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음란물 유포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 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 유통차단
19	2019	형법	이정원	신체촬영범죄의 관련 법률과 수사실무상 쟁점 검토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리벤지 포르노, 신체촬영, 도촬, 디지털 성범죄, 개인간 사적 영상물, 성적 수치심, 수사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20	2020	법학	선은애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디지털범죄, 범죄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21	2020	법학	김희정, 박광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규관법학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N번방 사건, 아동성착취물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 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 유통차단
22	2020	사회과학일반	김미선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미디어, 인터넷 중독,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성문화	피해실태 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예방교육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3	2020	기타과학 기술학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해외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법적공백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24	2020	형사정책	김한균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형사정책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카메라이용불법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25	2020	사회과학일반	김미선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정보연구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성범죄, 성문화, 판례분석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예방교육
26	2020	법학	강희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성폭력, 젠더폭력, 가해자처벌, 성평등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답제이크·허위영상
27	2020	인권/국제 인권법	박예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인권연구		기타
28	2020	기타사회과학	조춘범, 이현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예측요인 탐색	인문사회 21	랜덤포레스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유포, 소비	피해실태·인식조사
29	2020	사회과학일반	오세연, 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사례분석, 성인지 감수성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식제
30	2020	기타사회과학 일반	이나현, 조윤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목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성범죄자, 강간, 테크놀로지 기반 성폭력	아동·청소년성착취
31	2020	컴퓨터학	채윤호, 김희강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위장수사시스템, 위장수사 기법	수사·포렌식; 플랫폼 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32	2020	법해석학	한성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불법 유포, 피해자, 성인지 감수성	피해실태·인식조사
33	2020	기타법학	김한균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차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저스티스	디지털성범죄,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여성폭력, 이미지기반,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34	2020	과학기술과법	양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연구 - 불법촬영물 압수 방법을 중심으로	법과학의 신동향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출력 복제 압수의 한계, 영구삭제, 비례성, 디지털, 포렌식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35	2020	경찰행정	최소운, 한민경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연구동향, 명명	피해실태·인식조사
36	2020	경찰행정	최이문, 안재경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심리학적 분석: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자, 포르노그래피,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
37	2020	형사정책	윤지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다크웹,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온라인 수색, 잠입수사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38	2020	목회상담학	권수영, 장석연, 김희선	구체적 타자를 드러내는 실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및 상담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 정서중심치료, 인지처리치료,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목회신학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39	2020	경찰행정	김명훈, 이상진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다편에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치안정책연구	이슈관심주기, 정책변동, 입법과정, 다편에이크 포르노, 디지털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다편에이크·하위영상
40	2020	신문방송학	이수범, 송민호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비판적 담론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CONCOR	아동·청소년성착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41	2020	기타과학 기술학	김혜진	디지털 아동 성착취 대응현황과 해외 인공지능 범죄 예측 시스템 비교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특성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AI·기술활용
42	2020	경찰행정	최용성, 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 불법 유통, 수사, 정보삭제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43	2020	법학	신상현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고려법학	디지털(온라인)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온라인 그루밍, 잠입수사(위장수사, 비밀수사, 합정수사, 독일형법 제184조b,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삭제
44	2020	법학	정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위장위장수사, 합정수사,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 비교법수사, 합정수사,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 비교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45	2020	경찰행정	신원부, 이원희	아동음란물 전담조직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아동음란물,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46	2020	분야교육	이채원	문학과 사회의 관계와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고찰 - 동시대 현대문학을 매개로 한 사고와 토론 수업을 기반으로 -	사고와표현	문학, 사회, 문학의 정치성, 소통, 모그 디오라마, 폭력의 전시, 디지털성범죄	기타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47	2020	기타과학기술학	김혜진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해외 주요국 지원 사례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48	2020	법학	박현정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소지, 불법촬영물 시청, 불법유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49	2020	컴퓨터학	김승규, 김무석, 강구민	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불법촬영 범죄, 모바일포렌식, 임의제출, 디지털 성범죄, 안드로이드포렌식	수사·포렌식
50	2020	형사소송법	이근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합정수사 허용의 위험성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아동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합정수사, 잠입수사, 적법절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51	2020	목회상담학	김희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은밀한 범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목회와상담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불안, 수치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상담,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 디지털포렌식; 하위영상
52	2020	형법	김승규, 천성덕, 강구민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통향	몰래카메라 범죄, 모바일 포렌식, 임의제출, 디지털 성범죄, 안드로이드 포렌식	수사·포렌식
53	2020	법학일반	권지혜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행위와 형사법적 개선점	비교법연구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성폭력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54	2020	법학	이지수, 이연주, 김기범	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식 방안	경찰학연구	디지털포렌식, 모바일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55	2020	비교법학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학법학	온라인 그루밍행위, 디지털 성범죄, 독일 제176조, 아동에 대한 성적 악용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56	2020	법학	최호진, 허정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범위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카메라 범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성인지 감수성	입법·처벌규정
57	2020	경찰행정	함영욱, 임종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사이버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 2차 피해, 피해자 인권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58	2020	컴퓨터학	홍태석	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일본의 판례 및 논의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포렌식연구	딥페이크, 일본 아동포르노법, 아동성착취물, 아동매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딥페이크·허위영상
59	2020	경찰행정	김혜진	뉴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토픽 분석(LDA)을 통한 성범죄 지안 이슈의 효율적 탐색	한국범죄학	성범죄, 온라인 뉴스 기사, 웹크롤링, 토픽(LDA)분석, 비정형 데이터	AI·기술활용
60	2020	여성학	이채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 —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일본군 '위안부', 페미니즘, 내셔널리즘, 한일 여성연대, 젠더 폭력	피해실태·인식조사
61	2020	교육학	박예스더	한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교수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쭈구리'에서 '원더우먼'으로	교육인류학연구	성폭력피해, 성폭력예방교육, 성찰, 자문화기술지	예방교육
62	2020	경찰행정	백창원, 노승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포털 뉴스 기사 및 사용자 의견 데이터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n번방, 성범죄, 빅데이터, word2vec, 넷글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AI·기술활용
63	2020	컴퓨터학	이한성, 이형우	Block based Smart Carving System for Forgery Analysis and Fragmented File Identification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File Carving, Smart Carving, File System, Block, Fragmentation, Forgery Analysis, Digital Forensics	수사·포렌식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64	2021	학제간연구	김미선, 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안전문화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법적 공백, 성의식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예방교육
65	2021	사회심리/일탈 과범죄사회학	김미선, 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제20회 안전문화포럼 학술대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법적 공백, 성의식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예방교육
66	2021	법학	배상균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외법논집	청소년 보호, 청소년 범죄,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성범죄 예방교육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예방교육
67	2021	비교법학	정완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물, N번방 사건, 디지털성착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지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68	2021	행정학	김진혁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공인행정학회 보	디지털 성범죄, 통제시스템, 성범죄자, 성범죄 피해자, 예방교육	예방교육
69	2021	경찰행정	홍영선, 권현영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위장수사관, 합정수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70	2021	기타사회과학	엄하나, 유영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연구 동향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71	2021	법학	전윤정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긴급대응체계, 역외사업자 규제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72	2021	법해석학	이종현, 강동욱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불법촬영물, 신변보호, 신분비공개 수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73	2021	기타법학	송영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양형기준, 양형인자, 도촬,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답페이크·허위영상
74	2021	정신치료학	강희숙, 이혜윤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제작 경험	한국사이코드라마 학회지	소시오드라마 제작, 디지털 성범죄, 대학생, 질적 연구	피해실태·인식조사
75	2021	법학	김한균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형사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위원회, 양형의 합리화, 양형격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76	2021	컴퓨터학	이유민, 이민규	디지털 성범죄사건보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텍스트 마이닝, 프레임, 의미연결망 분석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77	2021	형사정책	홍정윤, 이수정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방향성	교정담론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AI·기술활용
78	2021	기초법	김두상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아동·청소년 안전,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79	2021	컴퓨터학	주지연, 진의현, 김기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위장수사, 신분위장,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위장수사시스템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80	2021	법학	박찬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피해자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법학	디지털 성범죄, 생애사적 접근,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회복, 법적보호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81	2021	여성학	김소라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디지털 성범죄, 해외 서버 사이트, 검찰, 기소 관행, 불기소 결정서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82	2021	기타법학	이현재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적 포라이버시, 비동의 촬영물유통죄, 비교법	입법·처벌규정
83	2021	형사정책	신현주, 김미선	청소년의 성 의식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양기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디지털 성범죄, 양기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운영적 성차별주의, 청소년	피해실태·인식조사
84	2021	행정학	명성준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의 국가별 비교 연구: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체계, 사이버성폭력, 이미지 기반 성착취, 국가별비교연구	피해자지원·삭제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85	2021	형사정책	정도희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소년보호연구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피해자, 잊혀질 권리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지원·식제
86	2021	형사정책	김정연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87	2021	기타법학	김재한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삭제의무, 위험성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지원·식제
88	2021	법학	최준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청소년성보호법, 그루밍, 디지털성범죄, 성적 착취,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89	2021	경찰행정	이은영, 서봉성	불법촬영물 유통사례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센터, 디지털 성폭력, 불법영상물 유통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식제; 틀려물·유동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90	2021	사회과학일반	송봉규	사이버공간의 아동성착취대에 관한 연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사이버공간, 랜덤채팅앱, 아동성학대, 아동성착취, 성적피싱,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틀려물·유동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91	2021	민법	이수경	사인(私人)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가짜뉴스, 인격권, 딥페이크범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인공지능, n번방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92	2021	사회복지학	전수아, 권하늬, 정하나, 김수영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네이티브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93	2021	행정학	이명성, 이상진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 학회보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시청행위 처벌규정, 불법촬영물, 민간 모니터링 활동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94	2021	경찰행정	이경아, 조은비, 홍명기, 장현석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불법촬영 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비교	치안정책연구	불법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제법, 생존분석	입법·처벌규정
95	2021	법학	안갑철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성착취, 죄형법정주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96	2021	형사소송법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잠입수사, 비밀수사, 합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온라인 그루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97	2021	과학기술과법	유현이, 정주은, 조은경	온라인 그루밍의 언어적 전조 특징 - Perverted Justice 사례를 중심으로	법과학의 신통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언어적 전조, 아동·청소년 피해자, 위장 수사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98	2021	여성학	고병진	불법촬영 탐지기술의 다면적 구성: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는 어떻게 범죄예방 도구로 살아남았는가?	한국여성학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디지털성범죄, 공중화장실 공포, 여성안전	입법·처벌규정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99	2021	형사정책	김한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형사판례연구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성착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디지털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100	2021	비교법학	김종구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성착취범죄, 사이버공간, 메타버스, 가상공간, 간접정범	입법·처벌규정
101	2021	기타법학	남성은, 장인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성매매신분위장수사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신분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02	2021	경찰행정	조상현, 정병수	코로나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코로나19, 범죄, 언어 네트워크 분석, 팬데믹, 일상활동	아동·청소년성착취
103	2021	응용심리	송원영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AM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디지털 성폭력, 강간통념, 이미지기반 성학대, 잘못된 신념 수용, 척도 타당화 연구	기타
104	2021	기타사회과학	박은하	대학 글쓰기 제목의 양상 분석: 설득적 글쓰기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설득적 글쓰기의 제목, 대학생 글쓰기, 제목 구조, 제목의 주제어, 논제의 유형	피해실태·인식조사
105	2021	인공지능	장은진, 신승중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SHA-256 활용 데이터 수정 감지시스템 제안	지능정보논문지	Digital Forensic, Analyze Data, SHA-256, Hash Data, Encryption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106	2021	법학	오상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위장수사, 임의수사, 강제처분, 기본권 침해, 법률유보, 영장주의(법원의 허가)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07	2021	사회과학일반	차세진, 황순영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모듈형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연구	지적장애, 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모듈	예방교육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08	2022	법학	김성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 유통 억제	중앙법학	디지털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명예, 간접한 성폭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109	2022	경찰행정	김예정, 송봉규	성인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대책	한국범죄심리연구	성인사이트, 디지털 성범죄,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조직범죄, 성착취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110	2022	법학	최종선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디지털성범죄정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 신속심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자기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111	2022	기타법학	오정용, 박혜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기원·삭제; 예방교육
112	2022	형사정책	오은경, 김현숙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의 경험에 관한내러티브 탐구	교정담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성범죄 모니터링, 내러티브 탐구	피해실태·인식조사
113	2022	기타예술체육	이재영	ICT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기술, 온라인 플랫폼,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수사·포렌식; 피해자기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114	2022	법학	이원상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온라인수색, 신분위장수사,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 암호화, 감청, 압수·수색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15	2022	정보통신이론	황재원, 박정흠, 이상진	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제안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범죄예방, 디지털 증거, 셸테드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116	2022	컴퓨터학	유혜진, 박아현, 박윤지, 이지원, 주다빈, 최혜인, 정두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RNN 기반 취약군 선별 체계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성범죄, 범죄예방, 일상활동이론, 딥러닝, 순환신경망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AI·기술활용
117	2022	경찰행정	신현주, 이정숙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성착취물, 유포, 피해 상담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118	2022	법학일반	이준복	메타버스(Metaverse)와 디지털 성범죄, 미래를 대비한 입법적 대응 방안	비교법연구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표현의 자유, 인격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규제	입법·처벌규정; 플랫폼·유통차단
119	2022	컴퓨터학	신지호, 최현표, 박광선	물라카메라를 악용한 2차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방법론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성범죄, 물라카메라, 디지털포렌식, STT	수사·포렌식
120	2022	법학	이준복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아동·청소년성착취
121	2022	형사정책	김재한	불법촬영물의 제재방안에 대한 고찰 - 행위유형에 따른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양형기준, 피해자 보호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22	2022	행정학	이준형, 민홍기	메타버스 관련 보안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검토	한국공인행정 학회보	메타버스, 보안, 보안위협,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23	2022	경찰행정	최대현, 장응혁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경찰, 신분위장, 신분비공개,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보호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124	2022	법해석학	황만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합정수사, 잠입수사, 비밀수사,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25	2022	경찰행정	강나래, 이상진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합정수사, 온라인그루밍, 아동성착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26	2022	법학	진윤경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이화젠더법학	성범죄 처벌규정 체계, 성적 자기결정권, 비동의간음죄,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의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식제
127	2022	경찰행정	박한호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 학회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 신고의향, 악제이론, 처벌인식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128	2022	경찰행정	김도선, 함영옥, 김연수	사이버 수사경찰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과 영향요인 연구 - 조직 내 성차별 문화와 개인의 양가적 성별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피해자다움, 양가적 성별의식, 조직문화, 디지털성범죄, 수사경찰	수사·포렌식
129	2022	경찰행정	김지은, 우병관	사이버 범죄 탐지 및 분석기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사이버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시스템, 사회연결망분석, 데이터베이스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130	2022	경찰행정	안재열, 이상진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수사관의 PTSD, 성착취물 수사관, 디지털 성착취물, 경찰관의 PTSD, 스트레스 최소화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31	2022	경찰행정	김정현, 이현숙, 김유진, 강선혜, 석희진, 정희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 디지털 성폭력 해당 구분	한국범죄심리연구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상담 내용 분석,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132	2022	형사정책	박찬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2021. 9. 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청소년성보호법, 신분위장수사,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온라인 그루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33	2022	형사정책	박상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언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디지털 성범죄, 보호자 통지제도, 보호자 대리인 제도, 플랫폼 운영자 규제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착취; 플랫폼·유통차단
134	2022	기타법학	최자유	아바타 성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메타버스, 가상세계, 아바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 스토킹, 그루밍 성범죄, 불법정보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디지털·허위영상
135	2022	컴퓨터학	최용철, 김기윤, 김종성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스토리지 앱 크리덴셜 활용 및 아티팩트 분석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아티팩트 분석, 클라우드 앱	수사·포렌식
136	2022	기타사회과학	이진아, 김원희, 서미아	반복적 도촬 도촬 남자의 생애사 연구	인문사회 21	도촬, 생애사,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기타
137	2022	기타사회과학	이동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관규칙 분석	사회과학리뷰	뉴스데이터, 사이버범죄, 연관규칙 분석,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착취; 플랫폼·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38	2022	여성정책	정연주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룹밍: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룹밍, 아동, 청소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139	2022	경찰행정	민흥기	국제공조의 이해와 강화 방안 - 인터폴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경찰, 국제공조수사, 국제협력, 인터폴, 해외도피사범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140	2023	학제간연구	차혜경, 김경숙	Factor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Digital Sex Crimes Among University Students of the MZ Generation in Korea	산업융합연구	Digital sex crimes, Perception of digital sex crim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MZ generation	피해실태·인식조사
141	2023	법학	이원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법정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디지털·하위영상
142	2023	법해석학	오삼광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	한양법학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범죄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AI·기술활용
143	2023	법학일반	최진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 압수수색,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44	2023	경찰행정	신성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지인능욕, 기술,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145	2023	경찰행정	이정숙, 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자의 소진 경험	한국범죄심리연구	디지털 성범죄, 소진, 상담자, 질적 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146	2023	형사정책	박은하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범죄 경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담론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폭력,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가해자, 현상학적 연구	예방교육
147	2023	경찰행정	지서이, 이정원	언론의 디지털 성범죄 보도 프레임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 범죄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범죄 두려움, 디지털 성범죄, 언론보도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피해실태·인식조사
148	2023	법학	박미량, 이형성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활동 제한 법률과 그 함의	교정연구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제한, 컴퓨터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미국, 보호관찰특별 준수사항	수사·포렌식
149	2023	법학	안갑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징계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기준, 징계기준, 죄형법정주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150	2023	한국어외문학	이혜원	한국 걸그룹 노래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전략 분석 - 디지털 성범죄 대항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걸그룹, 페미니즘, 여성혐오, 디지털 성범죄, 대중음악	기타
151	2023	법학	김호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법과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피해자, 피해자 지원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52	2023	형법	정수정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증거, 우연히 발견한 증거, 긴급압수, 별건 증거, 소지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153	2023	경찰행정	박미량, 이형섭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디지털성범죄, 특별준수사항, 디지털기기 금지, 인터넷 제한, 컴퓨터 제한, 보호관찰	수사·포렌식
154	2023	학제간연구	전혜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실무자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피해경험 -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	안전문화연구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피해경험, 온라인 그룹링, 텔레그램, 디스코드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155	2023	법학	김한균	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화젠더법학	디지털성범죄, 기술매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156	2023	법학	조성훈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성적 인권권 침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온라인수색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157	2023	법학	김혁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의 위장수사 내지 비밀수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합정수사,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158	2023	컴퓨터학	박장현, 이상진	수사관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성착취물 조사 체계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트라우마, 객체 탐지, 조사체계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159	2023	언론/미디어 법제	고채은, 박아란	디지털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디지털 성범죄, 투명성 보고서, 플랫폼 투명성, 플랫폼 책임, N번방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지식기워드	주제분류
160	2023	법학	안갑철, 안경옥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검토 - 독일과 미국의 법규와 비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격권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161	2023	법학	김민지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비용, 구상권 행사, 성폭력방지법,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보호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162	2023	컴퓨터학	최재원, 하지영, 김기범	미디어 은닉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와 분석절차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은닉 애플리케이션, 모바일포렌식, 사이버범죄수사, 디지털증거, 디지털성범죄	수사·포렌식
163	2023	기타법학	유주신	메타버스 내 인격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메타버스, 디지털 인격권, 인격권의 침해와 예방, 디지털 성범죄, 아바타의 법적 지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164	2023	심리과학	정지인, 조아수현, 국혜조, 안도연, 최현정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 지침과 지향점: 지원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 페미니즘, 포커스 그룹, 주제 분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165	2023	정책학	윤성욱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표현의 자유, 인터넷, 내용규제, 통신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법·처벌규정
166	2023	기독교신학	김희선	N번방 이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에 관한 연구	신학연구	N번방,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전문상담, 불편한 용기, 추적단 불꽃, 여성주의상담, 이야기치료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67	2023	경찰행정	정재용	답웹과 다크넷 공간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코로나19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답웹, 다크넷, 청소년, 잠재 디리클레 할당, 혼합방법론	인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예방교육
168	2023	경찰행정	황정웅	마약류 범죄 대상 위장수사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비대면, 면책조항, 통제장치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169	2023	기타법학	윤소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피해자의 의사-위계에 의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위계, 동기의 착오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170	2023	헌법	박희영, 홍신기	독일의 온라인 수색과 IT 기본권	헌법학연구	온라인 수색, 독일형사소송법, 연방헌법재판소, 비례원칙, IT 기본권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71	2023	임상심리	유정아, 송원영	강간통념 수용척도의 비교	인지행동치료	강간통념,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 한국판 강간통념 척도,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통념 수용 척도	피해실태·인식조사
172	2023	정신신체의학/ 자문조정정신 의학	나혜수, 이신구, 백강민, 임우영, 강승걸, 조성진, 나경세, 강재명, 조서은, 배승민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신체의학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피해실태·인식조사: 예방교육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73	2023	학제간연구	이해담, 김지현	스토킹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 스토킹 피해 조사를 중심으로 -	안전문화연구	스토킹, 스토킹 범죄, 스토킹 피해 실태,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제도	인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디지털·허위영상
174	2023	법정책학	김민수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위장수사, 잠입수사, 합정수사, 기본권 제한, 사실적 기본권 제한, 강제수사, 영장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기방지 기본법안	인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75	2024	학제간연구	강선경, 서상형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매개효과	한국과 국제사회	부모의 양육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SNS	기타
176	2024	디자인	손가현, 우민우, 라경연, 정재희	AI 모니터링 기반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	디지털 성범죄, AI 모니터링, 서비스디자인, 초기 대응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AI·기술활용
177	2024	경찰행정	심해선, 김병배	디지털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치안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재범예측, ROC 분석	기타
178	2024	법학	박성민	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입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아바타, 성적 인권권, 성적 괴롭힘	인법·처벌규정; 플랫폼·유통차단
179	2024	기타법학	안수선, 우승재, 김민석, 김수현	한국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발전 방향 - 해외 사례를 통한 제한 -	범죄수사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착취물, 국제 비교, 수사 제도 개선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80	2024	기타교육학	오신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성 고정관념, 성별차이, 법교육	아동·청소년성착취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81	2024	기초법	김두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찰 - 그루밍과 섹스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그루밍, 섹스팅,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정수사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182	2024	기타사회과학	김유현, 신동윤, 최은정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성착취 이미지 기반 확대통념수용, 디지털 시민의식	예방교육
183	2024	학제간연구	홍영신, 이병엽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수색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온라인수색, 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 디지털성범죄	입법·차별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84	2024	청소년복지	권혜원, 노종래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LDA, 토픽모델링, 판례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185	2024	컴퓨터학	조성희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향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디지털 성범죄, 유해 콘텐츠, 디지털 혐오 표현, 청소년	피해실태·인식조사
186	2024	사회복지학	최혜정	현장 전문가들이 인식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질적연구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187	2024	형사정책	윤선영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심리학적 특성: 전통적 접촉 성범죄자와 비교하여	교정당론	디지털 성범죄, 비접촉 성범죄, 비교 연구, 범죄 위험 요인, 성범죄자	기타
188	2024	도시/지방행정	임준형, 박종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조직 간 협업체제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업적 거버넌스, 정책난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189	2024	형사정책	이주연, 한성연, 노성훈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단발성 피해와 반복피해의 영향요인: 기획이론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기획이론, 반복피해, 단발성 피해, 청소년 비행, 일상활동이론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190	2024	경찰행정	이성식, 전신현	가부장환경요인의 디지털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과 통제요인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범죄학	디지털성범죄, 가부장적정환경, 학습과 통제, 매개 및 조절효과	피해실태·인식조사
191	2024	형사정책	이주연, 한민경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 피해, 중첩 영향요인에의 성차	소년보호연구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성별 차이, 가해-피해 중첩, 위험요인, 보호요인	피해실태·인식조사
192	2024	법학	이정년	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규율을 위한 입법 논의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	이화젠더법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님페이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님페이크·하위영상
193	2024	기타예술택목	김민철, 주성빈	전자기기 탐지를 위한 특수목적권 훈련 성과에 관한 연구: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전자기기, 특수목적권, 디지털 성범죄, 경찰권, 수사	수사·포렌식
194	2024	기초법	김두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합정수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합정수사, 인스타그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195	2024	법학	민윤영	메두사, 세이렌 그리고 법의 전일성(全一性)-디지털 성폭력범죄 문제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접근	법철학연구	메두사, 세이렌, 전일성 그림자, 아니마, 디지털 성범죄, 법의 무의식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AI·기술활용
196	2024	법학	안갑철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인권과 정의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불법촬영범죄, 범죄예방, 재범방지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197	2024	기타행정학	최승원, 이주락	온라인 그루밍의 메커니즘 분석과 보안 전략 제언	시큐리티연구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범죄 메커니즘, 범죄 스크립트 분석, 보안 전략	아동·청소년성착취
198	2024	사회과학일반	이성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등의 개선방안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 비밀수사,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199	2024	경찰행정	이정우, 노승국	미래신호예측 방법론을 활용한 범죄 확산 대응에 관한 연구: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악신호, 미래신호예측, 치안정책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00	2024	법학	윤소현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본질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합정수사, 위장수사, 감청, 디지털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201	2024	법학일반	이성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영남법학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202	2024	법학	김수아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이화젠더법학	딥페이크 성범죄,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성적 대상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괴롭힘	피해실태 인식조사; 딥페이크·허위영상
203	2024	형사정책	박찬길	그루밍범죄의 실제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	형사정책	그루밍범죄, 신분위장수사,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204	2024	법학	엄건웅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법이론실무연구	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성착취물, 지인농육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05	2024	법학	김정혜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과 가해자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이화젠더법학	기술매개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적 괴롭힘, 그루밍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06	2024	경찰행정	신현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영상물에 대한 유도불안이 범죄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위험인식, 유도불안, 범죄예방행동,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인식조사
207	2024	법학	주현경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주제어 : 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법, 디지털 성범죄, 공직선거법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식체;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08	2024	경찰행정	김재경	빅카인즈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경향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빅카인즈, 딥페이크, 범죄경향,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09	2024	형법	박웅신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통의 실태와 절차법적 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범죄정보 수집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공개출처정보, 사법적 통제, 관찰권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10	2024	기타법학	정응혁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함정수사, 청소년보호법, 딥페이크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딥페이크·허위영상
211	2024	학제간연구	김재민	범죄자가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실체와 '참된 행복'의 탐색	신앙과 학문	거짓 행복, 참된 행복, 범죄자, 성경, 기독교	기타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12	2024	형사정책	박은하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교육의 매개효과	교정담론	청소년 성교육, 학교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성교육, 성행동	예교교육
213	2024	법학	김주만	범죄 발생의 동향과 사회적 변화 : 2021~2022년 범죄 데이터 중심으로	중앙법학	범죄의 원인, 상위 5개 범죄, 사회적 이슈 및 사건·사고, 형사정책, 법률변화	아동·청소년성착취
214	2024	경찰행정	신지호, 신인경	영상 합성 기술의 문제점 및 치안과학기술 분야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	영상 합성 기술, 인공지능, 영상 보안, 영상 포렌식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식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15	2024	경찰행정	최정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장수사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한국치안행정논집	위법성,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 신분위장, 통제, 영장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216	2024	법정책학	유정아, 송원영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와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의 타당화	보호관찰	강간통념, 강간통념 측정도구, K-IRMA, K-SRMA, 한국판 척도 타당화	기타
217	2024	법학	최대호, 정영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범죄'와 합성수사 - 18 U.S.C. §2422(b)의 규정 및 판례를 소재로-	중앙법학	청소년성보호법,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합성수사, 디지털 그루밍 범죄, 불응미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식재
218	2024	법학	장다혜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성폭력처벌법,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속에 관한 죄, 젠더법학	입법·처벌규정; 피해지원·식재; 피해지원·식재
219	2024	법학	이우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개선 연구	입법학연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정보접근권, 범죄피해자 진술권 및 참여권,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식재; 딥페이크·허위영상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20	2024	형법	이재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범죄단체, 범죄집단, 형법 제114조, 마약, 비대면·디지털범죄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221	2025	과학기술학	양정하, 김지현, 박선영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Exposure Experiences of Digital Sex Crimes	산업과 과학	Online social networking, Sexual harassment, Student, Focus groups, Surveys and questionnaires	피해실태·인식조사
222	2025	기타사회과학	김소연, 노종래, 김정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요인	청소년학연구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이버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온라인 활동 요인	아동·청소년성착취
223	2025	여성학	이인숙, 최희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대응방안 연구	젠더와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경험, 질적 연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식제
224	2025	기타사회과학	김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사회과학리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국제 공조, 딥페이크, 플랫폼 책임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하위영상
225	2025	경찰행정	송병호, 임준형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와 시사점	한국범죄심리연구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하위영상
226	2025	청소년학	김민아, 서종수	경북지역 20대 청년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경험실태	청소년상담학회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인식,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및 대응, 경성북도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227	2025	과학기술학	김유현, 신동윤	초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차세대융합기술 학회논문지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예방교육, 디지털 시민의식,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예방교육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28	2025	기타기독교신학	김규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유괴 불안에 위한 목회신학적 틀을 연구	장신논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괴 불안, 여성주의 신학, Christie Neuger, James Poling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식제
229	2025	형사정책	박서연, 이창배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피해지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 피해 취약성, 설문연구, 청소년 피해 경험	피해실태·인식조사· 딥페이크·허위영상· 예방교육
230	2025	경찰행정	이무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의 현황과 개선 전략-딥페이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범죄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지원	임범·차별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식제· 딥페이크·허위영상
231	2025	경찰행정	이수현, 조영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학교급별 차이, 디지털성범죄 설명요인	피해실태·인식조사
232	2025	행정학	임원식, 정세종	신분위정(비공개)수사의 주요 쟁점과 논평 -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공인행정 학회보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임범·차별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233	2025	경찰행정	조다인, 김민서, 김학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기해의 영향 요인 탐색: 사회통제이론의 부모 및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회통제이론, 부모 관계, 친구 및 교사 관계, 구조방정식	아동·청소년성착취
234	2025	행정학	전예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지역적 특성,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식제지원	피해지원·식제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35	2025	기타법학	김혁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범죄의 변화와 형사법의 대응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	범죄수사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다펜타이크,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적 자기결정권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다페이크·허위영상
236	2025	정책학	이보라, 김면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향상: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	입법과 정책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형사입법, 형사입법의 원칙, 입법절차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237	2025	경찰행정	윤선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피해자 선택 차이 분석 :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피해자, 심리적 특성, 지배성	아동·청소년성착취; 예방교육
238	2025	기타인문학	김재한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제문화연구	디지털성범죄,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변화, 국제공조,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
239	2025	기타사회복지학	오연희	한국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원칙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다페이크·허위영상
240	2025	기타법학	김슬아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법적 연구-미국 연방의 아동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피해자 구제, 경제적 지원, 아동성착취물 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241	2025	법학	송승환, 최가빈, 하정민, 황지섬, 이경열	청소년 다펜타이크 성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입법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다펜타이크, 미디어 리터러시, 처벌과 교육, 청소년 범죄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자지원·삭제; 다페이크·허위영상; 예방교육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42	2025	사회과학일반	송해진	AI(인공지능)기반 사기범죄 유형과 문제점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AI, 딥페이크, 사기범죄, 피싱, 디지털성범죄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예방교육
243	2025	법정책학	이은영	딥페이크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중심 대응	보호관찰	딥페이크, 소년범죄, 디지털 성범죄, 리터러시, 교육적 처우	입법·처벌규정;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예방교육
244	2025	법학	배상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규제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이미지 기반 성적 착취, 성폭력처벌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식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45	2025	기타법학	이준복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딥페이크 범죄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헌법적 논의	범죄수사학연구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선거권, 민주주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46	2025	기타교육학	강한솔, 김지민, 이영진	국내 온라인 그룹웨어 예방 연구의 동향과 과제	법교육연구	온라인 그룹웨어, 디지털 성범죄, 취약 집단, 문헌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47	2025	컴퓨터학	박광현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인공지능, 음란물, 형사책임, 책임능력, 선거범죄, 명예훼손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48	2025	사회과학일반	유효은	판결문에 나타난 딥페이크 성범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성범죄, 합성물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249	2025	법학	고명지, 김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예방교육
250	2025	경찰행정	조현성, 최희순, 오혜민, 박아름, 한민경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성비행 정의: 비행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16~2024)	한국경찰연구	성비행,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딥페이크·허위영상
251	2025	여성정책	정연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법적 정의 필요성과 국제 기준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여성연구	아동성착취,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착취 목적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252	2025	비교법학	안갑철, 안경옥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압격해석의 원칙, 형벌포괄리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53	2025	형사소송법	이원상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음란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과 문제점 -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사건 관련성,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육안발견의 예외원칙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254	2025	법해석학	한성훈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가벌성	한양법학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이미지 기반 성적 착취, 성폭력처벌 방법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55	2025	법학	이보라, 김면기	형사입법과 법원의 판단 - 'N번방 방지법' 중 소지죄에 대한 형사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방지법', 소지죄, 형사입법평가, 명확성의 원칙, 집행가능성의 원칙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256	2025	경영학	박은하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청소년 성교육의 전환과 대응	경영컨설팅연구	청소년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 성범죄, 성교육 효과	피해실태·인식조사; 예방교육
257	2025	형사정책	이승준	반조범 성립의 가능성과 한계 - 이른바 '실검 챗린지'를 기초로 -	형사판례연구	2022도15537, 박사방, 실검챗린지, 반조행위, 반조범의 인과관계, 중립적 반조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유통차단
258	2025	정보/과학기술 사회학	김수희, 송민주, 신민경, 이정술, 이승주, 최민음	성범죄 유형에 따른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내용프레임과 이미지프레임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성범죄 보도, 보도 프레임, 내용프레임, 이미지프레임	아동·청소년성착취
259	2025	사회과학일반	김수정, 박민정, 박신후, 윤기하, 이승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양상 - 온라인 뉴스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정보연구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언론 담론 분석, 기술매개 성폭력, AI 윤리	입법·처벌규정;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60	2025	전자/정보통신 공학	김종인, 박주환, 김도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한 딥페이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포 흔적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딥페이크, 디지털 포렌식,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아티팩트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261	2025	형법	김혜미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죄화와 제도적 정당성에 관한 쟁점 고찰 - 위장수사제도 규정의 선행적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마약범죄, 합정수사, 위장수사, 비밀수사, 점입수사, 신분비공개수사, 범의유발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262	2025	사회과학일반	서정운, 김기현, 전진호	뉴스 데이터의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범죄 트렌드 분석 -사이버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사이버 범죄, 뉴스 데이터, 키워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범죄 트렌드	AI·기술활용
263	2025	기타법학	이진호, 이상진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건의 디지털증거 확보와 압수 절차 정립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딥페이크, 압수수색, 아티팩트, 포렌식, 압수절차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264	2025	문헌정보학	송현경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의 키워드 네트워킹 분석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키워드 네트워킹 분석, 연구 동향, 디지털 포용	AI·기술활용; 예방교육
265	2025	기타과학기술 학	성수영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중독 및 불법도박 실태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중독, 불법도박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 유통차단
266	2025	공학일반	강성애, 권익현	아동·청소년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버보안 문제점 및 다차원적 해결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Metaverse, Cybersecurity, Child and Adolescent Protection, Digital Literacy, Safety by Design, Privacy by Design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 유통차단; AI·기술활용; 예방교육
267	2025	컴퓨터학	엄기원, 김동수, 오태우, 장한영	눈·코 입 영역 강조 가중치를 활용한 ViT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딥페이크 탐지, 비전트랜스포머 모델, 랜드마크, 패치 가중치, 디지털포렌식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키워드	주제분류
268	2025	컴퓨터학	신민지, 홍준호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포렌식, 산업보안, 디지털 증거, 법제도 개선, 프레임워크	수사·포렌식; AI·기술활용
269	2025	공학일반	홍정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Sex, Education, Adolescent, Scoping Review, Media Literacy, Long-term Program	예방교육
270	2025	문헌정보학	이정은, 오효정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대응 정책 비교 연구: 한국의 정책 보안 방향	정보관리학회지	딥페이크, 허위정보, 가짜뉴스, 플랫폼 규제, AI 탐지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피해자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예방교육
271	2025	비교법학	이승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방안 -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규율의 공백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개정, 판단 기준의 수정, 대상의 확대, 불법촬영물의 필요적 몰수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272	2025	사회과학일반	김남미	온라인 외모 비하 피해의 가해 행동 전이 과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한국중독범죄 학회지	외모 비하 피해, 외모 비하 가해, 성역할 고정관념, 청소년 온라인 폭력, 조절효과,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예방교육
273	2025	기독교신학	하주안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목회상담	신학과 실천	몸캠피싱, 심리적 상처, 목회상담, 여성 청소년	피해자지원·삭제
274	2025	경찰행정	박동균, 이행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1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다층거버넌스, 치안정책 조정체계, 지역사회 기반 치안	플랫폼 유통차단
275	2025	기타인문학	강호숙	젠더 교화법 모색에 관한 연구: 교회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젠더 교화법, 교회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피해자 관점과 교회법 교회법과 성인지감수성, 교회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자지원·삭제; 딥페이크·허위영상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76	2025	법학일반	최기모	수사탐정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탐정, 수사탐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 인식조사
277	2025	청소년복지	김정욱, 임해영	청소년 디지털 범죄 위기에 관한 질적내용분석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청소년, 디지털 환경, 디지털 범죄 위기, 생태체계, 질적 내용분석	기타
278	2025	학제간연구	진방희, 권상희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 의제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비교(2015-2025)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디지털 범죄, LDA 토픽 모델링, 의제설정, 조선일보, 한겨레	수사·포렌식
279	2025	국방/안보정책	최진혁, 나유경, 이신희, 여승준	언어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로맨스 스캠 범죄자 식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지	디지털 범죄, 로맨스 스캠, 인스턴트 메시징, 문체지문(Writeprints), 언어적 프로파일링	수사·포렌식
280	2025	사회과학일반	이수경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인권교육연구	딥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입법·처벌규정; 딥페이크·하위영상; 예방교육
281	2025	형법	김희정	노인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최적 대응방안 - 영미계의 법정최적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노인 사기범죄, 경제적 착취, 법정책, 노인보호, 금융기관 역할, 디지털 사기 대응	입법·처벌규정; 피해지원·식재; 딥페이크·하위영상
282	2026	사회과학일반	이성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정비 방안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디지털 성범죄, 보호관찰, 온라인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인터넷 사용 제한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83	2026	법학	안나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 및 과제	고려법학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및 특성,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수사기관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284	2026	사회복지학	김미순, 이주영, 정혜숙	장년여성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양상에 대한 탐색적 고찰: 실천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디지털 성범죄, 장년여성, 생애주기관점, 계급추락 경험, 질적연구	기타
285	2026	기타기독교신학	한혜현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드러난 전치된 대상화 현상: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여성	신학논단	전치된 대상화, 인간 대상화, 성적 대상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 딥페이크·허위영상
286	2026	행정학	박미량	소년 디지털 성범죄자의 가해유형 및 동기 기반 유형화: 군집분석을 통한 하위집단 분류	한국공인행정학회 보	소년 디지털 성범죄, 범죄동기, 유형화, 2단계 군집분석, 보호관찰	기타
287	2026	법학	장응희, 이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성적자대촬영등처벌법의 소개조치 등을 소재로-	경찰학연구	디지털 성범죄, 압수, 몰수, 삭제, 일본 형사소송법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피해지원·삭제
288	2026	법학	김지수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상 실재성 판단과 디지털 인격권의 보호: 대법원 2024도14039 및 2024도17801 판결의 해석론적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디지털 인격권, 성적 인격권,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죄형법정주의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피해지원·삭제; 플랫폼·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89	2026	법정책학	민유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죄형법정주의	사법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비동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 영상통화(화상채팅), 신체 그 자체, 신체의 이미지, 촬영죄의 기수 시기, 유포가능성 고지와 외포, 과거 촬영물의 존재, 죄형법정주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문언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입법·처벌규정; 피해자지원·삭제; 디지털·허위영상
290	2026	법학	김학경	현행 위장수사 법제의 개선방안: 영국의 위장정보원 활용수사 제도와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위장정보원 활용수사, 수사권한규제법, 디지털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291	2026	사회과학일반	권혜림	총정북도 젠더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대응에 대한 고찰 -폭력의 연속선과 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젠더폭력, 폭력의 연속선, 교차성, 친밀관계폭력, 디지털 성범죄, 안전 불평등, 지역기반 대응	플랫폼·유통차단
292	2026	형사정책	정혜인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범죄와형사정책적 대응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사이버플래싱, 사이버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비동의 성적 이미지, 이미지 기반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플랫폼·유통차단
293	2026	사회과학일반	이성대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 학회보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공지능기반법, 디지털 성범죄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유통차단; 디지털·허위영상; AI·기술활용

연번	발행연도	학문분야	저자	제목	학술지	저자기워드	주제분류
294	2026	법학	류부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인의 검토	경찰법연구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 보호규정, 마약류관리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수사·포렌식; 플랫폼 유통차단
295	2026	컴퓨터학	김지은, 김준호, 박정흠	Windows 환경에서의 딥페이크 생성 행위 식별: 웹·기반 서비스 3종 및 로컬 도구 9종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포렌식, 사이버범죄, 딥페이크, 포렌식 아티팩트	수사·포렌식; 딥페이크·허위영상
296	2026	경찰행정	전혜경, 조영오	소년원생의 음란물중독, 성적이미지기반학대통념이 일탈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정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소년원생, 일탈적 성행동, 음란물중독, 성적이미지기반학대통념, 부정정서	기타
297	2026	특수교육	소경선, 홍다은, 장문진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정서·행동장애 연구	국내 청소년, 청소년 비행, 연구 동향 분석, 전통적 비행, 디지털 기반 비행, 현장 연구	기타
298	2026	경찰행정	정주은, 조상현	디지털 성착취의 심리적 문맥: 초기 물질적 유인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매개효과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초기 물질적 유인, 심리적 문맥, 직렬 다중매개효과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실태·인식조사; 플랫폼 유통차단
299	2026	기타법학	박증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율과 과제-EU 및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딥페이크 음란물, 인격권 침해, 고도의 사적 생활영역, 인공지능법, 디지털서비스법, 독의 형법	입법·처벌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 플랫폼 유통차단; 딥페이크·허위영상; AI·기술활용
300	2026	형사소송법	박찬길	미국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디지털 증거,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전자증거, 보존요청제도	입법·처벌규정; 수사·포렌식

기술 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연구

발 행 일 : 2026년 9월 30일
발 행 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소 :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 락 처 : (전화) 02-735-1050, (팩스) 02-6363-8493
누 리 집 : <https://www.stop.or.kr/>
등록번호 : 여성인권-연구보고-2026-001
디 자 인 : 고려씨엔피 02-2277-1508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저작권정책 및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